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Ⅳ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임명현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임길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유주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정한슬 예산분석관
오규환 예산분석관

지 원 | 김리라 행정실무관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 02) 6788-3771 | s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Ⅳ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 10.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10.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880.8조원, 총지출 820.9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성과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총지출 증가율을 '26년 8.1%에서 '27년 12.8%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49.8%)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158.5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과 신설 기금의 운용 방식 및 국회 통제 장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량 분석」,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 및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깊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차 례

CONTENTS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Ⅰ. 예산안 개요 / 3

1. 현 황 ····· 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1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12

Ⅱ. 주요 사업 분석 / 17

〈회계·기금공통〉

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입법조치 필요 ····· 17

〈특별회계 공통〉

2. 특별회계 취지를 고려한 사업 편성 필요 ····· 22
   2-1.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일반회계로 이관 필요 ····· 24
   2-2.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사업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이관 필요 ····· 30
   2-3. 탈플라스틱 촉진지원 사업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이관 필요 ····· 37

〈일반회계〉

3. 물순환촉진지원 사업일정을 고려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 ····· 41
4. 낙동강 유역 맑은물 공급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 ····· 47

CONTENTS

〈환경개선특별회계〉

5. 녹조 우심지역 수질개선대책 사업 분석 ····· 56

〈미래대응기금〉

6.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 62
7. 수자원공사 출자사업 분석 ····· 70
8. 한국전력공사 국고보조사업 및 출자사업 분석 ····· 75
   8-1. 메가프로젝트 전력망 확충 사업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지정 필요 등 ····· 77
   8-2. 한전 사채발행한도 준수 대책 마련 필요 ····· 81
   8-3.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사업의 미래대응기금 편성 적정성 검토 필요 ····· 85

〈기후대응기금〉

9.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 ····· 90
10.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분석 ····· 95
    10-1.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수소승용차 활성화를 위한 승용충전소 직접 운영 검토 필요 ····· 96
    10-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수행 위탁사업: 법적근거 보완 필요 ····· 102
11.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사업의 미집행 투자여력 규모를 감안한 신규 출자예산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 107

〈수계관리기금 공통〉

12.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분석 ····· 112

CONTENTS

[고용노동부]

Ⅰ. 예산안 개요 / 121

1. 현 황 ····· 12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127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129

Ⅱ. 주요 사업 분석 / 132

〈일반회계〉

1. 내일배움카드(일반):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훈련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 ····· 132
2.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보험료 지원율 하향 조정 폭에 대한 검토 필요 ····· 137
3. 노동감독역량강화: 노동감독권한의 지방위임에 대한 면밀한 준비 필요 ····· 14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 사회적기업육성: 인건비 지원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 148

〈미래대응기금〉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내용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 ····· 155
6.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구직단념청년의 인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설계 및 집행 필요 등 ····· 160
7.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에 따른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등 ····· 171

CONTENTS

〈고용보험기금〉

8.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기존 집행 실적을 고려해 집행부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176
9.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180

〈근로복지진흥기금〉

10. 퇴직연금사업운영: 기존 가입자의 중도 취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18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1. 산재보험급여: 선보장 급여 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필요 ····· 191
12.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재정지원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 199
13. 업종별 재해예방: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의 위촉 운영제도 재검토 필요 등 ····· 207
14. 유해작업환경개선: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의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등 ····· 215
15.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기업 안전보건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 ····· 221

〈임금채권보장기금〉

16. 대지급금 지급: 최우선변제권 초과 범위 변제금에 대한 회수방안 마련 필요 ····· 228

CONTENTS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총괄):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에 따른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마련 필요 등 ····· 233
18. 장애인취업지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및 장애인 인턴제 사업의 고용유지율 제고 노력 필요 ····· 241
19.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245

[기상청]

Ⅰ. 예산안 개요 / 251

1. 현 황 ····· 25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25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253

Ⅱ. 주요 사업 분석 / 255

〈일반회계〉

1. 기상산업활성화: 기상감정사 자격제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255
2. 기상용슈퍼컴운영: 계약 지연에 따른 불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 ····· 258
3.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R&D) 사업: 철저한 사업 관리로 개발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 ····· 264

기후에너지환경부

Ⅰ 예산안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의 총수입은 일반회계, 3개 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8개 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기후대응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구성되며, 총지출은 일반회계, 4개 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및 8개 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기후대응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구성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9조 2,680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7,829억원(9.2%)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978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1조 5,416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4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87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3조 1,301억원, 기후대응기금 1조 7,718억원, 한강수계관리기금 5,210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600억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406억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038억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조 6,096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406억원이다.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2027년도 예산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887,869	2,339,144	2,339,144	1,690,524	△648,620	△27.7
- 일반회계	26,873	97,633	97,633	97,794	161	0.2
- 환경개선특별회계	1,346,244	1,539,980	1,539,980	1,541,641	1,661	0.1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2,254	2,136	2,136	2,387	251	11.8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9,699	32,323	32,323	48,702	16,379	50.7
- 에너지및자원사업특 별회계	452,799	667,072	667,072	0	△667,072	순감
기 금	5,455,747	6,145,905	6,145,905	7,577,454	1,431,549	23.3
- 전력산업기반기금	3,135,582	3,116,435	3,116,435	3,130,095	13,660	0.4
- 기후대응기금	323,447	831,969	831,969	1,771,754	939,785	113.0
- 한강수계관리기금	503,022	507,529	507,529	520,997	13,468	2.7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31,911	253,495	253,495	260,002	6,511	2.6
- 금강수계관리기금	136,605	135,618	135,618	140,594	4,976	3.7
-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102,689	100,672	100,672	103,839	3,167	3.2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982,621	1,160,842	1,160,842	1,609,578	448,736	38.7
- 석면피해구제기금	39,870	39,345	39,345	40,595	1,250	3.2
합 계	7,343,616	8,485,049	8,485,049	9,267,978	782,929	9.2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3조 869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7,125억원(3.2%)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조 2,788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4조 3,994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3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조 661억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17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3조 5,597억원, 기후대응기금 7조 6,009억원, 한강수계관리기금 4,602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101억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275억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090억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070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439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2,321,747	15,360,253	15,534,301	10,768,530	△4,765,771	△30.7
- 일반회계	2,282,386	2,439,229	2,439,229	2,278,765	△160,464	△6.6
- 환경개선특별회계	5,114,132	4,033,370	4,047,188	4,399,374	352,186	8.7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82,422	2,439	2,439	7,250	4,811	197.3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626,382	4,389,712	4,389,712	4,066,141	△323,571	△7.4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	-	-	17,000	17,000	순증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216,425	4,495,503	4,655,733	0	△4,655,733	순감
기 금	5,842,704	6,397,946	6,840,076	12,318,321	5,478,245	80.1
- 전력산업기반기금	2,420,772	2,688,980	3,093,580	3,559,740	466,160	15.1
- 기후대응기금	2,256,209	2,592,016	2,629,546	7,600,938	4,971,392	189.1
- 한강수계관리기금	489,123	460,872	460,872	460,196	△676	△0.1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24,042	213,871	213,871	210,075	△3,796	△1.8
- 금강수계관리기금	122,186	116,715	116,715	127,489	10,774	9.2
-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90,546	91,783	91,783	109,021	17,238	18.8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205,889	185,812	185,812	206,989	21,177	11.4
- 석면피해구제기금	33,937	47,897	47,897	43,873	△4,024	△8.4
합 계	18,164,451	21,758,199	22,374,377	23,086,851	712,474	3.2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7년도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7조 7,570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조 2,947억원(35.6%)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795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7조 1,264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4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87억원이다.

[2027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6,873	97,633	97,633	579,521	481,888	493.6
환경개선특별회계	7,812,124	7,058,176	7,071,994	7,126,421	54,427	0.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54	2,136	2,136	2,387	251	11.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9,699	32,323	32,323	48,702	16,379	50.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408,028	4,478,146	4,847,637	0	△4,847,637	순감
합 계	9,308,978	11,668,414	12,051,723	7,757,031	△4,294,692	△35.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19조 7,78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조 6,461억원(19.0%)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조 5,619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7조 1,264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3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조 661억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170억원이다.

[2027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643,950	7,901,409	7,915,227	8,561,882	646,655	8.2
환경개선특별회계	7,596,828	7,058,176	7,071,994	7,126,421	54,427	0.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2,422	2,439	2,439	7,250	4,811	197.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26,382	4,389,712	4,389,712	4,066,141	△323,571	△7.4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	-	-	17,000	17,000	순증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292,227	4,879,672	5,045,444	0	△5,045,444	순감
합 계	21,241,809	24,231,408	24,424,816	19,778,694	△4,646,122	△19.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기후대응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구성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4조 5,475억원으로 전년 수정 계획안 대비 4조 8,672억원(24.7%)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3조 6,297억원, 기후대응기금 8조 5,105억원, 한강수계관리기금 5,647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715억원, 금강수계관리기금 2,080억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923억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1조 1,089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618억원이다.

[2027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전력산업기반기금	4,763,621	4,513,656	4,507,656	3,629,670	△877,986	△19.5
기후대응기금	2,674,298	2,905,685	2,905,685	8,510,545	5,604,860	192.9
한강수계관리기금	533,431	537,529	537,529	564,743	27,214	5.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6,346	266,261	266,261	271,453	5,192	1.9
금강수계관리기금	188,950	204,152	204,152	208,031	3,879	1.9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82,662	180,266	180,266	192,322	12,056	6.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9,833,112	11,013,137	11,013,137	11,108,938	95,801	0.9
석면피해구제기금	66,259	65,556	65,556	61,788	△3,768	△5.7
합 계	18,488,679	19,686,242	19,680,242	24,547,490	4,867,248	24.7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라. 재정구조

2027년도 예산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환경개선특별회계로 5조 4,032억원, 기후대응기금으로 8,800억원이 전출된다.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26,973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60억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37억원 전출된다.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4조 4,063억원을 예수 받으면서 3,146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하고, 타부처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1조 1,773억원을 전입받고 복권기금으로 27억원 전출되며, 일반회계로 4,817억원 전출된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4조 6,483억원의 예탁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고 4조원을 다시 예탁한다.

[2027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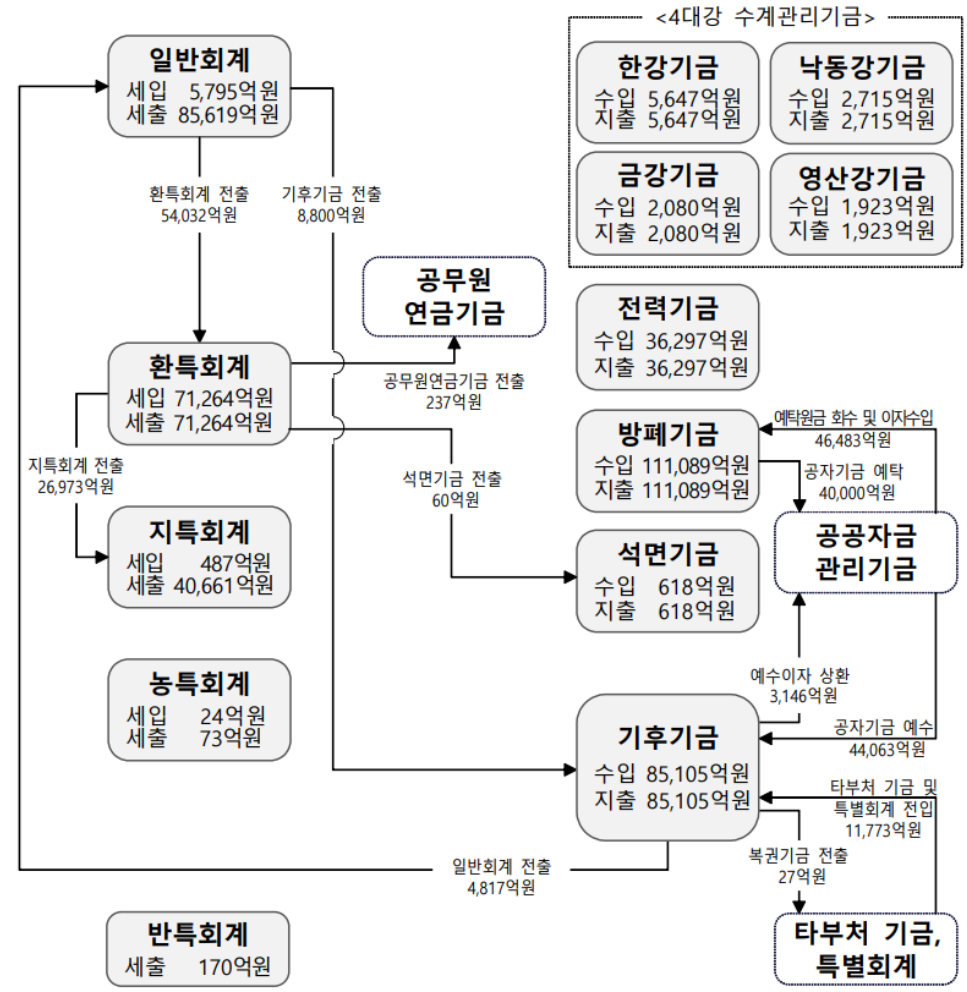

주: 총계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7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을 본격화하였고, (2027년 신규 1조 9,351억원[1]), ②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생산지우너비용을 확대하며, 햇빛소득마을의 효과적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사업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고,(2026년 8,803억원 → 2027년 1조 5,108억원), ③ 2035 NDC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무공해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2026년 2조 4,345억원 → 2027년 3조 90억원), ④ 수계기금을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한강수계에서 4대강 수계로 확산하고(2026년 51억원 → 2027년 781억원), ⑤ 녹조 문제해결을 목표로 낙동강, 대청호, 소양호 등 주요 수계를 점검하고 녹조를 집중관리하기 위한 6개 수질개선대책 사업이 신설되었다(2027년 1,048억원).

2027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인프라 구축에 선행되어야 할 법정계획 수립이나 법령 정비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사업의 주 수행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전기차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였으나, 수소차에 대해서는 지원물량과 단가 모두 삭감되고, 수소승용차 충전소 구축 지원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바, 무공해차 다변화를 위해 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전력 분야 1조 5,489억원, 용수 분야 3,862억원

셋째, 수계기금을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은 현재 햇빛소득마을 사업에서 문제되는 계통포화문제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과 선정 등에 있어 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녹조 우심지역 수질개선 대책사업은 완효성 비료, 지표피복 등을 단년도 전액보조로 지원하는데, 동 사업의 목적이 상수원관리지역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을 하도록 행동방식을 바꾸는 것이 목적임을 고려할 때, 단년도 전액 지원방식은 일회성 지원에 그칠 우려가 있다.

다섯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업 중 일부는 그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특별회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103개 사업, 5조 6,617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호남권 데이터센터 용수공급 사업은 해남 솔라시도에 구축될 데이터센터에 용수공급을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등을 위한 사업이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 중 대청호 수질개선 대책 사업 등 6개 수질개선대책사업은 녹조 우심지역에 대한 인공습지 조성, 녹조 제거 설비 설치, BMPs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기후대응기금은 2027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에특회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업이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되면서 에너지바우처 사업, 무공해차 보급사업 등이 기후대응기금으로 신규 편성되었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공통적으로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전액 지원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주민 소득 증대 재생에너지사업이 편성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2개)	호남권 데이터센터 용수공급 사업	700
	포항지진 국가배상소송 대응	825
환경개선 특별회계 (19개)	비시험기반 화학물질 유해성예측 기술개발(R&D)	2,000
	화학사고 조기감지 및 신속 현장 대응지원 기술개발사(R&D)	1,000
	정지궤도환경해양위성개발사업(R&D)	34,696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지원	3,000
	낙동강(상류) 수질개선 대책 사업	14,516
	낙동강(하류) 수질개선 대책 사업	22,874
	대청호 수질개선 대책 사업	15,081
	도암호 수질개선 대책 사업	28,000
	소양호 오염원 집중관리 사업	11,759
	영산강 섬진강 오염원 집중관리 사업	12,607
	하수관로 기인 지반침하 대응 기술개발사업(R&D)	800
	AI 기반 바이오 데이터·소재 통합·활용 지원사업(R&D)	8,746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K-순환경제리본프로젝트(R&D)	13,500
	환경 R&D 사업화 촉진 기술개발사업	640
	VOCs 저감을 위한 친환경 도장·인쇄 기술개발사업(R&D)	2,000
	이차전지 및 핵심광물 순환이용 기반 구축	12,118
	LFP 배터리 순환이용 기술개발사업	2,000
	전자폐기물의 희토류 자석 회수 및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2,000
	폐기물 전과정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2,88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개)	탈플라스틱촉진지원	6,100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1개)	경기 남부관 반도체산단 하수 재이용수 공급	17,000
기후대응기금 (57개)	실증연구단지 인프라 활용 에너지특화기업 성장지원사업(R&D)	900
	산업발생CO2활용 시멘트·콘크리트CCU 건설제품상용화 기술개발(R&D)	2,700
	5만톤년급 CO2해양 주입 실증 및 고정밀·고안전성 확보 기술개발사업(R&D)	5,600
	철강부생가스내유용성분이용산업간연계를통한CO2저감기술개발(R&D)	2,500
	AI기반수소충전소안전관리강화기술개발(R&D)	5,000
	재생열 전환 지원 사업	6,000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설비 구축 및 공정개선 시범사업	6,000
	친환경 냉매사용기기 교체 지원	20,000
	산림탄소흡수원증진지원	5,170
	HyBridge(R&D)	2,000
	기후적응형 Green Water-Energy Link 프레임워크 기술개발 사업(R&D)	1,000
	산업GX플러스사업 (R&D)	22,500
	AI 활용 시멘트 제조공정 탄소배출 저감 기술개발사업(R&D)	3,000
	건설-농기계 전동화 핵심기술개발사업(R&D)	3,000
	국내 공급망 확보가 가능한 차세대 바이오매스 섬유소재	2,000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개발(R&D)	
	±525kVGW급대용량HVDC해저케이블시스템개발(R&D)	3,500
	극한환경(수중/극한지)대응HVDC매설장비플랫폼개발(R&D)	1,500
	배터리산업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R&D)	20,248
	EU규제대응용재활용소재를활용한셀개발및실증(R&D)	6,000
	차세대전력망보호용HVDC차단기기술개발(R&D)	3,600
	사용후LFP배터리기반고안전저탄소ESS재사용통합플랫폼개발사업(R&D)	1,800
	신규 블루카본 산정 고도화 및 활용기술개발(R&D)	2,400
	탄소의 사회적비용 관리기반 핵심기술 개발사업(R&D)	2,000
	메탄 배출 모니터링 핵심기술개발사업(R&D)	4,170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F-gas 저감기술 고도화 기술개발사업(R&D)	3,780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	2,730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160
	에너지정보통계센터	446
	에너지센서스	776
	에너지국제협력	3,900
	회계관리비	42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391,038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13,300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96,147
	에너지바우처	495,127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5,547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시범사업	2,814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4,241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	4,152
	수소시설안전관리강화	918
	수소저장·운송클러스터구축사업	13,272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R&D)	220,306
	액화수소(LH2)인수기지핵심설비및시설안전기술개발(R&D)	7,900
	장거리고압수소배관망고안전성확보및AI기반안전관리기술개발(R&D)	10,000
	수용가전기설비원격점검및디지털안전기술개발(R&D)	7,000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49,794
	에너지기술정책수립(기후)(R&D)	630
	에너지자원정책연구	185
	에너지기술R&D 관리기관지원(R&D)	5,60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 관리비(기후)(R&D)	11,163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기후변화협약대응한-개도국협력(ODA)	1,050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 구축	10,900
	무공해차 보급사업	3,008,973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664,063
	무공해차 안심보험	2,000
	국가 기후위기 대응 연구체계 구축	5,950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정보화)	5,367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1개)	중저준위방폐물복합처분시설처분용량최적화기술개발(R&D)	4,000
한강수계 관리기금 (2개)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22,100
	도암호 등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흙탕물 저감사업	39,079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1개)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10,192
금강수계 관리기금 (2개)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19,384
	대청호 수질개선 지원	9,860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3개)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26,384
	퇴적물 준설사업	3,282
	취수정수유지관리사업	594
전력산업 기반기금 (14개)	대용량ESS시스템 해외인증지원 인프라구축(R&D)	3,000
	풍력설비안전검증 및 통합형플랫폼 기술개발(R&D)	5,000
	국내 계통 전기품질 강화를 위한 안정화 설비 구축 사업	36,000
	해상풍력발전 및 보급확대 지원	868
	i-SMR 상용화 기술개발사업(R&D)	39,697
	중·저준위 처분적합성 신뢰향상 및 유용소재 Upcycling기술개발(R&D)	4,810
	차세대태양광대면적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사업(R&D)	12,850
	석탄화력발전기운전유연성향상기술개발및실증사업(R&D)	2,500
	디지털 에너지자원 AI 통합운영 기술개발사업(R&D)	5,000
	한국형 크라켄 배전망 AI모델 개발 및 실증(R&D)	14,000
	국민참여형기후에너지 기술패키지상용화사업(R&D)	3,000
	폐지석탄화력인프라활용AI기반모듈형그린데이터센터 및 계통안정화기술개발(R&D)	2,000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대전환 교육·홍보	992
	전기산업발전기반구축사업	400
합 계		5,661,699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 사육곰 보호·관리 지원사업, 무공해차 보급사업,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등이 있다.

①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예산은 본공사 착공에 따라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었고,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배상금이 정부출연금으로 편성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③ 사육곰 보호·관리 지원사업은 사육곰 국내 사육금지에 따라 사육곰 임시보호 및 국내외 이송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④무공해차 보급사업은 2035 NDC 달성을 위한 전기차 지원확대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⑤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는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확대 및 해외진출 펀드, 세컨더리 펀드 추가 편성을 위하여 증액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1]		2027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2,142	2,142	26,000	23,858	1113.8
	물순환촉진지원	16,00	16,00	2,400	800	50.0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지원	41,379	41,379	55,470	14,091	34.1
	광역상수도 확충	17,757	17,757	24,796	7,039	39.6
	SMR혁신제조국산화기술개발	8,130	8,130	14,315	6,185	76.1
환경개선특별회계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지원	21,984	21,984	263,373	241,389	1,098.0
	비점오염저감사업	65,503	65,503	124,413	58,910	89.9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149,759	149,759	185,170	35,411	23.6
	사육곰 보호·관리 지원	1,500	1,500	4,731	3,231	215.4
	녹색인프라해외수출지원펀드	60,000	60,000	90,000	30,000	5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AX실증밸리조성(R&D)	4,923	4,923	37,177	32,254	655.2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자율)	66,011	66,011	105,943	39,932	60.5
기후대응기금	무공해차 보급사업	2,284,513	2,434,513	3,008,973	574,460	23.6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53,155	53,155	133,000	79,845	150.2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276,510	276,510	391,038	114,528	41.4
전력산업기반기금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지원	9,000	9,000	21,270	12,270	136.3
	무탄소 에너지보증	50,000	50,000	94,863	44,863	89.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Ⅱ 주요 사업 분석

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입법조치 필요

가. 현 황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에 따른 부과금,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무공해차 확산,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과 석유 비축·자원개발 등 자원안보 관련 사업을 함께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 (구)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구)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면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에너지 관련 예산, 기금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었다.

[2026년도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회계·기금	2025예산		2026 예산안 (B)	증감		비고
	본예산	2회 추경(A)		B-A	(B-A)/A	
계	139,564	139,681	191,283	51,601	36.9	산업부→기후부 +40,909억원
일반회계	22,047	22,643	24,408	1,765	7.8	산업부→기후부 +469억원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2,007**	**27,754**	**44,916**	**17,161**	**61.8**	**산업부→기후부 +12,660억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5,967	26,880	44,376	17,496	65.1	산업부→기후부 +189억원
전력산업 기반기금	-	-	25,753	25,753	순증	산업부→기후부 +25,753억원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	-	1,838	1,838	순증	산업부→기후부 +1,838억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이관된 예산 현황을 보면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각각 2조 5,753억원과 1조 2,660억원이 이관되었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모든 기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었으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자원 관련 사업은 이관되지 않음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재정이 다부처에 분산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및 부과금 등 자원안보 관련 법정부담금을 주 세입원으로 정하고 있는데[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이 기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등에 광범위하게 지출되어 납부자와 수혜자가 불일치하는 재정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나. 분석의견

2027년도 예산안부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폐지되고, 에너지 전환 분야는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되므로 국회에서 이를 고려한 법안 개정과 연계해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폐지되며 에너지 전환 분야는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되고, 석유·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는 신설되는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될 예정이다.

---

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3.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4.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
7.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입금
8.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9.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10.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12. 제8조에 따른 차입금
13. 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수입금

[2027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 통합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6년		'27년	증 감	
	본예산(A)	추경[1)]	예산안(B)	(B-A)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4,955	46,557	-	△44,955	순감
▣ 기후대응기금	25,920	26,295	76,009	50,089	193.2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에너지특별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되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6년		'27년	증 감	
	본예산(A)	추경[1)]	계획안(B)	(B-A)	%
에너지국제기구 분담금	(3,381)	(3,381)	2,730	2,730	순증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160)	(160)	160	160	순증
에너지정보통계센터	(446)	(446)	446	446	순증
에너지센서스	(1,490)	(1,490)	776	776	순증
에너지국제협력	(500)	(500)	3,900	3,900	순증
회계관리비	(39)	(39)	42	42	순증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276,510)	(276,510)	391,038	391,038	순증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37,200)	(37,200)	13,300	13,300	순증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82,842)	(82,842)	96,147	96,147	순증
에너지바우처	(494,027)	(504,257)	495,127	495,127	순증
탄소포집활용실증지원센터 구축	(11,785)	(11,785)	5,547	5,547	순증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 저장 시범사업	(1,788)	(1,788)	2,814	2,814	순증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26,708)	(26,708)	4,241	4,241	순증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	(4,853)	(4,853)	4,152	4,152	순증
수소시설 안전관리강화	(918)	(918)	918	918	순증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구축사업	(5,074)	(5,074)	13,272	13,272	순증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R&D)	(194,829)	(194,829)	220,306	220,306	순증
장거리고압수소배관망고안전성 확보및AI기반안전관리기술개발(R&D)	(4,000)	(4,000)	10,000	10,000	순증
수용가전기설비 원격점검및디지털 안전기술개발(R&D)	(4,000)	(4,000)	7,000	7,000	순증
에너지국제공동 연구(R&D)	(52,113)	(52,113)	49,794	49,794	순증
에너지기술정책 수립(기후)(R&D)	(630)	(630)	630	630	순증
에너지자원 정책연구	(224)	(224)	185	185	순증
에너지기술R&D 관리기관지원(R&D)	(5,275)	(5,275)	5,601	5,601	순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R&D)	(10,473)	(10,473)	11,163	11,163	순증

(단위: 백만원, %)

구 분	'26년		'27년 계획안(B)	증 감 (B-A)	
	본예산(A)	추경[1]			%
CCUS 진흥센터 구축	(8,800)	(8,800)	10,900	10,900	순증
무공해차 보급사업	(2,284,513)	(2,434,513)	3,008,973	3,008,973	순증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930,938)	(930,938)	664,063	664,063	순증
무공해차 안심보험	(2,000)	(2,000)	2,000	2,000	순증
기후변화협약대응한-개도국협력(ODA)	(824)	(824)	1,050	1,050	순증
액화수소(LH2)인수기지 핵심설비및시설안전기술개발(R&D)	(7,100)	(7,100)	7,900	7,900	순증
국가 기후위기 대응연구체계 구축	(5,713)	(5,713)	5,950	5,950	순증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 관리체계 구축(정보화)	(3,774)	(3,774)	5,367	5,367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에너지 전환 분야를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이 2026년 9월 8일 발의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되었다. 또한, 동 개정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3]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도록 지정신청이 이루어졌다.

동 개정안은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하여 기금 수입 항목에 추가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지출 용도에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교통·에너지·

2) 의안번호 제2221218호, 박정의원 대표발의

3)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환경세 전입액 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목적 및 용도를 고려하여 '자원안보기금'으로부터 종전 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기금에 전입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에 맞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에너지 전환 분야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차질 없이 이관·통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적기 제·개정이 필수적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도 예산안의 안정적 집행과 사업들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관련 입법조치가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특별회계 취지를 고려한 사업 편성 필요

특별회계란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는 회계[1]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2026년에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조 4,955억원이 편성된바 있으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업이 기후대응기금으로, 산업통상부 소관 사업은 자원안보기금으로 각각 이관됨에 따라 2027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2027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예산 회계별 구분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6년		'27년	증 감	
	본예산(A)	추경	예산안(B)	(B-A)	(B-A)/A
합 계	153,602	155,342	107,686	△45,916	△29.9
▣ 일반회계	24,392	24,392	22,788	△1,604	△6.6
▣ 환경개선특별회계	40,334	40,472	43,994	3,660	9.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3,897	43,897	40,661	△3,236	△7.4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4	24	73	49	204.2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	-	170	170	순증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4,955	46,557	-	△44,955	순감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바,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특별회계에 편성될 경우 특정 정책 목적에 재원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 성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세부사업 중 일부 사업은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회계 이관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하에서 검토하였다.

2-1.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일반회계로 이관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5과·6팀으로 구성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846명)와 외청1개소 및 소속기관 21개소(3,496명[2]), 산하기관(82,364명[3])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부, 소속기관 21개소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4],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46억원 증액된 2,938억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안 유형별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B-A)/A
합 계	217,582	223,744	257,319	39,737	18.3
예 산	153,603	155,343	107,686	△45,917	△29.9
▣ 사 업 비	150,811	152,552	104,748	△46,063	△30.5
▣ 인 건 비	**2,393**	**2,393**	**2,556**	**163**	**6.8**
▣ 기 본 경 비	**399**	**399**	**382**	**△17**	**△4.3**
기 금	63,979	68,401	149,633	85,654	133.9
▣ 사 업 비	63,657	68,079	149,304	85,647	134.5
▣ 인 건 비	92	92	97	5	5.4
▣ 기 본 경 비	230	230	232	2	0.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 기상청(1,395), 국립환경과학원(360), 국립환경인재개발원(33),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3),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18),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52), 유역·지방·대기환경청(1,152), 4대강 홍수통제소(159),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26), 전기위원회(9), 국립생물자원관(120), 화학물질안전원(149)

3) 한국수자원공사(5,450), 한국환경공단(2,626), 국립공원공단(1,49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274), 한국환경산업기술원(405), 국립생태원(36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119), 한국상하수도협회(77), 한국환경보전원(238),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184),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119), 한국에너지공단(638), 한국에너지재단(4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161),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34), 한국전력공사(22,936), 한국수력원자력(12,086), 한국전력거래소(503), 한국전력기술(주)(2,211), 한전KPS(주)(6,268), 한전KDN(주)(1,951), 한전MCS(주)(4,361), 한국남동발전(2,783), 한국중부발전(2,754), 한국서부발전(2,652), 한국남부발전(2,589), 한국동서발전(2,474), 한전원자력연료(주)(1,141), 한국원자력환경공단(332),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49), 한국지역난방공사(2,033), 한국전기안전공사(3,007)

4) 외청인 기상청 소관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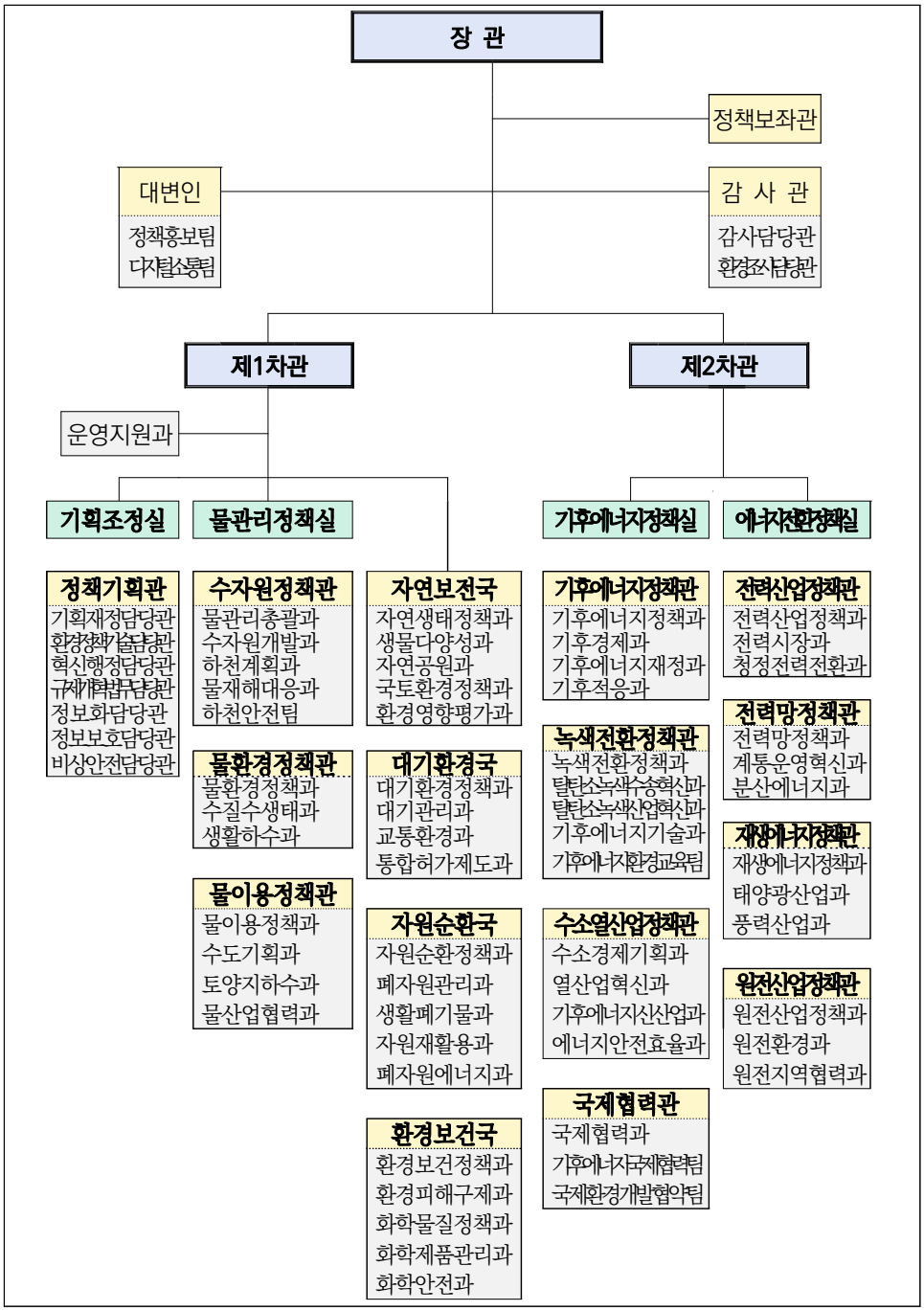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외청 및 소속기관 조직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분석의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규모가 과대계상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다. 이는 특정 사업의 수입으로 특정 지출을 충당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나 '성과 연계성'을 전제로 하는 특별회계의 성격은 고정지출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기본경비의 성격과 맞지 않으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유지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기본경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일반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다. 먼저 인건비의 경우 대부분의 부서 및 소속기관의 인

건비는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나, 수자원정책관 및 4개 홍수통제소의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다.

한편, 기본경비의 경우 물관리일원화로 국토교통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수자원정책관과,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조직개편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부에서 이관된 에너지 정책 부서(원전산업정책관, 전력산업정책관, 전력망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열산업정책관)의 기본경비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물관리일원화 이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기본경비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다.

[2027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본경비 및 인건비 편성 현황]

구분	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인건비	수자원정책관 및 4개 홍수통제소	그 외 부서
기본경비	수자원정책관 및 4개 홍수통제소 에너지 정책 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이관 부서	그 외 부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7년 환경개선특별회계 인건비 및 기본경비 현황]

(단위: 백만원, %)

	환특회계 세출(A)	환특회계 기본경비(B)	기본경비 비중 (B/A)	일반회계 전입금	타 회계기금 기본경비 (있는 경우)	일반회계 기본경비
2025	4,899,451	222,837	4.5	5,982,683	18,873	21,862
2026	4,033,370	251,224	6.2	3,212,324	32,205	27,907
2027(안)	4,399,374	265,753	6.0	5,403,151	32,917	28,018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목적과 환경개선특별회계가 과다계상 될 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5]로서 각종 환경개선부담금 및 오염배출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 사업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세출은 국가환경개선사업 등에 쓰이며, 구체적인 세출용도는 다음과 같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범위[1]]

1. 국가환경개선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사업 지원
3.「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지출
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5.「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용도
5의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에 따른 용도
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용도
7.「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
8.「폐기물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용도
9.「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의 책무 수행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10.「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및 운영비 출연
11.「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용도
12.「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3. 제46조제1호·제19호 및 제21호에 따른 차관·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4.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15.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홍보활동, 조사·연구와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16. 회계의 세입징수비용 지급
17.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5)「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환경개선사업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로도 보기 어려운바, 일반회계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재정규모는 정부가 환경개선사업에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환경개선사업과의 연관성이 낮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편성하는 것은 환경개선사업 재정투입규모를 과다계상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성질을 고려했을 때, 현재 분산되어 편성되어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일반회계로 일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2.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사업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이관 필요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사업(지역지원계정)[6]은 생태자원이 우수한 국립공원에 체험, 교류, 교육 등 기능을 갖춘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20억 9,100만원이 감액된 73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지원)	13,547	11,970	11,970	10,174	△1,796	△15.0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	11,104	9,396	9,396	7,305	△2,091	△22.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가. 현 황

동 사업은 국립공원 내에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태탐방원이란 생태관광의 거점시설로서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국립공원에서 국민들에게 생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생태체험 종합시설이다.

[2027년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예산	7,305백만원
사업대행자	국립공원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역무대행)
사업대상	속리산, 태안해안, 월출산, 덕유산, 주왕산, 팔공산 생태탐방원 조성 - (주요기능) 생태관광자원 체험 및 교육 등 - (주요시설) 강의실, 체험학습실, 사무실, 생활관 및 옥외 체험공간 등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6)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33-301의 내역사업

2025년까지 총 10개의 생태탐방원이 조성 완료되었으며, 2026년에는 5개의 생태탐방원이 조성 중에 있으며, 2026년 12월에 속리산 생태탐방원이 준공될 예정이다. 2027년에는 팔공산에 신규로 생태탐방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2027년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 현황]

구분	공원명	조성 위치	수용인원 (명)	대지면적 (㎡)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비고
1	북한산	서울 도봉구	숙박84명 (교육216명)	11,173	'10~'11년	10,700	'11.08.준공 '11.06.개원
2	지리산	전남 구례군	숙박104명 (교육328명)	31,523	'12~'14년	12,000	'14.12.준공 '15.03.개원
3	설악산	강원 인제군	숙박96명 (교육298명)	25,281	'13~'17년	11,880	'17.10.준공 '18.04.개원
4	소백산	경북영주시	숙박96명 (교육214명)	15,624	'13~'17년	13,170	'17.09.준공 '18.05.개원
5	가야산	경북성주군	숙박88명 (교육100명)	93,701	'14~'18년	8,763	'17.11.준공 '18.11.개원
6	무등산	광주북구	숙박72명 (교육280명)	23,891	'14~'18년	14,644	'18.07.준공 '18.11.개원
7	한려 해상	경남 통영시	숙박86명 (교육208명)	24,311	'14~'18년	14,678	'18.06.준공 '18.10.개원
8	내장산	전북 정읍시	숙박84명 (교육220명)	24,662	'15~'19년	12,700	'19.08.준공 '19.11.개원
9	변산 반도	전북 부안군	숙박127명 (교육100명)	24,000	'19~'23년	16,600	'23.06.준공 '23.07.개원
10	계룡산	충남 공주시	숙박66명 (교육60명)	27,027	'21~'25년	19,900	'25.07.준공 '25.12.개원
11	속리산	충북 괴산군	숙박72명 (교육80명)	24,095	'22~'26년	14,100	'26.12. 준공예정
12	태안 해안	충남 태안군	숙박80명 (교육80명)	28,418	'23~'28년	17,600	'28.12. 준공예정
13	월출산	전남 영암군	숙박72명 (교육100명)	28,560	'23~'28년	17,800	'28.12. 준공예정
14	덕유산	전북 무주군	숙박72명 (교육80명)	30,000 내외	'26~'30년	18,700	'30.12. 준공예정
15	주왕산	경북 영덕군	숙박72명 (교육80명)	30,000 내외	'26~'30년	19,500	'30.12. 준공예정
16	팔공산	경북 경산시	숙박72명 (교육80명)	30,000 내외	'27~'31년	-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분석의견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은 국립공원 내 시설인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 성격이 국가사무인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7],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

구분	내용
설치목적	· 지방시대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
계정구분	· 지역자율계정
	· 지역지원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예산 편성 절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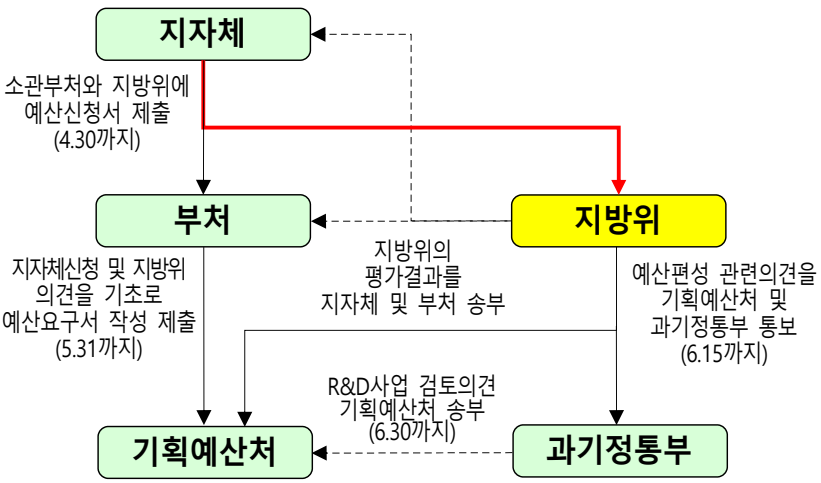

주: 1) 일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상 기한이므로 당해연도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자료: 2027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7)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은 권역 간 협력 및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해 국가의 체계적인 수요·공급 관리, 기능 조정이 요구되는 사업이 편성되며, 계정 내 사업은 모두 부처에서 직접 편성하는 사업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계정 편성방식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시·도 자율편성사업	-	③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 사업 등 포함	④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 사업 등 포함 ⑤특별지방행정 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시·군·구	②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⑥부처직접 편성사업	⑦부처직접 편성사업	⑧부처직접 편성사업

자료: 2027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구체적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 사업범위는 ①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 고유정신 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과 ②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등 제도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지원계정 대상사업[1]]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出捐)·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 고유정신 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주민지원사업, 토지등의 매수,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 조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기획예산처장관이 매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주: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자료: 2027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한편,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은 국립공원 내 시설인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립공원공단을 통해 역무대행으로 수행하는 직접수행사업이며, 지역지원계정 대상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태탐방원에 숙박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탐방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역 명소 탐방, 마을 체험[8], 지역 밥상 제공 등 지역 프로그램을 진행하므로,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은 탐방객 체류시간 극대화를 통한 주변 지역 일자리 창출, 마을 기업 상생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성사업을 통해 완성된 생태탐방원은 그 관리를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을 통해 수행하며, 생태탐방원 이용수입도 국립공원공단에 귀속[9]된다. 2025년 기준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1831-306)에서 생태탐방원 사업수입 30억 1,300만원은 국립공원공단의 자체수입으로 계상되었으며, 생태탐방원 운영비용 54억 3,900만원도 동 사업 예산에 편성되었다.

또한, 지역지원계정 대상사업 중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은 대부분 출연·보조 또는 융자의 형태로 추진될 것을 규정하며, 동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제6호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 고유정신 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업은 출연·보조 또는 융자 형태의 사업일 것으로 규정된 반면,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은 국립공원공단을 통한 직접수행사업으로 그 형식에도 벗어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의 수행주체, 운영수입귀속 등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편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현행 회계의 편성이 지역지원계정의 목적과 대상사업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 성격에 맞는 회계로 조정할 것을 시정요구한바 있다.

8) 사과 따기, 도자기 체험, 인삼주 만들기, 전통 한복체험 등

9) 2025년 기준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1831-306)에서 생태탐방원 사업수입 30억 1,300만원은 국립공원공단의 자체수입으로 계상되었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관련 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지원)(1833-301)	제도개선
시정 요구명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의 편성 적정성 재검토	
지적 사항	○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은 국립공원 내 시설인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국가사무의 성격으로 시설의 운영수입도 공단의 자체수입으로 귀속되므로 사업수행방식과 재정구조 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의 대상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 필요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 사업과 연계된 지역 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지원계정편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간접효과로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시설조성 사업을 모두 지역지원계정에서 부담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국가 직접사업 간 회계구분이 불명확해질 우려	
시정요구 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의 수행주체, 운영수입귀속 등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편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현행 회계의 편성이 지역지원계정의 목적과 대상사업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 성격에 맞는 회계로 조정할 것	

자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은 본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1833-302) 세부사업 중 일부사업이 2025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지원)'과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자율)' 세부사업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지역지원계정으로 이관된 사업이나, 그 사업의 성격이 지역지원계정의 대상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2-3. 탈플라스틱 촉진지원 사업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이관 필요

탈플라스틱 촉진지원사업[10]은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AI 기반 광학 선별기 등 선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종량제봉투, 비닐포장재 등 제작을 위한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61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탈플라스틱 촉진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탈플라스틱 촉진지원	-	-	-	6,100	6,1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가. 현 황

동 사업은 AI 기반 광학선별기 등 선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고품질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고 선별률을 제고하는 민간 선별시설 고도화 지원사업 30억 5,000만원과, 종량제봉투, 비닐포장재 등 제작을 위한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설비 설치를 위한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설비 설치 지원사업 30억 5,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7년 민간 선별시설 고도화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예산	3,050백만원
사업시행주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지원대상	영세·중소 민간 선별사업자
사업내용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AI 기반 광학선별기 등 선별시설[1] 설치·개선 비용 지원
예산 산출근거	재활용업체 10개 × 평균 지원금 3억원[2]/개 + 사업관리비 0.5억원

주: 1) AI 광학선별기, 진동 피더, 반송 컨베이어 등 선별시설
2) 광학선별기 및 부속시설 평균 설치비용 약 10억원 × 국고 지원비율 3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0)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31-303

[2027년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설비 설치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예산	3,050백만원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지원대상	재활용기업
사업내용	종량제봉투, 비닐포장재 등 제작을 위한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설비(악취·이물질 제거 등) 설치 시범사업 추진
예산 산출근거	재활용업체 12개소 × 평균 지원금 833백만원[1]/개 × 보조율 30% + 사업관리비 0.5억원

주: 1) 세척, 용융·압출, 건조시설 등 악취·이물질 제거설비 평균 설치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분석의견

탈플라스틱 촉진지원 사업은 국가 차원의 법정 계획 이행과 민간 자원순환 기반 확충을 위한 국가 정책사업이므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아닌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26년 4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추진계획의 일환으로서 재생원료를 활용한 신재 대체를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체계로 전환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탈플라스틱 촉진지원 사업 추진경위]

- (국외)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국가 전략화('24~)
  ※ (EU) 친환경설계 기준('24.7~), 포장재·포장폐기물 규정('25.2~), PET 재생원료 사용의무('25.1~)
  (日) PET 재생원료 사용목표 설정 및 실적 보고의무 도입('26.4~)
- (국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추진계획 발표('26.4.28)
  · 재생원료를 활용한 신재 대체를 확대('30년까지 30%)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체계로 전환
- (국정과제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폐플라스틱 회수 촉진을 위해 AI 기반 재활용시설(광학선별기 등) 고도화,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국제수준으로 강화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처럼 동 사업은 국가 계획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 주도 사업이며, 그 추진체계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운영되기보다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통해 수행될 예정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11]를 근거로 설립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가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12]를 근거로 설립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탈플라스틱 촉진지원 사업 추진체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기후부 (6,100백만원)	=〉 (3,050백만원)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50백만원)	=〉 (3,000백만원)	민간 선별사업자 10개사
	=〉 (3,050백만원)	한국농수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50백만원)	=〉 (3,000백만원)	재활용기업 12개사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조합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유통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그 수거비용 등을 보전하여야 한다.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 사업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제2항제6호의 '환경보전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단순한 민간기업 지원과 달리, 지역의 환경기반과 재생원료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주민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 자원순환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특(지역지원계정)의 환경보전사업에 대한 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 추진하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추진계획의 일환이라는 점, 사업수행주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에 편성하는 것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균형성장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 사업은 국가 탈플라스틱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3 물순환촉진지원 사업일정을 고려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물순환 촉진지원 사업[1]은 기후변화 심화로 인한 홍수가뭄 빈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도시침수, 비점오염 유출 등 복합적 물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8억원이 증액된 24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물순환촉진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물순환촉진지원	-	1,600	1,600	2,400	800	50.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동 사업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의 제정('23.10.) 및 시행('24.10.)에 따라 2026년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물순환 관리체계는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순으로 추진된다.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5131-317

[물순환 촉진지원 사업 관리체계]

추진주체	추 진 내 용	비고
기후부 장관	**('25.11월)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 물순환 촉진시책, 물순환촉진구역 지정기준 마련	-10년 주기 수립 **-국가물관리委 심의**
	⇩	
	('25.12월~'26.5월)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 및 지정	-직접 또는 지자체 長 제안받아 지정 -유역물관리委 심의
	⇩	
	('26~'27)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 ▸ 추진목표·기본방향, 총괄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 제시	-유역물관리委 심의 -행위제한 발생(고시 後)
	⇩ [기본·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 국가유산영향진단)]	
사업 시행자	**('28~)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 수립** ▸ 사업시행지 위치·면적, 시설별 설치계획, 재원조달 등	-기후부장관 승인 (유역·지방청장 위임) -인·허가 의제
	⇩	
	물순환 촉진사업 착공	-지자체 행위허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분석의견

첫째, 물순환촉진지원 사업은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지연 등으로 인해 종합계획 수립일정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물순환 촉진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물순환 촉진구역은 2026년 6월, 전북 군산시 등 4개 구역 지정이 이루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2025년) 12월 8일 공모를 시작하여 올해(2026년) 3월 3일부터 5일까지 지방정부의 공모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3개 지방정부가 참여했으며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추진 의지·역량, 재정 투자의 형평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4곳이 지정됐다.

[2026년도 지정된 물순환 촉진구역 현황]

지자체명	주요사업 내용
전북 군산시	• 상습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중·대형 빗물저류조 및 빗물이용시설 등 설치 • 공공부지 LID 시설(투수성포장 등) 설치
충북 제천시	• 제천천 여유유량 활용 공업용수 공급 및 지류하천 유량 확보를 통한 건천화 해소 및 수질 개선 - 제천천-미당천-제2의림지 도수관로 등 설치 • 도심 LID시설(투수포장, 수로 등) 설치 • 하천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충북 증평군	• 강변여과시설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로 취수원 다변화 및 대체수원 확보 • 하수재이용수 활용 하천유지용수 및 수경용수 공급 • 제방 보축 및 하천정비로 하천 통수능력 확보 • 도심 LID시설(투수성포장 등) 설치
충남 천안시	•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및 우수관로 개량 • 노후 상하수도 정비(하수관로, 상수관로) •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8월 기준 물순환 촉진지원 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9억 6,000만원의 이월이 예상된다.

[2026년도 물순환촉진지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		
물순환촉진 지원	1,600	1,600	-	1,600	-	960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는 물순환 촉진구역 후보지역 선정 후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까지 약 1달이 소요되었고, 촉진구역을 6.3. 지방선거 이전에 지정·고시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선거 이후 지정·고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2회 유찰로 인해 업체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9월 11일에 계약이 완료되었다.

[2026년도 물순환 촉진지원 사업추진 현황]

일시	사업 추진경과
2026.3.	물순환촉진구역 공모접수 및 평가
2026.4.22.	관계부처 협의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요청
2026.5.11.	심의결과 접수
2026.6.10.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고시
2026.6.	물순환 촉진구역 사전규격공개
2026.7.2.	물순환 촉진구역 1회 입찰공고
2026.7.28.	물순환 촉진구역 2회 입찰공고
2026.9.11.	물순환 촉진구역 종합계획수립 용역 계약 완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순환 촉진구역 종합계획 수립은 2년에 걸쳐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도 예산으로 2026년에 계약된 4개소의 2차 연도비 16억원과, 신규로 지정될 2개소의 1차 연도비 8억원을 더해 총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물순환 촉진지원사업 2027년도 예산편성 상세내역]

2026년 예산	2027년 계획안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1,600,000천원 가. 물순환체계 구축(1,600,000천원) · 4개소 × 4억원(총 8억 중 1차 연도비)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2,400,000천원 가. 물순환체계 구축(2,400,000천원) · 4개소 × 4억원(총 8억 중 2차 연도비) + 2개소× 4억원(총 8억 중 1차 연도비, 신규지정)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러나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고시 지연으로 인해 이미 2026년 편성된 예산 9억 6,000만원이 이월될 예정이고, 동 계약은 2028년 8월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으로, 2027년에 2차 연도비를 전액 편성할 경우 2028년으로 예산의 상당수가 이월될 우려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년초까지 4개 구역의 물순환 촉진구역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본 용역의 핵심 과업인 취약성 세부평가 및 종합계획(안) 마련은 '27

년말에 실질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므로, '27년 사업비의 일부잔액(인건비성) 이월은 불가피하나, 연말까지 기성금 정산으로 최대한 집행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고시 지연으로 계약이 지연된 점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물순환촉진구역은 매년 4개소씩 지정하여 2035년까지 총 4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계획에 따라 적시에 물순환 촉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물순환 촉진구역 후보지는 850개 표준유역 중 452개(53.2%)로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매년 4대강 유역별 1개소(총 4개소/매년)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총 40개소 지정을 목표로 수립하였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목표]

▌ 과제번호: (기타) 혁신1-1-2-1(도시형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 도시 물순환 개선 사업모델 발굴·확산 추진 - 물순환 여건 개선이 시급한 지자체(중점관리 지자체) 대상, 맞춤형 물순환 관리 컨설팅 실시 ('22~, 4대강 유역별 1개소, 총 4개소/매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2035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안)]

(단위: 개소)

연도	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개소	40	4	4	4	4	4	4	4	4	4	4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러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면, 2027년에는 2개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만이 편성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종합계획 수립 주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이므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2027년도 예산안에 2개소만 반영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연도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고시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연도별로 별개의 사항이고, 2027년도에 2개소만 지정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향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계획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적시에 물순환 촉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낙동강 유역 맑은물 공급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사업[1]은 낙동강 유역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21.6.24)에 따라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광역상수원을 개발하고 식수 공급을 유도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9,000만원이 감액된 2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낙동강 유역 맑은물 공급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낙동강 유역 맑은물 공급사업	-	2,520	2,520	2,430	△90	△3.6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6월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고 상·하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는 등 낙동강 유역의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의결하였고, 착공 전 취수원 다변화 항목의 영향지역 주민과 수혜지역 주민들의 객관적인 방법을 통한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2028년까지 낙동강 상류와 하류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취수시설 및 관로를 구축하여 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광역상수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실시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은 수자원공사[2]가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5033-358

2) 수자원공사에 대한 출자(국고 30% 지원) 방식으로 사업 추진 예정이다.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사업 개요]

(단위: 억원)

구 분	세부 내용	
총 사업비	24,959(상류지역: 7,346, 하류지역: 17,613)	
사업기간	2022~2028년(추후 조정예정)	
사업지역 및 사업내용	상류	- 구미 해평취수장(30만톤/일) → 대구(28.2만톤/일)·경북(고령·성주 등 1.8만톤/일) 공급 - 반구대암각화 보호를 위해 대구(운문댐) → 울산(공급 물량은 운문댐 여유용량 등을 고려 추후 확정) 공급
	하류	- 합천 황강 복류수[1](45만톤/일), 창녕 강변여과수[2](45만톤/일) 개발 → 경남(창원, 김해, 양산 등 48만톤/일), 부산(42만톤/일) 공급
사업시행주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시설계 ~ 준공) 수자원공사	

주: 1) 복류수(伏流水)는 강, 호수 등의 바닥, 모래 등에 있는 물을 말한다.
2) 강변여과수는 인공적으로 하천 옆에 취수정을 설치해 하천 바닥의 모래층을 뚫고 자연스럽게 여과되도록 한 다음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물을 말한다.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분석의견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사업은 낙동강 유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안전한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2026년도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증액의결한 국회 심의 취지를 고려하여 낙동강 하류사업에 대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낙동강 유역 맑은물 공급사업은 상류, 하류 사업이 합쳐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5033-356)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각 사업별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 2027년부터 2개 세부사업으로 분리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류사업은 정부안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하였다.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은 2022년 사업시작 이후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상류 지역), 지역주민 반대(하류 지역)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었다.

[2022-2025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년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불용액
2022	9,822	-	9,822	4,766	48.5	3,069
2023	1,920	1,987	3,907	1,973	50.5	1,934
2024	2,020	-	2,020	98	4.8	1,922
2025[1)]	-	-	-	-	-	-
계	13,762	1,987	15,749	6,837	43.4	6,925

주: 1) 2025년은 예산 미편성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먼저 낙동강 상류지역(대구-경북권) 사업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22년 4월 대구시와 구미시가 상생발전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8월 대구시가 구미시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상생협정을 파기하였다.

이로 인해 낙동강 상류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대구시가 2022년 10월 안동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대신 정부에 제안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에 낙동강 상류 안전한 먹는물 구축사업에 대한 기술검토 용역을 진행하였다. 2024년 7월 대구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술검토 용역 결과를 수용하여 변경된 대안을 공식화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변경안[3)] 심의를 요청하였다.

이후 2026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타당성조사의 일환으로 복류수 실증실험시설 설치·운영을 개시하였고, 복류수 실증실험시설의 수질·수량 확보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3)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변경(안)
- 취수지역: 구미 해평취수장 → 안동댐 직하류
- 취수량: 30만톤/일 → 46만톤/일

[2022~2026년도 낙동강 상류지역 사업추진 경과]

일자별	사업 추진경과
2022. 4. 4.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 협정 체결(대구시-구미시)
2022. 6. 30.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2022. 8. 17.	대구시, 구미시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상생협정 파기 통보
2022. 10. 5.	맑은 물 공급과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대구시-안동시)
2022. 12. 15.	대구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 용역 착수
2023. 11. 28.	대구시, 맑은 물 하이웨이(안) 환경부에 공식 제안
2023. 12. 21.	24년 국가 예산에 맑은 물 하이웨이 기술검토 연구비 1억 반영
2024. 1. ~ 2024. 7.	낙동강 상류 안전한 먹는물 구축 기술검토 연구용역 * 기간:24.1.30~7.27, 예산: 98백만원, 맑은 물 하이웨이 타당성 검토
2024. 6.~	낙동강 상류유역(경북 11개 지역) 부단체장등과의 면담 등 의견수렴
2024. 7. 15.	환경부장관-대구시장-안동시장 3자 간담회
2024. 12. 19.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변경(안) 심의요청(환경부→낙동강유역물관리위)
2025. 10. 24.	대구 타운홀 미팅 계기 대통령 실효적 대안 검토 지시
2025. 12~	본류 수질개선과 더불어 수혜지 인근에서 “댐만큼 깨끗한 원수”를 “전량” 확보하는 新대안 마련 → 대구 지역 설명 시작(국회, 언론, 시민사회 등)
2025. 12. 31.	낙동강유역위는 ▲상주, 의성 등 반대, ▲본류 수질개선 최우선 등 사유로 안동댐 활용방안 재검토 요청
2026. 04. 09.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27. 08. 01)
2026. 06. 16.	타당성조사의 일환으로 복류수 실증실험시설 설치·운영 개시
2026. 07~	복류수 실증실험시설의 수질·수량 확보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 구성·운영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 상류지역 취수원 다변화사업 계획변경안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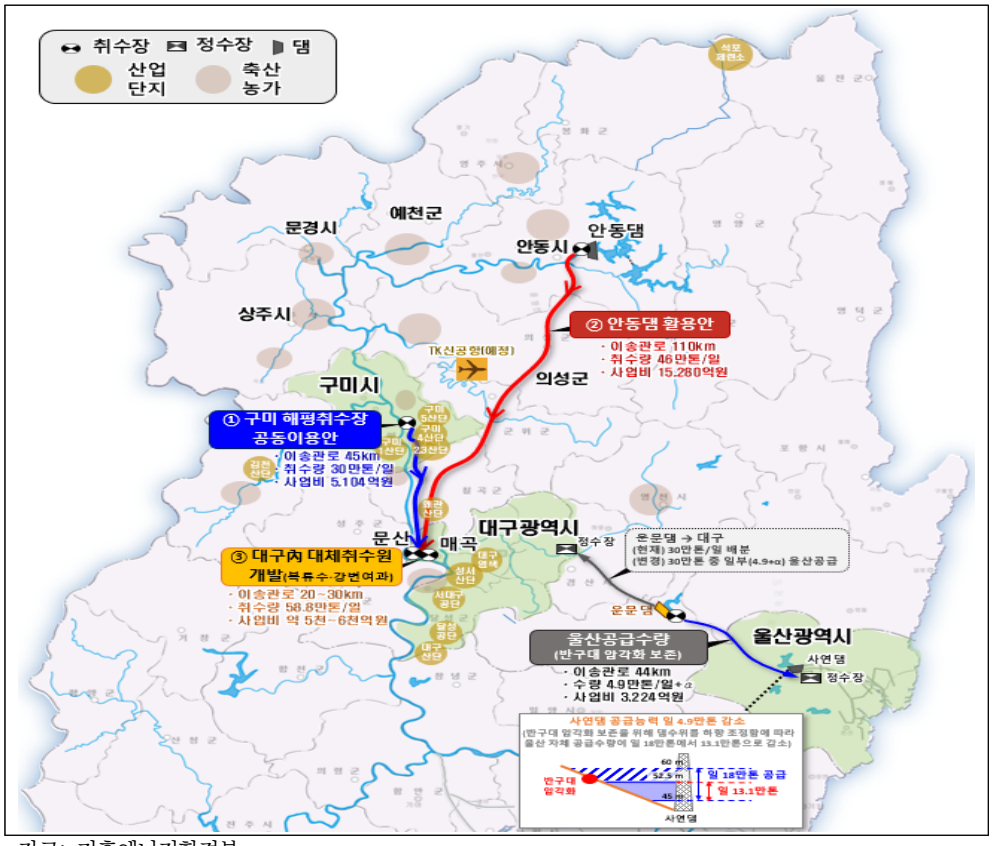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 상류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방안 변동내역]

구 분	구미취수장 이용 ('21.6)	안동댐 활용 ('24.12)	복류수·강변여과수 新대안 ('25.10)
취수지점 (취수량)	구미 해평취수장 (30만톤/일)	안동댐 직하류 (46만톤/일)	대구 문산·매곡 취수장 (58.8만톤/일)
공급지역 (공급량)	대구 28.2만톤, 고령·성주 1.8만톤	대구 40.9만톤, 신공항 3.3만톤 고령·성주 1.8만톤	대구 57만톤, 고령·성주 1.8만톤
관로길이 (사업비)	구미-대구 45㎞ (5,104억원)	안동-대구 110㎞ (1조 5,280억원)	약 20~30㎞ (복류수강변여과수 시설 포함 5~6,000억원 추산)
원수수질	TOC[1] 3.8(약간 좋음)	TOC 2.9(좋음)	TOC 1.7(매우좋음) 예상

주: 1) TOC : 총 유기탄소(Total Organic Carbon)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편, 낙동강 하류지역(부산-경남권)의 사업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동 사업은 당초 창녕 강변여과수와 합천의 복류수 90만톤을 부산, 창원, 김해 등에 공급하는 내용으로 계획하였다. 2022년 12월 동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2023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은 집행되지 못하였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 11월에는 취수지점과 취수량을 조정한 사업대안[4]을 마련하였고, 사업대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으나, 합천 · 창녕 등 영향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2026년 상류와 같이 하류도 지하수위에 영향이 없는 복류수 중심의 공급방안으로 전환하는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022~2026년도 낙동강 하류지역 사업추진 경과]

일자별	사업 추진경과
2022. 6. 30.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2022. 11. 2.	지역 의견수렴과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2022. 12. 21.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23. 1. 17.	합천주민 반발로 민관협의체 회의 파행
2023. 1. 30.	기본 및 실시설계비(2023년 예산) 집행계획 공지 ※ 환경부→합천군, 창녕군, 경남도
2023. 1. 31.	창녕군, 주민 면담을 통해 23년 설계비 예산반영 경위 설명
2023. 3. 7.	환경부, 경남도지사 면담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지질조사 협조 요청
2023. 5. 30.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반대 결의문 전달 * 합천군 대책위→환경부
2023. 6. 15. ~ 2023. 6. 16.	환경부, 합천군 및 창녕군 지역주민과의 면담

4) 낙동강 하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당초 창녕 강변여과수 45만톤/일, 합천 복류수 90만톤/일을 취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대안으로 창녕 강변여과수 47만톤/일, 의령 강변여과수 24만톤/일, 합천 복류수 19만톤/일로 취수량 및 취수지점을 일부 조정하였다.

일자별	사업 추진경과
2023. 10. 26.	환경부, 경남도지사 면담 * 강변여과수, 복류수 취수계획 대안 설명
2023. 11.	강변여과수, 복류수 취수지점 및 적정취수량 등을 고려한 타당성조사 및 사업 대안 마련 지자체 및 주민 면담 * 대안: 당초 창녕 강변여과수 45만톤/일, 합천 복류수 45만톤/일 취수에서 창녕 강변여과수 47만톤/일, 의령 강변여과수 24만톤/일 및 합천 19만톤/일 취수로 취수지점과 취수량 조정
2023. 12. 20.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2024. 1. ~ 2024. 12.	지역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지속 소통(총 37회)
2025. 1. ~ 2025. 12.	지역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지역사회 등과의 지속 소통(총 27회)
2026. 06~	상류와 같이 하류도 지하수위에 영향이 없는 복류수 중심의 공급방안으로 전환 → 사업방향 전환에 대해 부산시·경남도(김해, 양산 등)와 협의 지속 추진 중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 하류지역 맑은물 공급사업 타당성조사안 노선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 하류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방안 변동내역]

구분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21.6)	타당성조사(안)('24.3.~)
취수지역	▪ 창녕(강변여과수), 합천(복류수)	▪ 창녕·의령(강변여과수), 합천(복류수)
취 수 량	▪ 90만톤/일 - 창녕 45만톤/일, 합천 45만톤/일	▪ 90만톤/일 - 창녕 47만톤/일, 의령 24만톤/일, 합천 19만톤/일
취수지점	▪ 3개소(강변여과수), 1개소(복류수)	▪ 8개소(강변여과수), 1개소(복류수)
지하수위	▪ 최대 7.0m 저하	▪ 최대 3.45m 저하
관로길이	▪ 취·도수관로 102.2km	▪ 취·도수관로 145.4km
급수지역	▪ 부산(42만톤/일), 창원(31만톤/일), 김해(10만톤/일), 양산(6만톤/일), 함안(1만톤/일)	
사 업 비	▪ 약 17,613억원	▪ 약 27,957억원(잠정)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처럼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상류와 하류 모두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2025년에는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고, 2026년에도 정부안은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업의 조속한 수행을 위한 예산 44억 4,000만원이 증액 의결되었다.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서]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본예산	추경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5033-356)	-	-	-	4,440	2,520	○ 낙동강 유역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25억 2,000만원 반영 필요
					1,920	○ 낙동강 하류지역 맑은물 공급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19억 2,000만원 증액

자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그러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2차년도 용역비가 반영된 상류사업과 달리, 하류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를 보완하는 등의 예산 41억 4,7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수혜지 인근에서 부산·경남지역 수요(90만톤/일)를 최대한 충족하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를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7년도 낙동강 유역 맑은물 공급사업(하류) 부처요구안]

(단위: 백만원)

구분	'27년 예산안	
	부처안	정부안
낙동강 유역 맑은물 공급사업(하류)	4,147	-
	타당성조사(보완) 3,877 전략환경영향평가 270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따라서 낙동강을 수원으로 사용하는 남부권 주민의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증액편성한 2026년 국회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하류)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5 녹조 우심지역 수질개선대책 사업 분석

가. 현 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 문제해결을 목표로 낙동강, 대청호, 소양호 등 주요 수계를 점검하고 녹조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6개 사업을 신설하였다. 6개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총 1,048억 3,700만원이다.

[2027년도 수질개선대책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대청호 수질개선대책 사업	-	-	-	15,081	15,081	-
도암호 수질개선대책 사업	-	-	-	28,000	28,000	-
소양호 오염원 집중관리 사업	-	-	-	11,759	11,759	-
영산강 섬진강 오염원 집중관리 사업	-	-	-	12,607	12,607	-
낙동강(상류) 수질개선 사업	-	-	-	14,516	14,516	-
낙동강(하류) 수질개선 사업	-	-	-	22,874	22,874	-
계	-	-	-	104,837	104,837	-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도암호 수질개선대책 사업을 제외한 5개의 사업은 공통적으로 인공습지 및 수상정원 등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비점오염 저감 사업, 플라즈마, 부력수차 등 녹조 제거 설비를 투입하는 녹조관리 사업, 농경작지 유출 인 저감을 위한 물꼬 설치, 완효성 비료 보급 및 지표 피복을 지원하는 BMPs[1] 사업, BMPs 신속 확산을 위한 농민 대상 거버넌스 및 사업 기초 조사, 야적퇴비 등 오염원 점검 등을 수행하는 거버넌스 및 오염원 저감 사업으로 구성된다. 도암호 수질개선대책 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달리 계단식밭을 설치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만을 수행한다.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비점오염 저감, 녹조관리 사업은 2030년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BMPs 및 거버넌스 및 오염원 저감사업은 단년도 사업을 추진될 예정이다. 각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청호 수질개선대책 사업 세부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세부편성내역
비점오염 저감	1,903 = 인공습지 1개소 × 233 + 수상정원 1개소 × 1,670
녹조관리	296 = 플라즈마 1개소 × 12 + 부력수차 8개소 × 35.5
BMPs	10,942 = 물꼬 1,288 + 완효성 비료 6,457 + 지표피복 3,197
거버넌스 및 오염원 저감	1,940 = 거버넌스 393 + 오염원 점검 1,547
계	15,081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도암호 수질개선대책 사업 세부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세부편성내역
비점오염 저감	28,000 = 계단식 밭 2.8km2 × 10,000
계	28,0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소양호 오염원 집중관리 사업 세부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세부편성내역
비점오염 저감	3,517 = 식생수로 1개소 × 135 + 수상정원 6개소 × 194 + 식생대 1개소 × 400 + 여과형 시설 3개소 × 372 + 자연형 시설 1개소 × 350 + 인공습지 1개소 × 350
녹조관리	2,019 = 플라즈마 1개소 × 312 + 물순환설비 10개소 × 86.5 + 부력수차 2개소 × 71 + 녹조 씨앗제거(5,000㎡) 700
BMPs	5,341 = 물꼬 306 + 완효성 비료 2,875 + 지표피복 2,160
거버넌스 및 오염원 저감	882 = 거버넌스 179 + 오염원 점검 703
계	11,759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영산강 섬진강 오염원 집중관리 사업 세부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세부편성내역
비점오염 저감	1,020 = 인공습지 2개소 × 300 + 식생대 1개소 × 300 + 여과형 시설 1개소 × 120
BMPs	10,000 = 물꼬 987 + 완효성 비료 5,750 + 지표피복 3,263
거버넌스 및 오염원 저감	1,587 = 거버넌스 321 + 오염원 점검 1,266
계	12,607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낙동강(상류) 수질개선 사업 세부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세부편성내역
비점오염 저감	636 = 총인플랜트 × 636
BMPs	10,000 = 물꼬 740 + 완효성 비료 5,633 + 지표피복 3,626
거버넌스 및 오염원 저감	3,880 = 거버넌스 786 + 오염원 점검 3,094
계	14,516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낙동강(하류) 수질개선 사업 세부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세부편성내역
비점오염 저감	1,300 = 총인플랜트 × 1,300
녹조관리	8,400 = 플라즈마 20개소 × 420
BMPs	10,000 = 물꼬 835 + 완효성 비료 5,745 + 지표피복 3,420
거버넌스 및 오염원 저감	3,174 = 거버넌스 642 + 오염원 점검 2,532
계	22,874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BMPs 사업은 녹조문제에 집중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단년도 전액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BMPs 정착 대신 일회성 지원사업으로 끝날 우려가 있으므로, 농가의 지속적인 BMPs 활용 및 참여를 위한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 수원별 BMPs 사업은 물꼬[2], 완효성 비료[3], 지표피복[4]을 2027년도에만 전액 보조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개별 관리 주체가 개별 수요에 따라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BMPs 사업을 국가 중심(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통합사업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비점오염 저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단년도 신속·집중 사업으로 계획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수질개선대책 사업 BMPs 보급방식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그간 관리체계	'27년 수질개선사업
주체	지자체, 수자원공사가 개별사업 관리	전문기관 통합 관리
대상지역 및 사업시기	지역별 수요에 따라 분산적 추진	수계별로 묶어 단년도에 신속·집중 추진
추진방식	농업인 수요조사하여 추진	'26년부터 농가소통, 현장확인하여 거버넌스 구축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러나 동 사업은 수원 근처의 농민들이 녹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그 행동원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단년도 전액 지원을 하는 것은 자부담의 부재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행동원리 변화 목적 달성 실패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특히, 완효성 비료의 경우 1포당 약 3만원의 가격으로 일반 복합비료의 가격이 약 1~2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단년도 전액 지원을 통해 완효성 비료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더라도, 초기비용 부담으로 인해 일반 복합비료를 다시 쓰게 될 우려가 있다.

마찬가지로 물꼬관리와 지표피복 사업의 경우 해당 설비들을 농지에 설치함으로써 다년간 녹조 개선 효과를 낼 수 있겠으나, 해당 설비들이 이후 손상되는 경우 농민들이 단년도 경험만으로 동 설비들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2) 물꼬높이를 조절하여 논물의 무효방류량을 줄이고 마른 논 써레질을 통해 논 배수로 인한 흙탕물 유출 억제

3) 비료 표면이 코팅되어 있어 비료성분이 작물 성장시기,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완효성 비료를 사용, 시비주기 개선 및 시비량 절감

4) 농경지 표면을 볏짚거적, 옥수수대 등 작물 잔재물로 피복하여 강우시 토양 유출 등 비점오염원 발생 저감

유사한 사례로 비점오염저감사업의 내역사업인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원 집중관리사업은 사업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국고보조 50%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축산계 고농도 비점오염물질 관리 필요지역 등의 경우 지방비를 확보하여 사업 지속 추진을 원하는 경우 최대 2년 연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원 집중관리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21년부터 계속 수행
국고보조율	50%(국비 50%, 지방비 50%)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 경상보조)
시행방법	참여주체인 마을리더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 사업관리를 위한 대행기관 선정(지자체) 및 사업 추진·관리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상을 고려했을 때, BMPs 사업은 '27년 녹조 저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단년도 집중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더라도, 사업 이후 농가의 지속적인 BMPs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홍보 및 현장관리 등을 병행하고, '27년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등 기존 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질개선대책 사업은 유사사업인 비점오염저감사업과 연계하여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질개선대책사업 중 비점오염저감 사업, BMPs 사업, 거버넌스 및 오염원 저감 사업은 기 시행중인 비점오염저감사업[5]의 내역사업인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원 집중관리사업, 비점오염원 설치 국고보조사업의 추진방식과 상당부분 유사한 사업이다.

5)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31-302

[수질개선대책사업과 비점오염저감사업 비교]

구분	수질개선대책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녹조우심지역에 전액 보조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는 70% 그 외 지역에는 50% 보조
BMPs	물꼬, 완효성 비료, 지표피복 등을 단년도 전액 보조	3~5년 기간 동안 물꼬, 완효성 비료, 지표 피복 등에 50% 보조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질개선대책 사업은 국가가 직접 주요 수계(녹조 우심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신청이 아닌, 녹조 중점관리가 필요한 소권역 대상으로 선정하며, 녹조 발생시기인 2027년 6월 이전까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수질개선대책 사업 대상지역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고시」 상 비점오염원관리지역과 중복[6]되는 등 두 사업의 범위가 겹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두 사업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예시로 도암호,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등은 수질개선대책 대상 사업지역이면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해당한다.

6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사업[1]은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안정적 용수공급과 수자원확보를 통해 산업 대도약을 위한 메가프로젝트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신규로 1,196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사업	-	-	-	119,640	119,640	-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동 사업은 용수공급을 위한 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인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사업, 댐 증축 등을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는 호남권 수자원 확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재이용시설을 구축하는 호남권 반도체사업장 하수 재이용수 공급사업으로 구성된다.

[2027년도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사업 내역사업 및 내내역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7년 계획안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사업		**1,423,745**	**31,066**
① 주암광역 덕남분기-대상지 관로 신설	`27.1~`31.12	371,423	12,003
④ 덕남계통 분기-대상지 관로 신설	`27.1~`28.12	9,229	615
⑤ 나주댐 공업용수 공급관로 신설	`27.1~`30.12	251,205	9,024
⑥ 장흥댐-주암댐광역 도수관로 연계	`27.1~`31.12	323,035	4,076
⑧ 주암댐 취수장 도수관로 확충	`27.1~`32.12	468,853	5,348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미래대응기금 4337-310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7년 계획안
호남권 수자원 확보		**1,521,660**	**88,274**
② 동복댐 증축	`27.1~`29.12	896,300	67,038
③ 동복댐 비상도수로	`27.1~`29.12	321,360	7,786
⑨ 나주댐 농업용수 대체공급	`27.1~`30.12	304,000	13,450
호남권 반도체사업장 하수 재이용수 공급		**720,000**	**300**
⑦ 호남권 반도체산단 하수 재이용시설	`27.1~`30.12	720,000	300
계		3,665,405	119,640

주: 내내역사업의 번호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사업 총괄 모식도 상 번호에 대응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사업 총괄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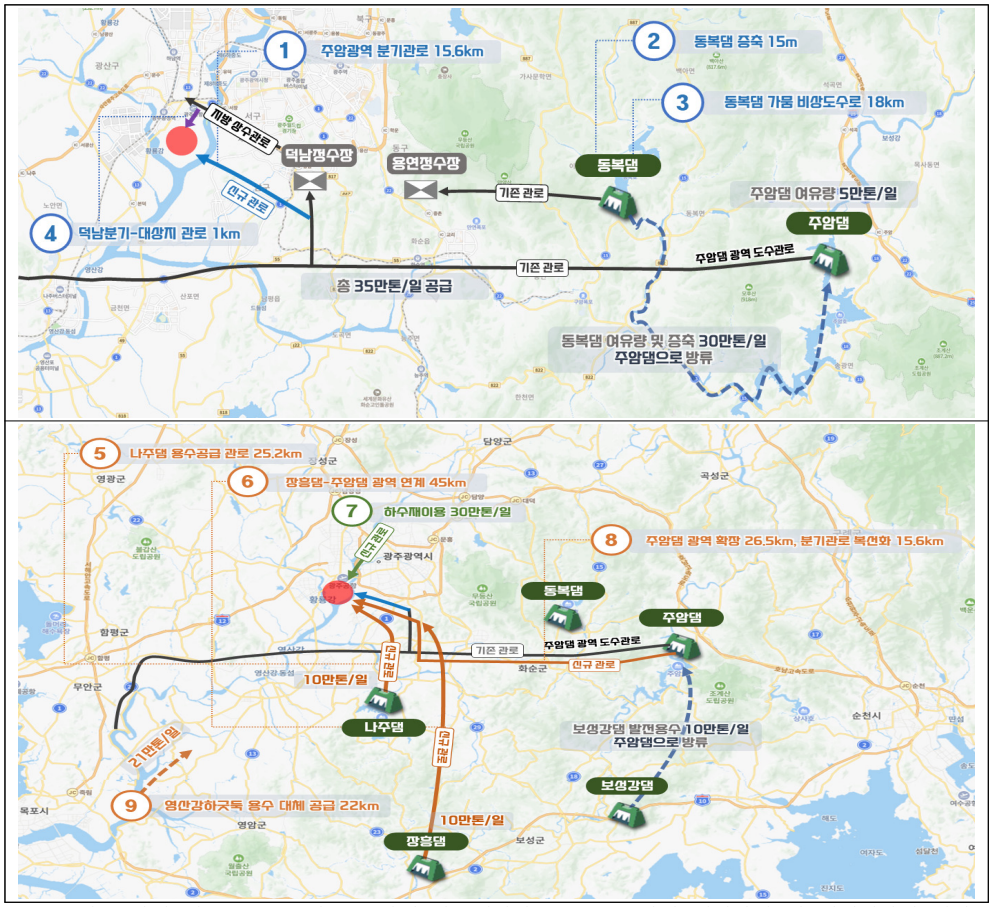

주: 모식도 상의 번호는 2027년도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사업 내역사업 및 내내역사업 현황의 사업별 번호에 대응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분석의견

첫째,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사업의 일부 내내역사업은 기본구상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시점에서 조기 착수를 위한 공사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내내역사업 중 주암광역 덕남분기-대상지 관로 신설사업과 동복댐 증축사업은 다른 내내역사업과 달리 초기공사비를 포함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사업 계획안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산출내역
○ 법정민간대행(320-08) : 88,274백만원 가. 호남권 수자원 확보 **1) 동복댐 증축 (67,038백만원)** **· (사업단계) 타당성조사, 설계, 초기 공사** **· ('27년 요구) 67,038백만원** **- 타당성조사비 9,000백만원** **- 기본·실시설계 6,000백만원** **- 초기 공사 52,038백만원** 2) 동복댐 비상도수로 (7,786백만원) · (사업단계) 기본구상·타당성조사, 설계 · ('27년 요구) 7,786백만원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비 1,500백만원 - 기본·실시설계 6,286백만원 3) 나주댐 농업용수 대체공급 (13,450백만원) · (사업단계) 타당성조사, 설계 · ('27년 요구) 13,450백만원 - 타당성조사비 4,200백만원 - 기본·실시설계 9,250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915백만원 가.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1) 덕남계통 분기-대상지 관로 (615백만원) · (사업단계) 설계

(단위: 백만원)

산출내역
· ('27년 요구) 615백만원 - 기본·실시설계 615백만원 나. 호남권 반도체사업장 하수 재이용수 공급 1) 호남권 반도체사업장 하수 재이용시설 (300백만원) · (사업단계) 기본조사설계 · ('27년 요구) 300백만원 - 기본조사설계 300백만원 ○ 일반출자금(460-01) : 30,451백만원 가.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1) 주암광역 덕남분기-대상지 관로 신설 (12,003백만원)** **· (사업단계) 설계, 공사** **· ('27년 요구) 12,003백만원** **- 설계 및 초기 공사비 12,003백만원** 2) 나주댐 공업용수 공급관로 신설 (9,024백만원) · (사업단계) 설계 · ('27년 요구) 9,024백만원 - 기본·실시설계 9,024백만원 3) 장흥댐-주암댐광역 도수관로 연계 (4,076백만원) · (사업단계) 설계 · ('27년 요구) 4,076백만원 - 기본·실시설계 4,076백만원 4) 주암댐 취수장 도수관로 확충 (5,348백만원) · (사업단계) 설계 · ('27년 요구) 5,348백만원 - 기본·실시설계 5,348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암광역 덕남분기-대상지 관로 신설사업의 경우 시급히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는 구간(우선구간)에 대해 집중설계하고, 해당 구간에 대해 '27년 하반기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조기 착공 예정이며, 동복댐 증축사업의 경우 인허가 사항 관련 관계기관 협의기간 단축 등으로 댐 건설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27년 상반기 완료하고, 하반기에 기본 · 실시설계를 완료 후, '27년말 공사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사업 추진절차]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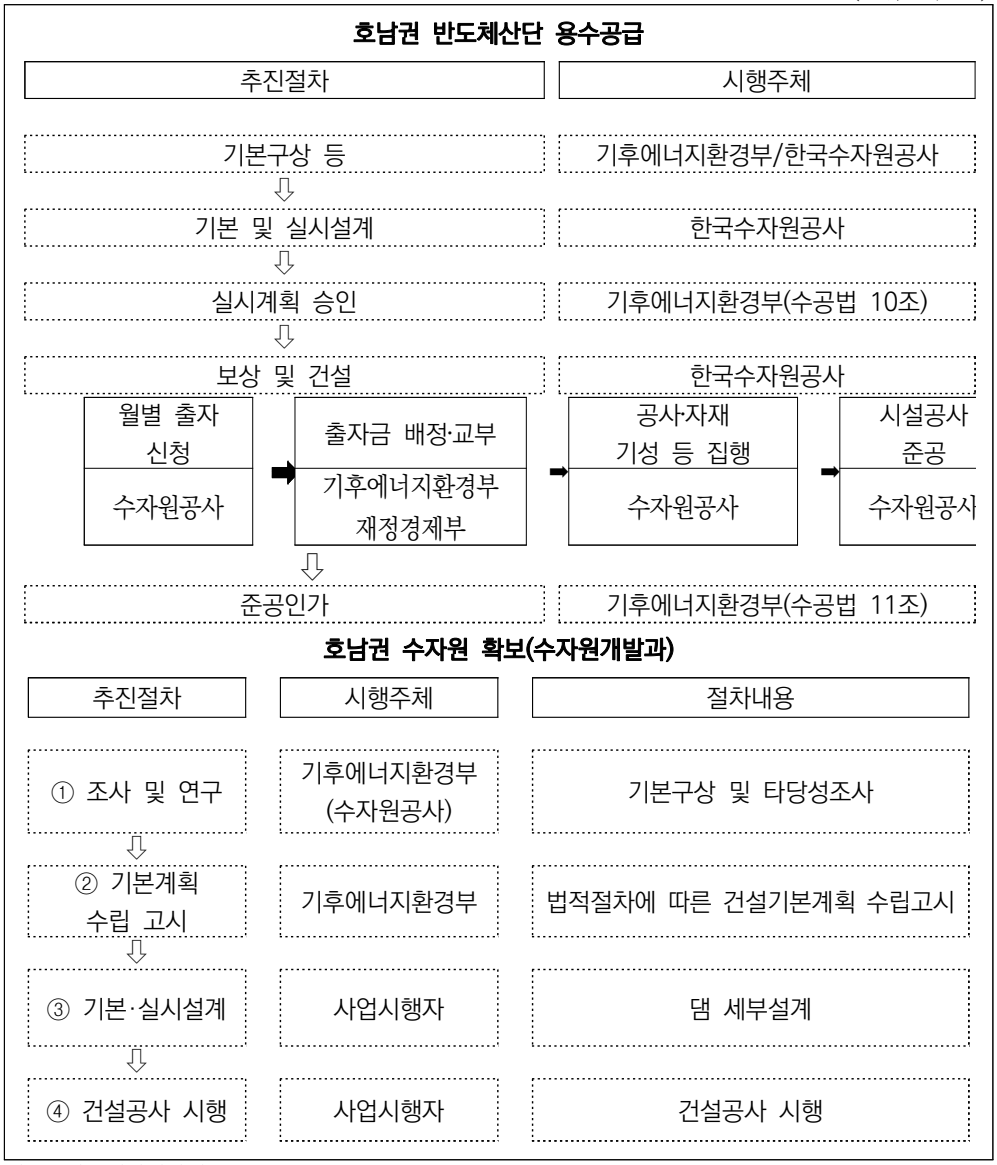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러나 용수공급 인프라 확충에 선행되는 사전절차는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동복댐 증축사업의 경우 현재 증축으로 화순·담양군 일대 마을 4개 면 일부가 수몰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몰 피해 등으로 인한 주민 협의 등이 지연될 경우, 착공 지연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예시로 낙동강 유역

맑은물 공급사업도 지역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인해 실시설계까지의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 사업의 사전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 공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사업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인프라 구축사업의 재원 안정성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수자원 SOC 관련 사업들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추진한다. 이는 SOC 관련 사업들은 장기간 막대한 사업비를 요구하는 사업들로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사업을 포함한 메가프로젝트 용수공급 사업들은 2027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되었다.

미래대응기금은 경기변동으로 인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2]으로, 대규모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이 아닌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고, 필요시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기능한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사업은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계정에 편성된 사업으로서, 성장동력계정은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성장동력계정의 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한다[3]. 총괄계정은 주로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한다[4].

---

2)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변동으로 인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7조(성장동력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성장동력계정의 재원은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성장동력계정의 운용 수익금으로 한다.

4)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5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총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가세수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초과세수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래기금으로의 전입금
3.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에 따른 미래기금으로의 전입금
4.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사업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국고지원만 1조 4,541억 7,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약 2,400억원의 지출이 요구되는데, 추가세수분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할 경우 세수 변동성에 따라 재원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사업은 「수도법」 상 공업용수도사업으로서 사업 착수 전에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10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모든 수도사업은 동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사업은 「수도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으로서 그 내용이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한 채 2027년도 기금계획안에 편성되었다.

유사한 사례로 신규댐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인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사업의 경우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법정계획 수립 전에 대규모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된 바 있다.

---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총괄계정 예수금”이라 한다)
7.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이하 “총괄계정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8.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교육·인재계정은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9.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10.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리금 수입
11. 총괄계정의 운용 수익금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2024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서]

세부사업명 (0000-000)	2023 본예산	2024(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5131-313)	-	9,304	6,304	△3,000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 동 사업은 신규 댐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임. ○ 댐 건설이 기후위기 시대에 효과적인 가뭄, 홍수 대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본구상·타당성조사 대상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법정 계획(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전에 대규모 예산부터 책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30억원 삭감

자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메가프로젝트 관련 용수공급 사업을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의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올해 중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진행하고, 설계 등 사업 착수 전('27년 초)에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속히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동 사업 등을 포함한 메가프로젝트 용수공급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고, 향후 대규모 수도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이나 사업착수 이전에 법정계획 반영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7 수자원공사 출자사업 분석

가. 현 황

수자원공사 출자사업[1]은 메가프로젝트 관련 용수공급 인프라의 신속 설치를 위한 투자 증가 등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누적적자 해소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용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신규로 2,50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수자원공사 출자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수자원공사 출자	-	-	-	250,000	250,000	-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사업과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7년도 수자원공사가 수행하는 메가프로젝트 용수공급 인프라 사업 현황[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수행기관	2027년 편성예산	지원비율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사업	한국수자원공사	105,275[2]	30~70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사업	한국수자원공사	8,091	30~40
계		113,366	-

주: 1) 위의 사업은 모두 2027년 신규사업임
2) 동 사업의 전체 예산은 1,196억 4,000만원이나, 일부 사업은 지자체(전남광주)에서 수행 예정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미래대응기금 4337-320

나. 분석의견

수자원공사 출자사업은 메가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따른 법정 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자원공사의 재무 부담을 고려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원에 대해 규정한 산업통상부고시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자원공사 출자 예산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따른 광역상수도 지원 비율간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서, 광역상수도 요금 적자와 향후 정부 용수공급 정책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수도기본계획은 광역상수도에 대한 국가 지원 비율을 30%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할 것을 규정[2] 하고 있으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그 비율을 50~100% 범위로 규정[3]하고 있다.

---

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전력(「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의 수소발전을 포함한다)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반도체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5.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지원)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체 비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은 해당 시설별 총사업비(설계·공사·감리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에 대한 지원 범위 및 비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반도체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중화 시설을 설치·확충하는 경우
2. 반도체클러스터의 공동 이용을 위한 산업기반시설로서 공급망 안정 및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동 사업은 국가수도기본계획상 지원율(30%)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지원율(50~100%)의 차이를 지원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누적 적자 해소 및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출자규모는 예상되는 추가 출자 규모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지원대상이 되는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조 4,145억원으로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지원되어야 하는 최소 비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2,829억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 투자여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출자사업으로는 이보다 329억원이 적은 2,500억원이 편성되었다.

[수자원공사 출자사업 산출 근거]

(단위: 억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고지원 (30% 기준) (A)	국고지원 (50% 기준) (B)	차액 (B-A)
주암댐 광역 분기관로	3,714	1,114	1,857	**743**
나주댐 용수공급 관로	2,512	754	1,256	**502**
장흥댐-주암댐 광역 도수관로	3,230	969	1,615	**646**
주암댐 광역 확장 사업	4,689	1,407	2,345	**938**
계	14,145	4,244	7,073	**2,829**

주: 위의 사업은 모두 2027년 신규사업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재작성

또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요금은 동결되었으나, 전력료 인상 등 원가상승으로 광역상수도 요금의 원가 현실화율이 78.1%까지 하락하면서 적자

경우
3.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로서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경우
4.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점유 면적 또는 입주 기업체 수가 전체 면적 또는 입주 기업체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인 경우
5. 국가·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해당 반도체클러스터에 조성·운영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산업기반시설인 경우
6.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반도체클러스터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2021-2025년 광역상수도 운용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광역상수도 영업손익은 2021년 1,123억원 이익에서 2025년 778억 손실로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요금 현실화율도 2021년 92.6%에서 2025년 78.1%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2021-2025 광역상수도 운용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매출액	13,960	14,178	14,243	14,386	14,607
매출원가	11,667	12,931	13,246	13,627	14,234
판매·관리비	1,170	1,147	1,238	1,198	1,151
영업손익	**1,123**	**100**	**△242**	**△439**	**△778**
요금 현실화율	**92.6**	**79.9**	**77.5**	**78.4**	**78.1**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후 용인 및 호남권 반도체 산단 등이 준공되어 가동될 경우 이들 산단에 대해서도 막대한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광역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서 이러한 광역상수도 수요 증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적자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정 지원비율이 준수되도록 수자원공사 출자사업에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한국수자원공사가 메가프로젝트 용수공급 인프라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비율에 대한 산업통상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비율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4]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은 2027년도에 이미 편성된 상황에서 그 구체적인 지원비율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산업통상부 고시에 의한 지원비율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해당 고시를 마련하여 메가프로젝트 산업기반시설 조성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4)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지원)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체 비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은 해당 시설별 총사업비(설계·공사·감리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에 대한 지원 범위 및 비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반도체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8 한국전력공사 국고보조사업 및 출자사업 분석

한국전력공사는 전력망 확충 수행체계에 있어 송·변전 분야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로서 전국 단위 전력망 확충 및 관리 의무를 전담해 왔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중심으로 전력설비를 확충하는 체계는 대규모 전력수요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공급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25.3.2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별도 특별법이 마련되었다.

또한, 정부는 2026.6.29. ①반도체, ②AI로봇 등 피지컬AI, ③AI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의 대규모 투자계획과 전력·입지 등의 인프라 확충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동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전력 인프라 확충이 요구되는바, 2027년도 예산안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분야에 1조 5,48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메가프로젝트 전력 인프라 사업 예산 현황[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회계/기금	수행기관	2027년 편성예산	보조율
송전단 ESS 구축지원 사업	미래대응기금	한국전력거래소	572,409	50
한국전력공사 출자	미래대응기금	한국전력공사	500,000	출자
변전소 구축	미래대응기금	한국전력공사	65,782	100
재생e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ESS 설치 보급사업	미래대응기금	한국전력공사	2,376	100
재생e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지중화 지원사업	미래대응기금	한국전력공사	2,679	60
해상풍력 공동접속 설비 지원사업	미래대응기금	한국전력공사	19,600	70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미래대응기금	한국전력공사	350,000	100
국제 계통 전기품질강화를 위한 안정화설비 구축사업	전력산업 기반기금	한국전력공사	36,000	50
계			1,548,846	-

주: 1) 위의 사업은 모두 2027년 신규사업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이에 따라 2027년에는 기존과는 달리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하던 재생e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지중화 지원사업 등 전력망 확충 사업들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들이 다수편성되었다. 그 외 전력분야 사업들 중 송전단 ESS 구축지원 사업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수행하며, 한국전력공사 출자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및 출자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미비, 한국전력공사의 법적 사채발행한도 준수 문제,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의 미래대응기금 편성 적정 여부 등이 문제되는 바, 이하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8-1. 메가프로젝트 전력망 확충 사업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지정 필요 등

가. 현 황

한국전력공사에서 수행하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사업 중 전력망 확충을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2027년 국고지원 한국전력공사 수행 사업]

(단위: 백만원, %)

사업명	회계/기금	2027년 편성예산	보조율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미래대응기금	65,782	100
재생e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ESS 설치 보급사업	미래대응기금	2,376	100
재생e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지중화 지원사업	미래대응기금	2,679	60
해상풍력 공동접속 설비 지원사업	미래대응기금	19,600	70
국제 계통 전기품질강화를 위한 안정화설비 구축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36,000	50
계		126,437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분석의견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수행하는 전력망 확충 사업대상들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상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조속히 지정하며, 아울러 전력망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가 지원에 대한 시행령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5년 3월 25일 제정된 법안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그러나 이번 메가프로젝트 관련 전력망 확충 사업들

은 절차상 문제 및 규정 미비로 동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이하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재생e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지중화 지원사업을 제외한 다른 국고보조사업들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상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받지 못해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주요내용]

□ (대상) 345kV 이상 대용량 송·변전 설비* 중 전력망위원회에서 선정
* 동·서해안 발전제약 해소 선로, 용인 반도체 등 공급선로, 호남 재생e 융통선로 중심으로 선정

〈특별법 제정 이후 송·변전설비 건설 법령 적용 체계〉

구분	345kV 이상 설비		154kV 숲 설비
	전력망위원회 선정	일반 설비	
적용	전력망 특별법 적용	전원개발촉진법 적용	

□ (거버넌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위원회 구성
- o (구성) 위원장 1명(국무총리) 및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국회 추천 등) 위원
- o (역할) 대상사업 선정, 갈등조정(입지선정 등), 범부처 이해 조정 등

□ (기본계획) 30년 단위(5년 주기) 초장기 국가 전력망 확충 전망 제시

□ (특례) 인허가 특례, 보상현실화, 입지선정 기간 단축 등
- **o (인허가) 의제 사항 확대*, 지자체 부대사업 인허가 신속 처리 등**
  - *** 기존 전촉법 18개(도로법, 하천법, 국계법 등)+신규 17개(백두대간보호법, 해사안전법, 건축허가 등)**
- **o (보상·지원) 토지주와 지역주민 지원확대 및 지자체 재정 지원**
- **o (입지선정) 지자체 협조 의무, 기존(24개월) 대비 입지선정 기간 단축, 생략* 등**
  - *** 전체 지중화 설비, 기존 설비 활용 설비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지선정 생략 가능**

□ (상생협력) 정부-한전의 지자체 지원 및 **정부의 한전 지원 원칙**

□ (SOC 공동건설) 전력망 설비와 철도·도로 공동건설방안 근거 규정

□ (사업자) 송전사업자(한전)를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자로 규정

자료: 산업통상부

메가프로젝트상 전력망 확충 사업들은 대부분 34만 5천볼트 이상의 송전·변전 설비이나, 재생e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지중화 지원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의 경우 2027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됨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에 의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받지 못한 상황이다[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 동 설비들은 「전원개발촉진법」 상 전원설비로서 그에 따른 의견청취나 입지선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사업기간의 지연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 사업들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2025년 3월 제정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지원기준에 대한 시행령이 2026년 10월 현재까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행령 마련이 필요하다.

「전원개발촉진법」은 정부가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그러나 동 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시행령 등 구체화된 규정도 부재하고, 전력망 확충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수입과 자체 채권(한전채) 발행을 통해 전액 부담한다는 기존 방식에 따라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국고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별도로 명시하였다[3]. 이는 사실상 사문화된 「전원개발촉진법」 대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

1) 재생e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지중화 지원사업은 2025.10.1. 개최된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바 있다.

2) 「전원개발촉진법」
제15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5조(국가의 지원) 국가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은 아직까지 국가의 지원방식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행령 제정 당시(`25.3~9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제정하지 못하였으나, 9월 중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26년 하반기 내 공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개발사업 지원 기준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에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4].

4) 2026년 9월 23일 동 취지를 반영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다.

8-2. 한전 사채발행한도 준수 대책 마련 필요

가. 현 황

한국전력공사 출자[5]는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연료비 급등으로 발생한 한국전력공사의 누적적자 해소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출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5,0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한국전력공사 출자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한국전력공사 출자	-	-	-	500,000	500,000	-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는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 최초 상장을 위한 자본금 출자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출자로, 2021년에서 2025년까지의 누적적자 36.1조원에 대한 이자인 약 1조원의 50%인 5,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나. 분석의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8년부터 한국전력공사 사채발행한도는 5배에서 2배 이내로 축소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적 사채발행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6]으로, 자산규모와 총수익 중 자체수입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이다.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설비 구축, 전력구입비 조달 등을 위한 사채를

5) 코드: 미래대응기금 4337-350

6)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행하고 있다[7]. 「한국전력공사법」은 과도한 사채발행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사채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 이내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LNG, 유연탄 등 발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2023년도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이 불가능하여 전기설비의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력거래대금 확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2022-2023 한국전력공사 당기순손실에 따른 사채발행한도액 등의 변화]

(단위: 조원)

구분	자본금+적립금	사채발행 한도액	사채발행 예상액	비고
2022년	45.9	91.8	71.4	20.4 여유
2023년	15.9	31.8	110.0	78.2 초과 (사채발행 불가능)

주: 위 표는 2022년 당시 사채발행한도를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과정에서 작성된 표로 실제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토보고서

이에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8]이 의결되었다.

---

7)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 사채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사채의 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207호(2022. 12. 31.) 제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이후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배수는 2022년 3.4배수에서 2023년 4.5배수로 증가 후, 2026년 상반기 2.9배까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채발행한도기준액이 되는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이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 사채발행배수 현황]

(단위: 조원, 배)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상반기
자본금	3.2	3.2	3.2	3.2	3.2	3.2
적립금	42.7	17.7	14.3	14.9	21.1	21.1
자본금+적립금(A)	45.9	20.9	17.5	18.1	24.3	24.3
사채발행 한도배수	2	5	5	5	5	5
사채발행한도	91.8	104.6	87.6	90.5	121.7	121.7
사채잔액(B)	38.1	70.6	79.6	75.6	73.5	71.5
발행배수(B/A)	0.8	3.4	4.5	4.2	3.0	2.9

자료: 「2026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그러나 2026년 상반기 자본금+적립금을 기준으로 사채발행 한도배수가 2배로 환원될 경우 사채발행한도는 48.6조원이 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22.9조원의 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5,000억원의 출자가 이루어지긴 하나, 사채발행 한도배수가 2배인 경우 해당 출자는 사채발행한도를 1조원 늘리는데 그침에 따라 한도배수를 준수하기에는 충분한 규모의 지원이 되지 못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망한 사채발행한도 전망에 따르면, 사채발행한도 기준액인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사채발행배수는 2배 이내로 줄어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8) 의안번호 제2118839호, 대안

[한국전력공사 사채발행한도 전망]

(단위: 조원, 배)

구분	2025(실적)	2026	2027	2028	2029
① 자본금	3.2	3.2	3.2	3.2	3.2
② 적립금 전망	21.1	22.2	25.2	29.8	33.5
③ 자본금+적립금(①+②)	24.3	25.4	28.4	33.0	36.7
④ 사채발행배수 전망(배)	3.0	3.0	2.7	2.3	2.1
법정한도 2배내 충족 여부	×	×	×	×	×

주: 1. 자본금은 2021년 이후 3조 2,098억원으로 변동이 없음
2. 사채발행배수는 사채발행 잔액을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으로 나눈 값임
3. 「2026~2030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기반으로 산출·추정한 수치이며, 최근 국제정세로 인한 환율·에너지가격불안정 심화로 해당 수치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자료: 「2026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이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등 대규모 전력망 확충에 따른 사채발행도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전력공사법」 상 사채발행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출자지원[9]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9)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4대강 사업 투자 7조 9,780억원에 대한 금융비용 및 투자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수자원공사 지원(일반회계 5131-309)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8-3.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사업의 미래대응기금 편성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사업[10]은 매월 한국전력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였던 전기요금 복지할인 및 특례할인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분담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3,5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	-	-	350,000	350,000	-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전기요금 특례할인으로 구성된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11]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 또는 비율을 할인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정책적 목적으로 특별히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초중고·유치원 동·하계 냉난방요금 지원, FTA로 인한 농가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10) 코드: 미래대응기금 4337-370

11) (적용대상) 장애인·상이유공·독립유공·기초생활·차상위계층·3자녀 이상·대가족(5인이상)·출산가구·사회복지시설·생명유지

[2025년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

(단위: 천호, 억원)

구분	계약종별		할인내용	대상호수	할인금액
장 애 인	주택용		월 16천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658	1,216
상이유공	주택용			6	12
독립유공	주택용			7	14
기초생활 수 급 자	주택용	생계 의료	월 16천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1,199	2,003
		주거 교육	월 10천원 한도 (하계 12천원 한도)	363	428
	심 야		갑 31.4%, 을 20%	21	58
차상위 계 층	주택용		월 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177	176
	심 야		갑 29.7%, 을 18%		
3자녀이상	주택용		30% (월 16천원 한도)	515	800
대가족	주택용			299	266
출산가구	주택용			592	834
사회복지 시 설	일반용		30%	109	1,276
	주택용				
	심 야		갑 31.4%, 을 20%		
생명유지	주택용		30%	28	58
합계				3,974	7,141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도 전기요금 특례할인 현황]

(단위: 호, 억원)

구분		할인내용	대상호수	할인금액
민생 안전	학교 (초·중·고,유치원)	전력량요금 : 동하계 냉·난방 6~50% 할인 기본요금 : 당월피크 기준	1.6만	1,313
FTA 보완	미곡종합처리장	50% 할인	199	129
	천일염	20% 할인	429	0.7
합계			-	1,443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동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복지할인 중 일부와 특례할인 전부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2027년도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27년 계획안</th><th>산출내역</th></tr>
<tr><td>전기요금 복지할인
197,000백만원</td><td>〈 전기요금 복지할인 197,000백만원, 순증 〉
* 197,000백만원 =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유공자 ’26년 지원규모(추정) × 50%
<table>
<tr><th colspan="2">대 상</th><th>호수
(만호)</th><th>할인금액 (月)</th><th>지원규모
(억원)</th></tr>
<tr><td rowspan="2">기초생활
수급자</td><td>생계의료</td><td>120</td><td>16천원 (하계 2만원)</td><td rowspan="2">1,250</td></tr>
<tr><td>주거교육</td><td>36</td><td>10천원 (하계 12천원)</td></tr>
<tr><td colspan="2">차상위계층</td><td>18</td><td>8천원 (하계 1만원)</td><td>90</td></tr>
<tr><td colspan="2">장애인, 상이·독립유공</td><td>67</td><td>16천원 (하계 2만원)</td><td>630</td></tr>
<tr><td colspan="2">합계</td><td>241</td><td></td><td>1,970</td></tr>
</table></td></tr>
<tr><td>전기요금 특례할인
153,000백만원</td><td>〈 전기요금 특례할인 153,000백만원, 순증 〉
* 153,000백만원 =
초·중·고, 유치원 하계 냉난방요금 지원 140,000백만원
+ FTA 농가지원 13,000백만원</td></tr>
</table>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분석의견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사업은 미래대응기금의 성장동력계정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동 계정의 용도를 고려하였을 때, 복지사업을 성장동력계정에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경기변동으로 인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12]으로, 대규모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이 아닌 생산적 지출에

12)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변동으로 인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활용하고, 필요시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기능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교육·인재계정, 총괄계정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성장동력계정은 인공지능 개발, 국가전략기술 육성, 연구개발 등 성장동력 지원 사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동력 지원 사업에 쓰이는 계정이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주요사업]

계정명	주요사업
청년계정 (13.3조원)	① (일자리·창업) 청년첫취업지원(신규0.4조원), 창업사업화(1.0조원) ② (주거안정)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신규1.4조원) ③ (자산형성) 청년미래적금(1.7조원), 청년기회자금(신규0.1조원) ④ (혼인·출산)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2.9→3.8조원) ⑤ (생활·문화) 청년문화예술패스(361억원→0.8조원)
성장 동력계정 (14.2조원)	① (AI) 프론티어급 AI 개발(신규4.7조원) 모두의 AI(신규0.25조원) 제조암묵지 R&D(신규0.3조원), AIDC 생태계(신규0.3조원) ② (전략기술) 자율주행실증도시(0.1→0.8조원), 차세대 발사체(0.1→0.3조원) ③ (지분투자) 공급망안정화(0.2조원), PF사업장 정상화 펀드(신규0.5조원) ④ (전력·용수) 한전출자(신규0.5조원), 서남권 반도체산단 용수(신규0.1조원)
지방계정 (15.3조원)	① (일반재원) 지방미래성장지원금(신규3.5조원),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신규1.5조원) ② (농어촌) 농업 AX실증(신규0.02조원), 농·수산물 유통개선(신규0.01조원) ③ (행정통합) 전남·광주 통합지원금(일반2.85조원, 사무이관0.65조원) ④ (기타) 지방 호텔 건립 지원(신규0.15조원) ※ (여유자금) 5조원
교육·인재 계정 (10.1조원)	① (초격차 인재) 4대 과기원(0.7→0.8조원), 이공계 장학금(0.1→0.2조원), 창업중심대학(신규0.1조원), AI중심대학(0.1→0.2조원) ② (고등·영유아) 미래인재성장자금(신규0.7조원), 교사·아동비율 개선(0.3→0.5조원)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신규0.2조원), 인턴학기제(신규0.5조원) ※ (여유자금) 2.5조원
총괄계정 (109.4조원)	ㅇ(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 12.5조원 ※ (여유자금) 96.9조원 + α* * '26년 세입재추계(26.9월) 이후 변경된 '26년 내국세 수입 증가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처럼 성장동력계정은 신산업 육성, 미래 핵심 기술 R&D, 기후변화 대응 혁신 기술 보급,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성장 기반 조성 및 생산성 향상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나 특정 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회복지 정책으로서, 본래 성장동력계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사업은 매년 3,500억원의 지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추가세수분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할 경우 세수 변동성에 따라 재원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망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성장동력계정에 편성된 다른 인프라 구축 사업과 달리 복지성 사업인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사업을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수소차 보급사업[1]은 수소승용차, 수소화물차, 수소버스, 수소폐기물청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보조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전년 수정 계획 대비 1,305억원이 감액된 4,457억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수소차 보급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무공해차 보급사업	1,594,659	2,284,513	2,434,513	3,008,973	574,460	23.6
수소차 보급사업	399,870	576,200	576,200	445,700	△130,500	△22.6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7년도 예산안의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수소승용차는 6,000대 지원예산 1,200억원, 수소버스(저상) 600대 지원예산 1,200억원, 수소버스(고상) 800대 지원예산 2,000억원, 수소화물차 5대 지원예산 11억 5,000만원 등 총 4,457억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수소차 보급사업 계획안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수소차 보급	- (승용) 6,000대*20=120,000 - (수소버스, 저상) 600대*200=120,000 - (수소버스, 고상) 800대*250=200,000 - (수소화물) 5대*230=1,150 - (수소폐기물청소차) 5대*700=3,500 - (스택교체) 30개*35=1,05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134-311의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수소차 보급사업은 지출구조조정 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원 물량과 단가 모두 감축되었는데, 이는 수소차에 대한 수요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물량과 단가 설정이 필요하다.

수소차 보급사업의 2027년도 예산편성내역을 2026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보조금 지급단가와 보급계획 물량 모두 감소하여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승용차는 보급 물량은 6,000대로 유지되었으나, 보조금 지급단가가 2,25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수소버스(저상)의 경우 보급물량은 전년 800대에서 200대 감소한 600대가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지급단가도 2억 1,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1,000만원 감소하였다. 수소버스(고상)의 경우 전년도 1,000대에서 200대 감소한 800대를 계획물량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 지급단가도 2억 6,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소하였다.

[수소차 보급사업 2027년도 예산편성 상세내역]

2026년 예산	2027년 계획안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576,200,000천원 가. 수소차 자치단체 보조 (576,200,000천원) · **수소승용 6,000대 × 22,500천원** = 135,000,000천원 · **수소버스(저상) 800대 × 210,000천원** = 168,000,000천원 · **수소버스(고상) 1,000대 × 260,000천원** = 260,000,000천원 · 수소화물 10대 × 250,000천원 = 2,500,000천원 · 수소폐기물청소차 10대 × 720,000천원 = 7,200,000천원 · 스택교체 100개 × 35,000천원 = 3,500,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445,700,000천원 가. 수소차 자치단체 보조 (445,700,000천원) · **수소승용 6,000대 × 20,000천원** = 120,000,000천원 · **수소버스(저상) 600대 × 200,000천원** = 120,000,000천원 · **수소버스(고상) 800대 × 250,000천원** = 200,000,000천원 · 수소화물 5대 × 230,000천원 = 1,150,000천원 · 수소폐기물청소차 5대 × 700,000천원 = 3,500,000천원 · 스택교체 30개 × 35,000천원 = 1,050,000천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첫째,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유형별 보급물량 및 지원단가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수소차 보급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수소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지원유형별로 보급물량과 지원단가가 일괄적으로 삭감되었다. 그러나 2027년 수소차보급사업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승용차와 저상버스는 2026년 대비 수요가 감소했으나, 고상버스의 경우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였다.

[2026-2027년 수소차보급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단위: 대)

구분	승용	버스(저상)	버스(고상)	화물	청소	스택	계
2026	7,472	**904**	**842**	3	5	60	9,286
2027	6,588	**832**	**938**	12	1	107	8,478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수소화물차와 수소청소차의 경우 수소화물차는 수요가 2026년 3대에서 2027년 12대로 크게 증가하였고, 수소청소차는 2026년 5대에서 2027년 1대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계획안은 두 차량유형에 대해 2026년 10대에서 2027년 5대로 일률적으로 보급물량을 삭감하였다. 또한, 수소차의 발전장치인 스택은 2026년 60대에서 2027년 107대로 수요가 늘어났으나, 오히려 2027년 보급물량은 30대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차량유형별로 예산부족이나, 집행부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급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차종에 대한 지원단가 감축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보급물량 뿐만 아니라 지원단가도 감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소차 보급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업예산이 집행부진 등을 이유로 삭감되어 왔으나, 지원단가의 경우 변동없이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27년도 계획안에서는 모든 지원유형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원단가 감축이 이루어졌다.

[2025-2027 수소차 차종별 지원금액 변화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5	'26	'27(안)
수소승용차		22.5	22.5	20
승합차	수소버스(저상)	210	210	200
	수소버스(고상)	260	260	250
수소화물차		250	250	230
수소청소차		720	720	7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러한 일괄 삭감은 2024년 이후 보급실적이 개선 추세에 있는 수소차 보급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2021-2026 수소차 차종별 계획물량 대비 보급실적을 보면, 수소승용차는 2024년부터 증가추세에 있으며, 수소버스는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2021-2026 수소차 차종별 계획물량 대비 보급실적]

(단위: 대, %)

구분	연도	보급계획물량 (A)	보급실적 (B)	달성률 (B/A)
수소승용	2021	15,000	8,473	56.5
	2022	17,650	10,104	57.2
	2023	16,000	4,294	26.8
	2024	6,800	2,717	40.0
	2025	7,300	5,708	78.2
	2026.8.	6,000	3,997	66.6
수소버스	**2021**	**180**	**54**	**30.0**
	2022	**340**	**152**	**44.7**
	2023	**700**	**368**	**52.6**
	2024	**1,720**	**1,044**	**60.7**
	2025	**2,000**	**1,177**	**58.9**
	2026.8.	**1,800**	**679**	**37.8**
수소화물 수소청소차	2021	5	5	100
	2022	10	-	-
	2023	220	11	5.0
	2024	30	23	76.7
	2025	20	18	90
	2026.8.	20	2	1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신규등록 대수 기준, '22년, '25년 추경예산 기준으로 집계

수소차 보급사업에 대한 보급물량 조정은 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조정을 함으로써 예산의 불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차량별 지원금액을 줄이는 것은 수소차 구매자의 실질적 구매비용을 증가시켜 수요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차 보급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지원단가를 줄이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분석

가. 현 황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1]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공용 충전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거나, 구축비용 일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 계획안에서 전년도 수정 계획 대비 2,668억 7,500만원 감액된 6,640억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528,759	930,938	930,938	664,063	△266,875	△28.7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동 사업은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사업,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사업, 운영비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무공해차 인프라펀드는 2026년도에 신설된 내역사업으로 무공해차 수요 정체, 연료가격 불확실성 등으로 단기에 충전소 운영수익 확보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투자가능한 정책펀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새롭게 편성하였다.

2023년 4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 국가 NDC 목표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기차·수소차 보급목표를 2030년까지 450만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보급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기차 충전기는 123만기, 수소충전소의 경우 660기를 2030년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134-312

10-1.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수소승용차 활성화를 위한 승용충전소 직접 운영 검토 필요

가. 현 황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수소차 충전인프라 지원을 통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전년 수정 계획 대비 700억원이 감액된 1,197억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528,759	930,938	930,938	664,063	△266,875	△28.7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113,210	189,700	189,700	119,700	△70,000	△36.9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동 사업의 시행주체는 민간부문과 지자체로 각각 나누어진다. 민간부문에서의 충전소 구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주관하여 민간자본보조(국고 70%) 방식으로 지원하며, 지자체의 충전소 구축은 지자체 신청을 통하여 지자체자본보조(국고 70%)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수소차 차종별로 승용충전소, 상용충전소로 각각 구분되며, 수소연료 종류에 따라 기체수소, 액화수소로 나누어 충전소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충전소 구축사업 추진체계를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협회에서 사업공모 사업수행기관(민간사업자)을 선정한 이후 보조금 지급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며, 수소충전소 구축 완료 후 협회에서 보조금을 정산하여 잔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반납하는 구조이다.

지자체 부문의 충전소 구축사업 추진체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각 시도의 보조금 신청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하면 각 시도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충전소를 구축하고, 구축이 완료된 이후 각 시도에서 보조금을 정산하여 잔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반납하는 구조이다.

[민간 부문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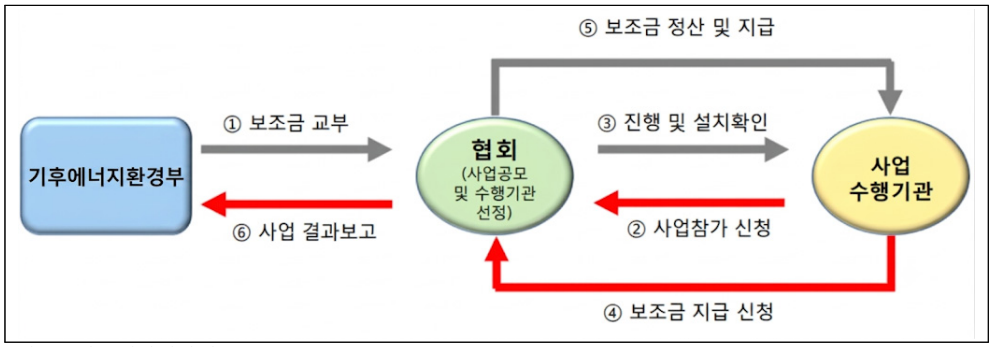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부문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추진체계]

국고보조금 신청	시·도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서 검토 및 예산확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도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시·도지사 → 사업자
사후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시·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분석의견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수소승용차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설치 수요가 감소 중에 있는 승용충전소를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6년 8월 기준 전기차 및 수소차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차는 116만 968대가 보급되었으며, 수소차는 4만 9,220대가 보급되었다. 반면, 2026년 8월 기준 전기충전소 및 수소충전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충전소는 541,567대, 수소충전소는 493기가 구축되어 있다. 이에 전기차 충전소 1개소당 차량대수는 2.1대이지만, 수소차의 경우 1기당 99.8대로 전기차 충전시간이 수소차에 비해 평균적으로 길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충전인프라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연료별 차량 및 충전소 누적 등록현황]

(단위: 대, 기)

구분	전기차	수소차
차량누적대수	1,160,968	49,220
충전소누적수량	541,567	493
충전소당차량대수	2.1	99.8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또한, 수소차 차종별 현황을 보면, 수소승용차 누적대수는 4만 5,607대이며, 상용차 누적대수는 3,613대이다. 반면, 승용차 충전이 가능한 일반충전소 및 이동식 충전소 누적개소는 237개소, 상용차 충전이 가능한 상용 충전소 누적개소는 228개소로, 승용차 충전소당 승용차 대수는 192.4대, 상용차 충전소당 비승용차 대수는 15.8대로, 승용차 충전소에 대한 확충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수소차 차종별 누적 등록현황]

(단위: 대, 기)

구분	승용차	상용차 (승합, 화물, 청소차 등)
차량누적대수	45,607	3,613
충전소누적수량	237	228
충전소당차량대수	192.4	15.8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그러나 수소차 충전인프라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충전소 구축은 승용충전소보다는 상용충전소 구축에 집중되어 있다. 2027년도 계획안의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민간 부문 충전소 설치지원을 위하여 상용충전소 85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자체 부문 충전소 설치지원을 위하여 승용충전소 56억원, 상용충전소 283억 5,000만원 등 총 339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총 1,197억원의 수소충전소 설치비용 예산이 편성되었다. 개소 기준으로 보면, 승용충전소는 3개소, 상용충전소는 47개소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승용충전소에 대한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2023년 12월 18일, 정부에서 발표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2]의 일환인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 2023.12.18., 관계부처 합동

[2027년도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계획안 세부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2027년도 계획안(총 119,700백만원)
○ 민간자본보조(320-07) : 85,750백만원
1. 상용충전소 : 85,750백만원(33개소)
가. (단년도 2기) 2개소×6,000백만원×70%=8,400백만원
나. (2개년1차 2기) 4개소×6,000백만원×50%×70%=8,400백만원
다. (2개년2차 2기) 13개소×6,000백만원×50%×70%=27,300백만원
라. (2개년1차 4기) 4개소×10,000백만원×50%×70%=14,000백만원
마. (증설 1기) 3개소×2,500백만원×70%=5,250백만원
바. (증설 2기) 2개소×4,000백만원×70%=5,600백만원
사. (2개년1차, 액화) 2개소×10,000백만원×50%×70%=7,000백만원
아. (2개년2차, 액화) 2개소×10,000백만원×50%×70%=7,000백만원
자. (증설, 액화) 1개소×4,000백만원×70%=2,800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33,950백만원
1. 승용충전소 : 5,600백만원(3개소)
가. (단년도 1기) 2개소×3,000백만원×70%=4,200백만원
나. (증설) 1개소×2,000백만원×70%=1,400백만원
2. 상용충전소 : 28,350백만원(14개소)
가. (단년도 2기) 4개소×6,000백만원×70%=16,800백만원
나. (2개년1차 2기) 6개소×6,000백만원×10%×70%=2,520백만원
다. (2개년2차 2기) 1개소×6,000백만원×90%×70%=3,780백만원
라. (2개년1차 4기) 1개소×10,000백만원×10%×70%=700백만원
마. (증설 1기) 1개소×2,500백만원×70%=1,750백만원
바. (증설 2기) 1개소×4,000백만원×70%=2,800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최근 민간보조사업 공모결과를 고려했을 때, 승용충전소 구축은 민간역할만으로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워보인다. 2025-26 수소충전소 민간보조사업 공모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선정 물량은 17개소이고, 2026년 상반기 선정 물량은 28개소로 민간의 충전인프라 투자 수요는 크게 늘었으나, 일반 충전소에 대한 선정 건수는 0개소로 민간 투자 수요가 상용차 중심의 특수충전소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5-2026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민간보조 유형별 공모 결과]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일반	특수	액화	이동식[1)]
2025년	17	-	13	4	0
2026년	28	-	26	1	1

주: 1) 2026년부터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 유형 신설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편, 수소충전소는 민간자본보조와 자치단체자본보조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비해, 전기충전소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외지역 등에 한국환경공단이 역무대행사업비로 직접 초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26년에는 660기 직접설치를 위한 99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27년 예산안에는 710기 직접설치를 위한 1,06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예산편성 현황]

2026년 예산	2027년 계획안
○ 민간자본보조(320-07) : 451_750백만원 • 급속 3,790기 × 150백만원 × 50% = 284,250백만원 • 중속 2,000기 × 30백만원 × 50% = 30,000백만원 • 스마트 50,000기 × 4.4백만원 × 50% = 110,000백만원 • 스마트 교체 15,000기 × 3백만원 × 50% = 22,500백만원 • 이륜교환형 500기 × 20백만원 × 50% = 5,000백만원 **○ 역무대행사업비(320-08) : 99,500백만원** **• 초급속 660기 × 150백만원** **= 99,000백만원**	○ 민간자본보조(320-07) : 239,172백만원 • 급속 4,214기 × 60백만원 × 50% = 126,422백만원 • 중속 1,300기 × 30백만원 × 50% = 19,500백만원 • 완속 35,000기 × 4.4백만원 × 50% = 77,000백만원 • 완속_교체 7,500기 × 3백만원 × 50% = 11,250백만원 • 이륜교환형 500기 × 20백만원 × 50% = 5,000백만원 **○ 역무대행사업비(320-08) : 106,500백만원** **• 초급속 710기 × 150백만원** **= 106,500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이 수소 시장 창출, 수소산업 육성 등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목적이 있는 바,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 구축 사업을 통해 민간 보조사업의 사각지대(주민편의성 등)를 보완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승용충전소 당 수소승용차 대수가 192.4대로 수소승용차 충전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승용충전소 구축을 민간에만 맡기는 것은 수소차의 대부분을 수소승용차가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소차 보급 확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2027년 계획안에서도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따른 승용충전소 구축이 3개소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승용충전소 구축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충전소의 사례와 같이 수소충전소 소외지역 등에 대해 직접 충전소를 구축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수행 위탁사업: 법적근거 보완 필요

가. 현 황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2007년 11월「대기환경보전법」개정과 함께 처음 설립되었으며,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의 보급사업,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정 협회이다.[3][4]

이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정책 추진과 함께 충전인프라 기반 마련이 중요해짐에 따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2015년부터는 기존 수행업무에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위탁수행하였고, 2018년부터는 수소차 충전시설 운영·관리 업무도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2021년에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사업을 추가하였고, 2022년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미래차 충전인프라 전문인력 양성사업, 환경개선부담금제도 안내센터 운영사업까지 각각 수행하고 있다.

---

3)「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①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업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동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의 보급
2.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개발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6년 기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수행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2026년 편성예산 4,202억 8,000만원 중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관련 사업이 4,186억 1,000만원으로 전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수행사업 예산의 99.6%를 차지하고 있다.

[2026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수행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2026년 편성예산	2026년 8월 집행액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관련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운영관리사업**	**98,573**	**57,913**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125,000**	**23,500**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사업	**174,300**	**8,400**
	수소차 연료구입비 지원사업	**19,116**	**9,558**
	수소차 충전인프라 운영사업	**1,011**	**361**
	미래차 충전인프라 전문인력 양성사업	**610**	**-**
소계		**418,610**	**99,732**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관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후관리	800	558
	배출가스 관련 불법장치 모니터링	320	128
	결함확인검사(대형차)	150	103
	결함확인검사(소형차)	300	206
	결함확인검사(운행차)	100	69
소계		1,670	1,064
계		420,280	100,796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분석의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위탁업무와 관련한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협회의 실질적 사업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수행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관련 사업들이다. 이를 반영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차 충전사업 분야 사업자 45개사를 2024년에 새롭게 회원사로 영입하였고, 2026년 기준으로 협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자 14개사,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 41개사 등 총 55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원사 변동 현황]

구분	출범시(2007년 11월)	2014년 12월말	2026년
배출가스 저감사업 분야	5개사	10개사	14개사
전기차 충전사업 분야	-	-	41개사
계	5개사	10개사	55개사

주: 회원사 숫자는 누적 기준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그런데 무공해차 충전시설 분야를 중심으로 회원사를 구성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현행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측면이 있으며, 시행령으로의 위임한계를 초과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목적 및 수행업무의 범위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위임규정과 동법 시행령을 통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무공해차 충전시설 운영·관리 사업 등 업무를 광범위하게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7조[5]와 이에 근거한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시설 운영 등에 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6]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수행업무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한 보급사업, 사후관리, 기술개발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5) 「대기환경보전법」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 「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업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동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의 보급
2.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개발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있을 뿐, 현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7]를 근거로 위탁 수행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차 충전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수행업무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행령에 근거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무공해차 충전사업 관련 예산과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토록 하는 것은 국회의 법률 심의 없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사무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으며, 이는 절차상 정당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업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상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법률과 시행령 간 위임 정합성을 확보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위탁사업 범위와 역할을 법령 범위 내로 한정해 엄격히 운영할 것 등을 시정요구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관련 사업명	환경개선특별회계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수행 위탁사업 전반	제도개선
시정 요구명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수행 위탁사업의 법적근거 보완 및 상시 관리·감독 체계 강화 필요	
지적 사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2007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① 예산 대부분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② 일부 업무는 현행 법률상 사업 수행 근거가 미비하며, ③ 적절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업무의 위탁)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1의2.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3.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 2024년 기준 협회 예산 4,093억원 중 설립목적인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8억원(0.2%)에 불과 - 2015년부터 수행 중인 무공해차 충전시설 관련 사업은 현행 법률상 협회의 사업수행 근거 미비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사업 관련 특정 업체 특혜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	
시정요구 사항	○ 환경부는 협회 업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상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법률과 시행령 간 위임 정합성을 확보하고, 협회의 위탁사업 범위와 역할을 법령 범위 내로 한정해 엄격히 운영할 것 ○ 환경부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공정경쟁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협회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강화하며 상시 감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기능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환경부는 협회 출범 당시(2007년)에 비해 크게 확대된 협회의 사업 영역을 고려하여, 설립 목적과 회원사 구성의 적정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자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사업 등 현재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법률과 시행령 간 위임의 정합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출범당시(2007년)에 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사업영역이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목적 및 회원사[8] 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재정립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2. 저공해엔진 제조·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
3. 전문정비사업자
4.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5.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6.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7.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관련 사업자

11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사업의 미집행 투자여력 규모를 감안한 신규 출자예산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1]은 미래환경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민간 부문의 녹색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미래환경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도 계획안은 전년 수정 계획 대비 798억 4,500만원 증액된 1,33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45,604	53,155	53,155	133,000	79,845	150.2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가. 현 황

동 펀드는 정부출자금에 민간투자를 더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2] 계정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자하는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 13개 부처가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모태펀드가 민간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구조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모태펀드에 펀드예산을 출자하면 투자운용사를 선정하여 세부 투자계획을 설정하고, 민간 투자자 모집 등을 거쳐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3].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232-600

2) 모태펀드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펀드(Fund of Fund)로, VC는 모태펀드 출자금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연기금 등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펀드를 결성하고 창업·벤처기업에 투자 후 회수함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조성 및 투자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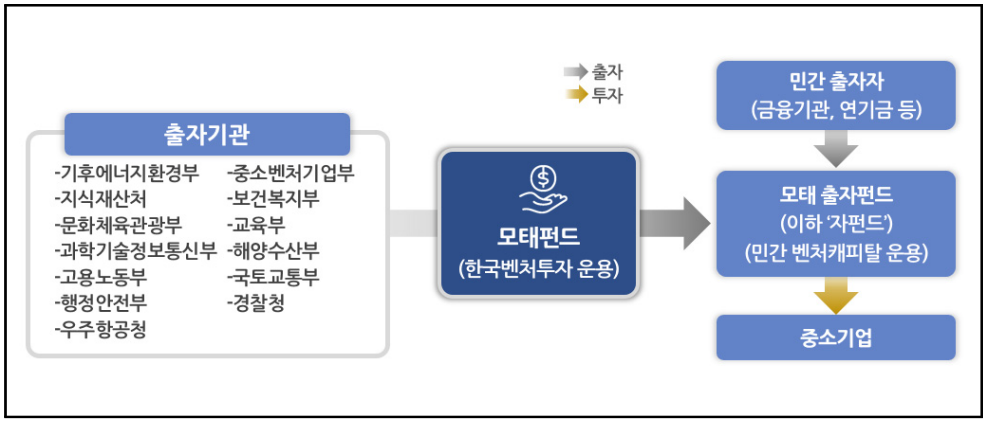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분석의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까지 조성된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의 자펀드 투자여력 규모를 감안하여 2027년 예산안을 통해 증액하려는 정부 출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 지원유형별로 창업초기 159억원, 사업화 181억원, 스케일업 33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신규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펀드 410억원, 이미 발행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세컨더리 펀드 25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다.

3)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년 이내 투자, 총 5년 이상 존속 원칙으로, 운용사 및 출자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투자 및 회수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2027년도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 일반출자금(460-01) : 531.55억원 - (창업초기) 132억원 × 1개 펀드 - (사업화) 195.55억원 × 1개 펀드 - (스케일업) 204억원×1개 펀드	○ 일반출자금(460-01) : 1,330억원 - (창업초기) 159억원 × 1개 펀드 - (사업화) 181억원 × 1개 펀드 - (스케일업) 330억원×1개 펀드 - (해외진출) 410억원×1개 펀드 - (세컨더리) 250억원×1개 펀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는 2017년부터 2026년 7월말까지 총 18개의 자펀드가 결성되었고, 18개 펀드에 총 5,108억원이 조성되어 있다. 2026년 7월말 기준 결성 펀드의 투자율은 71.4%로 총 188개 기업에 3,649억원을 투자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에 전년 대비 798억 4,500만원을 증액한 1,33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2021년 이후부터 2026년까지 동 펀드에 출자되는 예산이 총 2,523억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단년도에 2021년부터의 누적 출자예산의 52.7%에 해당하는 예산을 출자하는 것이다. 이미 조성된 펀드의 추가 투자여력 규모를 감안하여 2027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2021~2027년도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안)	계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300	200	450	585	456	532	1,330	3,853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7월 기준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의 자펀드 총 투자여력, 즉 펀드 결성 예정액을 포함한 결성액 중 미집행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잔액이 총 1,775억 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1억 9,400만원, 2023년 121억 4,800만원, 2024년 224억 8,100만원, 2025년 627억 8,600만원의 투자여력이 있고, 2026년 조성예정인 펀드는 정부출자와 민간 출자를 합쳐 810억원[4]으로 아직 자펀드가 조성 중임을 고려할 때 2026년에는 운용비용을 제외하고 729억원의 투자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기 결성펀드의 자펀드 투자여력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조성 펀드 규모(A)	미래환경산업	42,000	19,120	21,700	20,000	63,800	43,000	77,500	95,630	91,100	81,000	554,850
	미세먼지			21,500	15,400	-	-	-	-	-	-	36,900
투자된 금액(B)		**39,219**	**18,509**	**38,151**	**38,088**	**58,986**	**31,506**	**57,602**	**63,586**	**19,204**	**-**	**364,851**
잔존 금액(C=A-B)		2,781	611	5,049	-	4,814	11,494	19,898	32,044	71,896	81,000	229,587
운용비용(D)[1]		4,200	1,912	4,320	3,540	6,380	4,300	7,750	9,563	9,110	8,100	59,176
투자여력(C-D)		**-**	**-**	**-**	**-**	**-**	7,194	12,148	22,481	62,786	72,900	**177,509**

주: 1) 펀드운용 시 운용사에게 관리보수 등으로 운용비용 발생(약 10% 내외)
2) 2026년 7월말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동 펀드로부터 투자된 이후 회수 및 기업에 재투자되고 있는 실적도 살펴보면 2022년 68억 4,000만원, 2023년 50억원, 2024년 47억 5,000만원, 2025년 110억 9,600만원, 2026년 35억 4,500만원 등 총 312억 3,100만원의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 펀드로부터 투자 후 회수 및 재투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펀드투자액	200	130	280	200	300	200	450	585	456.04	531.55	3,332.59
회수액	-	-	-	53.2	153.7	59.24	43.2	111.89	44.86	16.25	344.01
재투자액	-	-	-	-	-	68.4	50.0	47.5	110.96	35.45	312.31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4)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우주항공청 등) 2026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 투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5]하고 있고, 출자사업 신청 조합 수가 크게 증가하며 2026년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는 점[6]을 고려할 때, 기존 펀드의 규모 확대를 통해 증가하는 투자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고, 환경산업에 안정적인 투자재원의 지속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 투자자의 비상장 구주를 인수하여 투자금의 중간회수를 지원하고, 회수자금의 재투자를 촉진하는 회수시장 활성화 목적의 세컨더리 펀드와 우수한 환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해외진출 특화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펀드 투자여력을 고려했을 때 2026년 예산 대비 약 2.5배에 달하는 예산 증액을 하는 것이 적정규모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6년 기획예산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도 급격한 확대보다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과 정책 지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 선택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한바 있다[7].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기 투자여력이 1,775억원 상당 규모로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7년 정부 출자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 투자금액: ('23년) 237억원 → ('24년) 392억원 → ('25년) 701억원

6) 출자사업 경쟁률: ('22년) 3:1 → ('23년) 3:1 → ('24년) 6:1 → ('25년) 6.7:1 → ('26) 7:1

7) 기획예산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1.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

12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분석

가. 현 황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내 규제로 인한 재산권 제약을 받는 주민에게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공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상수원 규제지역 내 활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221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01억 9,2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93억 8,400만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263억 8,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총 780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	-	-	78,060	78,060	-
(한강수계관리기금)	-	-	-	22,100	22,100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	-	10,192	10,192	-
(금강수계관리기금)	-	-	-	19,384	19,384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	-	26,384	26,384	-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에 참여하여 발전수익금을 마을 주민이 공유하는 상수원관리지역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히트펌프·태양광 설치가능 마을을 선별하여 집적화된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는 가구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마을 공동시설 신축·개축 시 재생에너지(히트펌프, 태양광 등)를 활용하는 마을공동시설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구성된다.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 내용
공통사항	□ 대상범위 : 상수원관리지역 □ 사업신청 주체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지방정부 □ 국산화 : 모듈, 인버터, 히트펌프 등 국내 생산 기자재 활용 의무화
상수원관리지역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 사업내용 : 마을(주민) 공동체가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에 참여하여 발전 수익금을 마을 주민 공유 ㅇ 수익금 활용은 지역 주민에게 수익배당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단위 협동조합에서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다만, 지방정부 또는 지역의 일회성 행사 등 사용은 불가 □ 사업추진 주체 : 10인 이상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ㅇ (거주요건) 협동조합 참여주민은 해당 마을주민으로 구성 ㅇ (주민동의) 협동조합 정관에서 정한 마을 주민 동의 및 마을총회 의결 등을 통한 다수의 주민 참여 유도 □ 발전사업 용량 / 방식 : 300kW ~ 1,000kW / 사업용 □ 지원비율 : 수계기금 100% □ 기타 사업 추진 요건 ㅇ (부지) 태양광 용량에 준하는 공간 확보 ㅇ (계통) 전력계통 여유용량 조회 결과(한전ON)
가구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사업내용 : 히트펌프·태양광 설치가능 마을을 선별하여 집적화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사업추진 주체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 □ 지원비율 : 수계기금 80%, 자부담 20%(자부담에 대한 지방정부 보조 가능) ※ 타 사업 사례 : 주택에 태양광 설치 사업(에공)의 경우 자부담 45~25%
마을공동시설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사업내용 : 마을 공동시설 신축·개축 시 재생에너지(히트펌프, 태양광 등)를 활용한 탈탄소화 및 복지증진 사업 □ 사업추진 주체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지방정부 및 주민공동체 □ 지원비율 : 수계기금 1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분석의견

첫째, 상수원관리지역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한강수계기금 사업을 제외한 다른 수계기금 사업의 경우 계통연결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고려하여 계통연결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대상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햇빛소득마을에 필요한 여유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은 4개 수계관리기금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2027년 계획안 기준 한강 23개소, 낙동강 10개소, 금강 25개소, 영산강·섬진강 35개소를 지원할 예산을 편성하였다.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상세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수계관리기금	편성내역
한강	○ 자체단체경상보조(330-01) : 22,100 **가. 햇빛소득마을 : 16,100** **· 700 × 23개소(500kW) = 16,100** 나. 가구별 재생에너지 : 5,040 · 18 × 350개소(3kW) × 보조율 80% = 5,040 다. 마을공동시설 재생에너지 : 960 · 30 × 32개소(17.5kW) = 960
낙동강	○ 자체단체경상보조(330-01) : 10,192 **가. 햇빛소득마을 조성 : 7,000** **· 700 × 10개소(500kW) = 7,000** 나. 가구별 재생에너지 히트펌프 보급 : 2,592 · 18 × 180개소(3kW) × 보조율 80% = 2,592 다. 마을공동시설 히트펌프 보급 : 600 · 30 × 20개소(17.5kW) = 600

(단위: 백만원)

수계관리기금	편성내역
금강	○ 자치단체경상보조 : 19,384 **가. 햇빛소득마을 : 17,500** **· 700 × 25개소(500kW) = 17,500** 나. 가구별 재생에너지 : 1,584 · 18 × 110개소(3kW) × 보조율 80% = 1,584 다. 마을공동시설 재생에너지 : 300 · 30백만원× 10개소(17.5kW) = 300
영산강 섬진강	○ 지자체경상보조(330-01) : 26,384 **가. 햇빛소득마을 : 24,500** **· 700 × 35개소(500kW) = 24,500** 나. 가구별 재생에너지 : 1,584 · 18 × 110개소(3kW) × 보조율 80% = 1,584 다. 마을공동시설 재생에너지 : 300 · 30 × 10개소(17.5kW) = 3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계획 표준(안)에 따르면, 동 사업은 태양광 용량에 준하는 부지확보, 전력계통 여유용량 조회 결과, 모듈, 인버터 등 국내 생산 기자재 활용 의무화를 추진요건으로 두고 있다. 이 중 계통 여유용량 조회 결과와 관련하여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의 '햇빛소득마을' 공모기준을 확인하여 관련 절차에 응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26년 9월 기준,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력계통 여유용량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한강은 24개소 중 16개소, 낙동강은 7개소 중 4개소가 여유용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강의 경우 11개소 중 2개소만 여유용량이 있었으며, 영산강·섬진강의 경우 여유용량이 있는 마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도 상수원관리지역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전 수요조사 결과]

(단위: kW)

수계	시군	읍면동	마을명	발전용량	여유용량 조회 결과
합 계				37,127	
한강 (24)	이천시	백사면	백사	255	O
		부발읍	부발	258	사업계획서 보완 중
	광주시	남종면	금사리	100	O
		초월읍	지월리	100	O
		곤지암읍	건업리	100	O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373	O
		상면	적현리	482	O
		청평면	청평4리	989	O
		설악면	방일3리	1,000	O
	양평군	양평읍	백안4리	673	O
		용문면	화전1리	999	O
		양평읍	봉성2리	12	O
		강상면	세월2리	500	O
		지평면	송현4리	999.75	O
		지평면	옥현1리	1,000	O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361	-
		대신면	하림1리	1,000	-
		대신면	송촌2리	980	O
	춘천시	서면	안보2리	1,000	O
	충주시	소태면	하청마을	999.75	사업계획서 보완 중
		소태면	조기암마을	999.46	사업계획서 보완 중
		소태면	월촌	735	사업계획서 보완 중
		소태면	복탄1구	896.5	사업계획서 보완 중
		소태면	복탄2구	999.75	사업계획서 보완 중
낙동강 (7)	사천시	곤양면	흥사리	350	-
		곤명면	신흥리	300	-
	양산시	원동면	선리	1,000	O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300	O
	경산시	용성면	부제리	490	-
	군위군	의흥면	지호리	382	O
		의흥면	신덕리	403	O
금강 (11)	대전	대덕구	미호동	300	-
	청주시	문의면	미천6리	999.75	O
		문의면	두모1리	999.75	O
	보은군	회남면	금곡리	998.4	-
		회남면	조곡2리	998.4	-
	옥천군	안남면	도농리	999.04	-
		옥천읍	삼청리	999.75	-
		군북면	용목마을	999.1	-
		이원면	원동2리	473.6	-

(단위: kW)

수계	시군	읍면동	마을명	발전용량	여유용량 조회 결과
		군북면	환평리	999.75	-
	금산군	부리면	어재1리	963.3	-
영산강·섬진강(12)	순천시	낙안면	금산마을	1,000	-
		낙안면	석정마을	500	-
		주암면	구산마을	999.9	-
		상사면	미곡마을	1,000	-
	화순군	사평면	장선마을	999.68	-
	보성군	문덕면	장운마을	900	-
		문덕면	내동마을	500	-
		문덕면	가내마을	760	-
		문덕면	상죽마을	500	-
		율어면	장수마을	300	-
		율어면	진천마을	400	-
		복내면	풍치마을	500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유용량이 확보된 마을을 우선 선정하되, 계통 부족 지역은 중복 투자 방지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여유용량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1차 선정 결과에 따르면, 선정된 86개소 중 전력망 보완이 필요한 마을은 58개소이고, 그 중 호남권이 31개소로 보완이 가장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1]. 상수원관리지역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도 호남권에 위치한 영산강·섬진강 지역 계통연결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여유용량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연결 여부가 확실치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계통연결한 마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2027년에 선정 가능한 마을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 ESS 설치지원 등 별도로 상수원관리지역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의 여유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위해 범정부가 총력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2026.9.23.

둘째, 상수원관리지역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선정 사업과 중복선정되지 않도록 부처 간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상수원관리지역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한 마을이 두 사업에 모두 선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1차 선정마을 86개소 중 상수원관리지역에 위치한 마을은 총 8곳이다.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1차 선정마을 중 상수원관리지역 현황]

(단위: kW)

수계	시군	읍면동	마을명	발전용량
한강수계	여주시	흥천면	율극2리	999.75
한강수계	여주시	대신면	하림1리	999.75
한강수계	양평군	양서면	복포2리	999.75
한강수계	양평군	지평면	송현4리	999.75
금강수계	옥천군	군북면	용목마을	999.1
영산강·섬진강수계	보성군	율어면	장수마을	300
영산강·섬진강수계	보성군	문덕면	장운마을	900
영산강·섬진강수계	보성군	문덕면	내동마을	5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사업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아 추진되나, 상수원관리지역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두 사업이 연계 없이 별도로 추진될 경우 상수원관리지역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을이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융자 부담을 지거나,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비 상수원관리지역 마을이 선정되지 못하는 등 비효율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관리지역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함에 있어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비효율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Ⅰ 예산안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고용노동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5개 기금(고용보험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38조 1,968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조 2,888억원(6.4%)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048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6억원, 고용보험기금 23조 1,799억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조 2,039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1조 1,261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2조 2,776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1,707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48,985	361,328	361,328	238,464	△122,864	△34.0
- 일반회계	119,666	326,445	326,445	204,846	△121,599	△37.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9,319	34,883	34,883	33,618	△1,265	△3.6
기 금	32,845,301	35,337,319	35,546,632	37,958,351	2,411,719	6.8
- 고용보험기금	19,798,514	21,840,282	21,840,282	23,179,934	1,339,652	6.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058,195	1,095,070	1,095,070	1,203,952	108,882	9.9
- 임금채권보장기금	679,294	713,982	923,295	1,126,102	202,807	22.0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1,109,320	11,506,249	11,506,249	12,277,654	771,405	6.7
- 근로복지진흥기금	199,978	181,736	181,736	170,709	△11,027	△6.1
합 계	32,994,286	35,698,647	35,907,960	38,196,815	2,288,855	6.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고용노동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36조 2,974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조 7,951억원(4.7%)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4조 3,320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23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465억원, 고용보험기금 18조 6,149억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조 808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8,973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0조 8,702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1,931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5,830,039	6,665,733	6,942,158	4,640,878	△2,301,280	△33.1
- 일반회계	5,159,560	5,908,151	6,172,576	4,332,006	△1,840,570	△29.8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1,660	89,495	89,495	-	△89,495	△100.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1,432	265,986	277,986	262,311	△15,675	△5.6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87,386	402,101	402,101	46,561	△355,540	△88.4
기 금	31,492,383	31,010,395	31,150,454	31,656,595	506,141	1.6
- 고용보험기금	19,418,860	18,477,675	18,496,234	18,614,948	118,714	0.6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947,203	1,013,705	1,013,705	1,080,867	67,162	6.6
- 임금채권보장기금	807,219	847,601	937,545	897,379	△40,166	△4.3
- 산업재해보상 및 예방기금	10,066,162	10,471,957	10,471,957	10,870,231	398,274	3.8
- 근로복지진흥기금	252,938	199,457	231,013	193,170	△37,843	△16.4
합 계	37,322,421	37,676,128	38,092,612	36,297,473	△1,795,139	△4.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총 89,485백만원)는 산업통상부 자원안보기금으로 이관
3. 일반회계 3개 사업(총 2,105,960백만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개 사업(총 460,762백만원)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

자료: 고용노동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고용노동부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2,348억 6,4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228억 6,400만원(34.0%)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48억 4,6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6억 1,800만원이다.

[2027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19,666	326,445	326,445	204,846	△121,599	△37.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9,319	34,883	34,883	33,618	△1,265	△3.6
합 계	148,985	361,328	361,328	238,464	△122,864	△34.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5조 5,772억 6,0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조 9,962억 8,000만원(26.4%)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조 2,683억 8,8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23억 1,100만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465억 6,100만원이다.

[2027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730,942	6,539,533	6,803,958	5,268,388	△1,535,570	△22.6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1,660	89,495	89,495	-	△89,495	△100.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1,432	265,986	277,986	262,311	△15,675	△5.6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87,386	402,101	402,101	46,561	△355,540	△88.4
합 계	6,401,421	7,297,115	7,573,540	5,577,260	△1,996,280	△26.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고용노동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고용보험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56조 8,822억 2,800만원으로 전년 수정 계획안 대비 4조 1,885억 3,200만원(7.9%)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고용보험기금 29조 2,532억 4,100만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조 6,930억 6,400만원, 임금채권보장기금 1조 4,414억 8,100만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2조 9,505억 2,000만원, 근로복지진흥기금 5,439억 2,200만원이다.

[2027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고용보험기금	23,713,281	27,610,808	27,610,808	29,253,241	1,642,433	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366,358	2,512,054	2,512,054	2,693,064	181,010	7.2
임금채권보장기금	956,723	896,862	1,106,175	1,441,481	335,306	30.3
산업재해보상 및 예방기금	18,902,514	20,900,173	20,900,173	22,950,520	2,050,347	9.8
근로복지진흥기금	527,045	541,905	564,486	543,922	△20,564	△3.6
합 계	46,465,922	52,461,802	52,693,696	56,882,228	4,188,532	7.9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라. 재정구조

2027년도 예산안의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9,000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363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0.82억원이 전출된다.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2조원을 예탁하고 2조원의 예탁원금을 회수하며, 1,826억원의 예수 이자를 상환하고 750억원의 예탁이자를 상환 받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금으로 8,000억원을 예탁하고 8,000억원의 예탁원금을 회수하며, 264억원의 예탁이자를 상환 받는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5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조 500억원을 예탁하고 5조 500억원의 예탁원금을 회수하며, 2,018억원의 예탁이자를 상환 받는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금으로 600억원을 예탁하고 600억원의 예탁원금을 회수하며, 17억원의 예탁이자를 상환받는다. 또한 복권기금으로부터 655억원의 전입금을 받고 211억원을 반환한다.

[2027년 예산안의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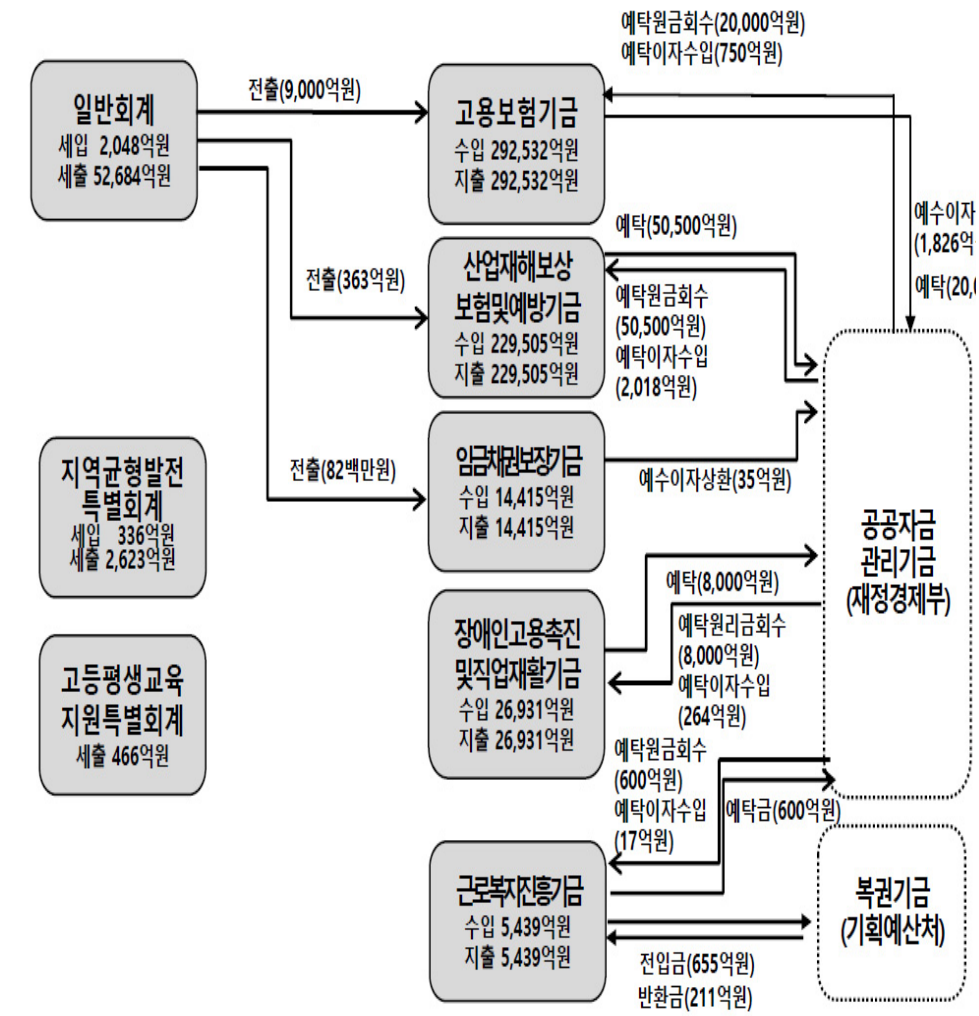

주: 총계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7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AI 대전환 시대에 청년의 경험·경력·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3,793억원), K-뉴딜아카데미(4,895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9,012억원) 등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② 혁신형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K-디지털트레이닝(6,089억원),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4,065억원)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③ 사회안전매트 강화 및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 조기도입 사업장 재정지원(60억원),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보호(30억원), 장애인고용관리지원(3,509억원) 등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④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1,269억원), 건강일터 조성지원(489억원), 산재보험 선보장 급여(436억원) 등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2027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과 관련, 비수도권의 훈련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율이 80%에서 60%로 하향되었는데,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 관점에서 보험료 지원율 하향폭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의 취업경험 요건 완화에 따라 형식적 구직활동만을 수행하면서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할 유인이 높다 보이는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취업지원제도가 단순히 구직촉진수당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재보험급여의 선보장 급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과정, 상병수당을 소관하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간 업무조정, 부정수급 최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도 가입 취소 규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립금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고용노동부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6개 사업, 220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청년 첫 일자리 경력지원은 기업이 역량있는 청년을 채용해 기업의 AX 프로젝트 등 현업 수행시 청년 인건비와 기업 멘토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행복한 일터 인증제 사업은 고용·노동 전 분야를 포괄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우대지원하는 인증제를 신설, 공무직위원회 운영은 공무직위원회 및 기획단의 운영을 위한 사업이다.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고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육아휴직급여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육아기 소득지원을 하려는 사업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 중 지역주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참여 공공서비스 개선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업 중 근로자보호기술개발사업장안전실증(R&D) 사업은 지능형 로봇 등 AI 기반 생산설비의 도입을 대비해 안전인증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3개)	청년 첫 일자리 경력지원	14,505
	행복한 일터 인증제	800
	공무직위원회 운영	2,290
고용보험기금 (1개)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고보)	2,27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개)	지역주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참여 공공서비스 개선사업	200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개)	근로자보호기술개발및사업장안전실증(R&D)	2,000
합 계		22,070

자료: 고용노동부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공정채용문화확산,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자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등이 있다.

① 공정채용문화확산 사업은 민간기업 등에 자율적 공정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사업은 퇴직연금제도 조기도입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신규 반영되었고, ③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자율)은 14개 시·도 지역일자리 사업운영을 위한 경비가 증액되었고. ④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은 장애인인턴제 사업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1]		2027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8개)	고용동향조사분석	7,433	7,433	9,076	1,643	22.1
	공정채용문화확산	1,150	1,150	1,650	500	43.5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10,427	10,427	12,747	2,320	22.2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6,608	6,608	9,218	2,610	39.5
	일자리안정자금지원	2,022	2,022	2,932	910	45.0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1,442	1,442	1,756	314	21.8
	상생협력 확산지원	11,751	11,751	14,591	2,840	24.2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480	480	6,521	6,041	1,258.5
	고용노동행정(정보화)	23,739	23,739	32,698	8,959	37.7
	노동위원회청사관리	2,276	2,276	2,916	640	28.1
	청관사유지및시설관리	15,768	15,768	20,864	5,096	32.3
	경제사회노동위원회운영	4,670	4,670	6,672	2,002	42.9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지원(자율)	60,025	60,025	75,978	15,953	26.6
고용보험기금 (1개)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39,470	39,470	51,341	11,871	3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5,571	5,571	8,560	2,989	53.7
	장애인고용관리지원	275,296	275,296	350,908	75,612	27.5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27,480	27,480	34,478	6,998	25.5
임금채권보장기금 (1개)	임금채권 정보화경비 (정보화)	341	341	1,778	1,437	421.4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1]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개)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9,441	9,441	12,446	3,005	31.8
	미래환경변화 대응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R&D)	1,554	1,554	2,072	518	33.3
근로복지 진흥기금 (1개)	근로복지정보시스템 (정보화)	9,992	9,992	17,773	7,781	77.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II 주요 사업 분석

1 내일배움카드(일반):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훈련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

가. 현 황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1]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대비 각각 982억 9,500만원 증액(15.7%), 529억 6,300만원 감액(6.8%)된 7,256억 2,000만원이다.

[2027년도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내일배움카드(일반)	593,833	627,325	778,583	725,620	△52,963	△6.8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	496,519	541,313	593,703	628,926	35,223	5.9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476,994	521,313	563,703	608,926	45,223	8.0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19,525	20,000	26,000	20,000	△6,000	△23.1
K-뉴딜아카데미	-	-	98,830	-	△98,830	순감
돌봄서비스 훈련	33,577	29,440	29,440	37,484	8,044	27.3
일반고 특화훈련	60,619	55,383	55,383	58,021	2,638	4.8
운영비 등	2,218	1,189	1,227	1,189	△38	△3.1

주: 1) 추경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

내일배움카드는 기본적으로 일부를 제외하면[2] 모든 국민이 발급 대상이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3]에서 회원가입한 후 절차를 완료하고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부터 5년이며 참여자는 1인당 300~500만원까지,[4] 훈련비의 45~100%를 지원받을 수 있고,[5]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2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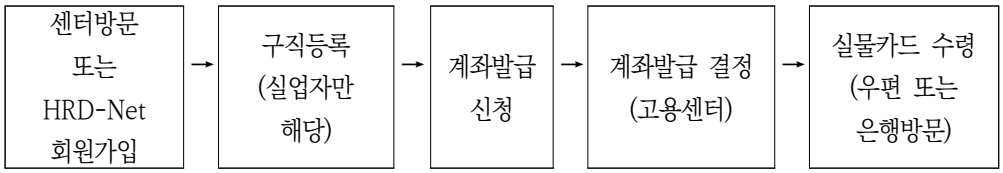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사업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크게 3가지이다.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그리고 특별훈련수당이다. 훈련비는 훈련생이 추가로 부담하는 훈련비(추가 부담 훈련비)가 아닌 정부승인 훈련비를 말하는 것으로,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기초로 산정된다.

훈련장려금이란,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실업상태 등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실업자 등이 내일배움카드 사업에서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장려금을 뜻한다. 훈련장려금은 훈련생의 요건 충족 여부, 일 소정 훈련시간, 단위기간 출석일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특별훈련수당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으로서 총 훈련시간이 350시

2)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3) https://www.k-hrd.net/landingpage/main.html

4) 원칙적으로는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추가할 수 있다(2026.5.11.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

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하는 등이다.

간 이상인 훈련에 참여하면서 실업상태 및 출석률 등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뜻한다. 예를들어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서 AI·선도기업 과정을 수강할 경우 특별훈련수당이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데, AI 과정의 경우 수도권 20만원, 비수도권 40만원, 인구감소지역 60만원이, 선도기업 과정의 경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20만원, 인구감소지역 30만원이 지급된다.

나. 분석의견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기관이 비수도권의 경우 2026.8월 기준 50개소(전체의 25.2%)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참여 인원도 2,597명(13.8%)으로 저조한바, 비수도권의 훈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일명 KDT사업)은 민간 혁신훈련기관, 민간 선도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여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사업이다. 동 내역사업은 기업의 실제 인력수요를 훈련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과 기업이 협약을 체결, 훈련과정을 함께 설계하도록 하고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 과제를 전체 훈련과정의 30% 이상 편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동 사업의 2026년도와 큰 차이점으로는 반도체·로봇 등 첨단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해 자부담 비용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별훈련수당을 AI·선도기업 등 과정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로 차등화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2027년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개요]

사업명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기간 (재원)	2021~계속(일반회계)
개요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지원기간	훈련과정 참여기간
지원요건	출석률에 따른 훈련비 및 단위기간별 80% 이상 훈련 참여 시 훈련장려금 등 지원
지원수준	훈련비 90% 이상 지원, 훈련장려금(월 최대 20만원) 및 특별훈련수당(월 최대 80만원) 지급
지원목표	47,920명

자료: 고용노동부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특별훈련수당 지급 계획]

(단위: 만원)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AI 과정	20	50	80
선도기업 과정	10	30	50

자료: 고용노동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특별훈련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서 훈련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정책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동 훈련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25년과 2026년 현재까지의 지역별 훈련 현황을 확인해보면 2025년의 경우 전체 훈련 기관의 68.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2026년의 경우 76.3%로 그 집중도가 더 심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참여인원도 수도권이 88.5%와 86.2%로 상당한 편이다.

[연도별·지역별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 훈련기관 및 훈련인원 현황]

(단위: 명, %)

지역	2022		2023		2024		2025		2026.8.	
	훈련 기관	참여 인원	훈련 기관	참여 인원	훈련 기관	참여 인원	훈련 기관	참여 인원	훈련 기관	참여 인원
수도권	113 (66.1)	17,737 (79.2)	176 (71.5)	26,057 (81.6)	209 (72.8)	31,943 (84.8)	221 (68.8)	42,252 (88.5)	148 (76.3)	16,231 (86.2)
비수도권	51 (29.8)	4,546 (20.3)	63 (25.6)	5,571 (17.4)	69 (24.0)	5,487 (14.6)	94 (29.3)	5,190 (10.9)	46 (23.2)	2,448 (13.0)
인구 감소지역	3 (1.8)	116 (0.5)	7 (2.9)	304 (1.0)	9 (3.2)	217 (0.6)	6 (1.9)	276 (0.6)	4 (2.0)	149 (0.8)
합계	171 (100.0)	22,399 (100.0)	246 (100.0)	31,932 (100.0)	287 (100.0)	37,647 (100.0)	321 (100.0)	47,718 (100.0)	198 (100.0)	18,828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대비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특별훈련수당을 더 지급하더라도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 해당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특별훈련수당 차등 지급이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훈련 인프라 확충[6]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6) 비수도권에서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기관에 지원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2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보험료 지원율 하향 조정 폭에 대한 검토 필요

가. 현 황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 사업은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여 일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려는 사업으로,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대비 2,269억 4,100만원(24.0%) 감액된 7,173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기존에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80% 지원하였으나, 60%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율을 하향 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2027년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910,878	944,265	944,265	717,324	△226,941	△24.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 수준과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2027년은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 노무제공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 신규가입 노동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60%,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2021~2026년까지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하였으나 2027예산안은 이를 60%로 20%p 하향 조정하였고, 대신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20%를 지원하는 것이 추가되었다.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231-300

[2027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개요]

사업명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사업기간(재원)	'12.7월~ 계속(일반회계)
개요	소규모사업 저임금 노동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여 일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대상	소규모사업 저임금 노동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지원기간	최대 36개월
지원요건	①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사회보험 신규가입 노동자, ②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재산)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 (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
지원수준	① 노동자: 고용·연금보험료* 60%, 산재보험료 20% * 지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② 예술인: 고용보험료 60% ③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60%, 산재·건강보험료 20%
지원목표	월 평균 179.9만명
목표달성	100%

자료: 고용노동부

[연도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제도변화 경과]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2026년	2027년
지원보수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지원수준	기가입자 40% 신규 80~90%	기가입자 20% 신규 80~90%	신규 80% 예술인·노무제공자 80%				노동자: 고용·연금 60%, 산재 20% 예술인: 고용 60% 노무제공자: 고용 60%, 산재·건보: 20%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수행된다. 사업주가 보험료지원금을 신청하면 각 공단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액을 공제한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지고, 이후 보험료지원금이 공단에 지원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사업주 피보험자	공단	공단	사용자	공단	공단
보험료 지원금 신청	지원여부 확인/결정	보험료 부과 고지 (지원금액을 공제한 금액 고지, 단, 지원금 표시)	원천 징수 후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확인	사회 보험료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에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율을 80%에서 60%로 하향하는 대신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율 20% 지원을 신설하였는데, 이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일용노동자, 예술인의 경우 4대 사회보험 1인당 보험료 지원금이 감소하는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관점에서 보험료 지원율 하향폭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7년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율 지원율을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대신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율 20% 지원을 신설하였다.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율 지원율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5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이 84.8%, 국민연금 가입률이 89.4%인 수준을 고려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가입 지원 사업[2]의 보험료 지원율 50%,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보험료 지원율 50%~80%[3][4] 등 타 사업의 지원율을 감안할 때 보험료 지원율 일괄 80% 적용은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율 비교]

(단위: %)

사업명	지원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50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50~8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만 보험료 지원율을 한 번에 20%p 감액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보인다.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월평균 보수 270만원 이하의 근로자, 일용노동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2026년, 2027년 1인당 보험료 지원금액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지원금이 추가되어 2026년도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나, 저소득근로자, 일용노동자, 예술인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0~20% 줄어든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금을 줄인만큼 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나, 신규로 추가된 지원금을 모두 받는 경우는 노무제공자에 한정된다[5].

2)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코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2008-206

3)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코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9

4)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1~7등급으로 분류 후 기준보수액이 높은 등급일수록 더 낮은 지원율을 적용

5)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100%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바 지원 필요의 시급성,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노무제공자에게만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는 설명임

[2026, 2027년 1인당 사회보험료 지원 금액]

(단위: 만원)

구분	고용보험료 지원금		국민연금 지원금		산재보험료 지원금		건강보험료 지원금		합계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저소득 근로자	145	106	152	114	-	35	-	-	297	255
일용노동자	51	38	88	68	-	-	-	-	139	106
예술인	72	64	85	62	-	-	-	-	157	126
노무제공자	138	101	-	-	-	30	-	34	138	165

주: 1. 사회보험료 지원금액은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을 토대로 계산된 것임
2. 저소득근로자는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월 평균 보수 27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의미함
3. 노무제공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26, 2027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사회보험별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27년(합계)	690,046	128,756	528,904	15,811	16,574
근로자	651,489	113,024	528,904	9,561	-
예술인	287	287	-	-	-
노무제공자	38,269	15,445	-	6,250	16,574
'26년(합계)	918,572	179,118	739,454	-	-

동 사업은 인원 기준, 금액 기준 모두 집행률이 높은 사업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그 효용성이 큰 사업이다.

[2025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대상별 목표 대비 실적]

(단위: 명, 백만원, %)

	인원기준			금액기준		
	목표인원(A)	실제인원(B)	목표 대비 실제 (B/A)	목표 지원액(C)	실제 지원액(D)	목표 대비 실제 (D/C)
상용근로자	880,055	799,745	90.9	850,581	818,385	96.2
고용보험료 지원	434,090	398,711	91.8	149,968	143,113	95.4
국민연금료 지원	445,965	401,034	89.9	700,613	675,272	96.4
일용근로자	92,880	82,831	89.2	13,270	11,370	85.7
고용보험료 지원	90,890	81,468	89.6	11,245	9,793	87.1
국민연금료 지원	1,990	1,363	68.5	2,026	1,577	77.8
예술인	2,958	2,888	97.6	438	419	95.7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2,438	2,502	102.6	396	383	96.7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520	386	74.2	42	36	85.7
노무제공자	147,076	147,166	100.1	20,847	22,978	110.2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18,059	17,770	98.4	4,638	6,280	135.4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129,017	129,397	100.3	16,210	16,698	103.0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기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대상별 목표 대비 실적]

(단위: 명, 백만원, %)

	인원기준			금액기준		
	목표인원(A)	실제인원(B)	목표 대비 실제 (B/A)	목표 지원액(C)	실제 지원액(D)	목표 대비 실제 (D/C)
상용근로자	847,108	734,593	86.7	516,557	422,545	81.8
고용보험료 지원	420,270	371,848	88.5	86,021	70,807	82.3
국민연금료 지원	426,838	362,745	85.0	430,536	351,738	81.7
일용근로자	87,077	84,267	96.8	7,099	6,727	94.8
고용보험료 지원	85,702	82,870	96.7	6,287	5,868	93.3
국민연금료 지원	1,375	1,397	101.6	812	859	105.8
예술인	2,864	2,670	93.2	217	232	106.9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2,472	2,171	87.8	198	206	104.0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392	499	127.3	19	26	136.8
노무제공자	146,181	157,048	107.4	11,961	13,937	116.5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18,068	17,293	95.7	2,799	3,706	132.4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128,113	139,754	109.1	9,162	10,231	111.7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이 재정사업 성과평과에서 보험료율 지원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감액 의견 평가를 받았다는 점, 사회보험료 지원범위가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보험료 지원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보이나, 한 번에 지원율 20%p를 하향조정하는 것이 적정한 범위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보인다[6].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동 사업에 대한 수요와 사회보험별 특성, 재정 여건,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 지원율 하향 조정 범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한편 새로이 추가된 산재보험료 지원과 건강보험료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산재보험료 지원과 건강보험료 지원 비율이 20%로 되어있는데 이 비율을 고용보험료나 국민연금 지원율인 60% 수준에 맞추어 지원하는 것이다.

3 노동감독역량강화: 노동감독권한의 지방위임에 대한 면밀한 준비 필요

가. 현 황

노동감독역량강화 사업[1]은 노동감독관 직무교육 지원, 노동감독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노동감독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노동감독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사업장 감독 권한을 지방에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노동감독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대비 124억원(22.8%) 감액된 420억 5,300만원이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사유는 '26년 대비 '27년 감독관 증원 규모가 축소되면서 사무실 임차료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27년도 노동감독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노동감독역량강화	13,114	54,453	54,453	42,053	△12,400	△22.8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은 공무원 신분으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2조[2]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3]에 따라 근로조건 기준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19개 노동관계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3032-306

2)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

법 위반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노동감독관은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19개 법률[4]에 대한 근로 조건 기준 확보 여부를 현장 근로감독하고, 진정·고소사건 상시 접수·수사, 노사분규 예방·지도 등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와 인허가 등 일반행정업무를 수행한다. 2024년까지 노동감독관 정원 및 현원은 2,000~2,200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5~2026년부터 노동감독관을 대폭 증원함에 따라 현재 정원은 5,131명까지 증가하였다.

[연도별 노동감독관 인원 및 업무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8
노동감독관 정원	3,122	3,089	3,058	3,131	3,431	5,131
노동감독관 현원	2,742	2,919	2,975	3,025	3,265	4,130

주: 2026년 8월 기준 정원 대비 현원 차이가 큰 것은 정원이 먼저 증가하였고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임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라 '26.12.8.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노동감독관에 노동감독 권한이 위임되는데, 관련 법 개정 논의시에도 노동감독에 관한 업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 원칙적으로 중앙기관의 관리 및 감독 하에 두도록 하는 점을 고려한 우려가 있던 점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 업무 지방 위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4.7.「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1534호)가 제정됨에 따라 노동감독 권한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었고 고용노동부 소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노동감독관을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의 내역사업 '노동감독지방위임' 예산이 2026년 9억 6,300만원에서 30억 300만원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통해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교육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5].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노동감독권한을 위임하여 증가하는 노동감독 수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현장 밀착형 노동감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노동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법 제정 단계부터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 있었는바 이를 감안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노동감독권한의 지방위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은 ① 노동감독에 관한 업무는「지방자치법」제15조[6]에 따른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업무에 해당하고[7], ②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협약 제81호 및 권고 제20호[8]에 따르면 노동감독 업무는 중앙기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하고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ILO 협약 제81호 규정 등은 노동감독권이 분산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일관적인 정책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별 근로자 권익 보호에 격차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

5)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별 기준인력 배정 방안을 수립중에 있음

6)「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7) 다만「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제28조에 따라「지방자치법」제15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8조(권한의 위임과 지방노동감독관)
① 이 법 및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제32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8) ILO 협약 제81호(근로감독 협약) 제4조 : 1. 근로감독관은 회원국의 행정관행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
ILO 권고 제20호(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시행상 필요한 감독제도에 관한 일반원칙 권고) 제10호: "감독기관은 중앙 국가기관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하에 있어야 하고 그들의 어떠한 직무집행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지방기관의 관할하에 두거나 혹은 이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어서도 안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새로이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전국에 통일적인 노동감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9] 있고,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10] 등을 고려할 때, 노동감독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ILO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보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미흡·전문성 부족 혹은 업무상 해태를 이유로 노동감독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감독자가 받게 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올해 12월부터 추진되는 노동감독 권한 지방위임에 차질이 없도록 위임사무의 통일적 적용, 효율적 사무 처리를 위한 노동감독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 중앙노동감독관 파견·멘토링을 통한 지방 노동감독 전문성 향상 지원 등 노동감독지방위임 사업의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

9)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17조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 등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0)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30조(위임사무에 대한 지도 · 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88조, 제189조 및 제191조에 따라 지도 · 감독, 시정명령, 취소 · 정지, 직무이행명령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4 사회적기업육성: 인건비 지원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가. 현 황

사회적기업육성 사업[1]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대비 21억 500만원 감액(6.6%)된 299억 9,500만원이다.

[2027년도 사회적기업육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사회적기업육성	-	32,100	32,100	29,995	△2,105	△6.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성격에 따라 ① 사회서비스 제공형, ② 일자리 제공형, ③ 혼합형, ④ 지역사회 공헌형, ⑤ 기타(창의·혁신)형으로 구분되며, 2026년 8월 말 기준 일자리 제공형 기업이 2,426개로 가장 많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한다면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이다[2].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37-312

2)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인증 절차로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소재지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흥원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 사전검토에 따른 보고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며,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됨.

[(예비)사회적기업 유형별 현황]

(단위: 개)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합계
사회적기업	357	2,426	379	188	379	3,729
예비사회적기업	246	264	180	18	222	930

주: 1. 2026년 8월말 기준
2.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예비)사회적기업 수 대비 유형별 비중임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구 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기준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
조직형태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
유급근로자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필요	-
수입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정관·규약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이윤의 재투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자료: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교육훈련·시설비·공공기관 우선구매·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근거규정[3]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 및 세제감면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왔다.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등

[2026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창업지원		○ 지역의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고 진단·멘토링·시장검증·사업화·인증 준비를 지원
재정 지원	인건비 지원	○ 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월 50~90만원 인건비 지원 - 대상: 30인 미만 예비 또는 인증사회적기업 *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중 SVI 평가 등급 우수 이상 예외적 지원
경영 지원	유망기업 스텝업	○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단계별(디딤돌→도약→성숙기) 맞춤형 지원 * (디딤돌) 초기 경영지원(인사·노무·회계 등), (도약) 사업화·전문화 지원(R&D·판로·마케팅 등) (성숙기) 규모화 지원 및 공공·민간 상생모델 구축
	융자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화 자금 조달 시 대출 금리 중 2.5%p 지원
	모태 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계정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판로 지원	온·오프라인 매장운영	○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위한 '가치장터' 및 'STORE36.5' 입점 지원, 홈쇼핑 연계 및 온라인몰 기획전 운영, 전국 스토어 36.5 매장 입점지원('25년 74개소)
	소셜벤더	○ 사회적기업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회적기업 상품 발굴·개선부터 유통채널 입점까지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지역특화 스타상품	○ 지역 대학·자치단체·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특화 상품(서비스)을 발굴하고 '지역 스타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프로모션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후속 판로 지원
	맞춤형 마케팅 지원단	○ 사회적기업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마케팅 교육·코칭, SNS 개설 및 운영 등 사회적기업의 특색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 전략 지원 ○ 사회적기업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마케팅 교육·코칭, SNS 개설 및 운영 등 사회적기업의 특색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 전략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권고 - (대상)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25년 857개소)
생태계	전략	○ 통합돌봄, 노동통합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민간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	사업별 지역 생태계 활성화	지원기관·사회적기업 등 협업 생태계 조성 사업비 지원(지자체 공모사업)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 지역 내 사회연대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성과를 사업비로 지원(성과 보상 기준: 수도권 15%, 비수도권 20%까지 지원)
세제 지원		○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의 인건비 지원 수준이 최저임금의 24~42% 수준으로 2024년의 70% 수준보다 크게 감소한바, 적정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인건비 지원 금액은 SVI[4] 평가 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4)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임.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등 14개 측정지표로 구성되며, 종합점수에 따라 탁월(90점 이상), 우수(75~89점), 양호(60~74점), 미흡(45~59점), 취약(45점 미만)의 5개 등급으로 구성됨. 사회적기업진흥원이 검토·평가하여 산출함

[사회적기업 육성(지특) 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299억 5,000만원: 3,570명 × 700,000원 × 12개월 × 75% ① 3,570명 = 1,020개소('24년 신규인증, '25년 지원기업 中 인증·예비 1년 차〈30인 미만〉 930개소 + '25년 SVI 탁월·우수 기업〈30인 이상〉 90개소 × 3.5명(일자리창출사업 평균 지원 인원) ② 700,000원 = 월 평균 지원금액(50만원 ∽ 90만원 중위값) ③ 75% =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지원내용: - 취약계층 근로자를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30인 미만 사회적기업을 우선 지원하되,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중 SVI 평가 "탁월"·"우수"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기간: 최대 3년(기본 2년, SVI 등급 양호 이상 시 1년 추가)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의 채용을 장려하고 나아가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지원되는 인건비 수준과 SVI 등급에 따른 인건비 차등 지급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연도별 동 사업의 지원내역을 확인해보면 2022~2024년도에는 최저임금 대비 일정 비율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의 60~70%가 지원되었으며, 추가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2026년도에 동 사업이 다시 편성되면서 인건비 지원 방식이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사회보험료 지원 또한 중단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기존에는 인건비 지원기간이 최대 5년이었던 반면, 2026년도부터 그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다. 변경된 임금 지원금액은 최저임금의 24~42% 수준으로 기존 60~70%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인다. 낮은 인건비 지원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함에 따라 오히려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2026년 8월말 기준 동 사업의 집행률은 13.8%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의 70%가 지원되었던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집행률은 81.4%, 81.0%, 70.5%였다.

[연도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원내역]

<table>
<tr><th>구분</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h>2026</th><th>2027</th></tr>
<tr><td>지원
내용</td><td colspan="3">최저임금 일정 비율 임금</td><td>-</td><td colspan="2">임금 일부(정액)</td></tr>
<tr><td>지원
대상</td><td colspan="3">일반근로자, 취약계층 근로자</td><td>-</td><td colspan="2">취약계층 근로자
일반근로자는 대상 제외</td></tr>
<tr><td rowspan="3">지원
비율
(지원금)</td><td>취약계층
근로자
(예비)
1,340,108원
(인증)
1,148,664원</td><td>취약계층
근로자
(예비, 인증
모두)
1,407,406원</td><td>취약계층
근로자
(예비, 인증
모두)
1,442,518원</td><td>-</td><td colspan="2">취약계층 근로자
(SVI 탁월) 900,000원
(SVI 우수) 700,000원
(일반*) 500,000원
* SVI 양호 이하 또는 미참여</td></tr>
<tr><td>최저임금
60~70%
(예비) 70% ,
(인증) 60%</td><td colspan="2">최저임금 70%
(예비,인증) 70%</td><td>-</td><td colspan="2">최저임금의 24~42%
(SVI 탁월) 최저임금 42%
(SVI 우수) 최저임금 33%
(일반) 최저임금 24%</td></tr>
<tr><td>일반근로자
(예비)
957,220원
(인증)
765,776원</td><td>일반근로자
(예비)
1,005,290원
(인증)
804,232원</td><td>일반근로자
(예비)
1,030,370원
(인증)
824,296원</td><td>-</td><td colspan="2">일반근로자 미지원</td></tr>
<tr><td>지원
기간</td><td colspan="3">최대 5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 인증
사회적기업: 3년)</td><td>-</td><td colspan="2">최대 3년(예비, 인증)
(기본 2년
+ SVI 우수 이상 시 1년)</td></tr>
<tr><td>기타</td><td colspan="3">사회보험료 추가 지급(월 15~20만원)</td><td>-</td><td colspan="2">사회보험료 지원 없음</td></tr>
</table>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동 사업은 정부 지원의 성과 연계 필요성에 따라 SVI 등급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5],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하여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SVI 등급 양호 이하의 비율이 2025년 기준 64.8%[6]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의 24% 수준의 인건비 지원금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인력

5)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되, 사회적가치 성과가 높은 기업에 지원수준 및 기간을 우대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인구조를 만드는 것이 취지라는 입장임.

6) 2024년 기준 68.9%, 2023년 기준 83.9%

채용이 어려워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현재와 같은 지급 구조가 이어지는 경우 인력 채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SVI 성과 평가 등급 향상의 기회도 놓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연도별 기업규모별 SVI 성과평가 결과]

(단위: 개소, %)

구분		평가 참여	탁월	우수	양호	미흡 이하
2023년 (1,218개소)	30인 미만	1,113(100.0)	19 (1.7)	160 (14.4)	297 (26.7)	637 (57.2)
	30인 이상	105(100.0)	4 (3.8)	51 (48.6)	26 (24.8)	24 (22.9)
	계	1,218(100.0)	23 (1.9)	211 (17.3)	323 (26.5)	661 (54.3)
2024년 (949개소)	30인 미만	848(100.0)	36 (4.2)	228 (26.9)	249 (29.4)	335 (39.5)
	30인 이상	101(100.0)	13 (12.9)	45 (44.6)	25 (24.8)	18 (17.8)
	계	949(100.0)	49 (5.2)	273 (28.8)	274 (28.9)	353 (37.2)
2025년 (1,166개소)	30인 미만	1,014(100.0)	36 (3.6)	321 (31.7)	296 (29.2)	361 (35.6)
	30인 이상	152(100.0)	24 (15.8)	66 (43.4)	34 (22.4)	28 (18.4)
	계	1,166(100.0)	60 (5.2)	387 (33.5)	330 (28.5)	389 (33.7)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이러한 지적을 감안하여 인건비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내용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

가. 현 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1]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급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9,011억 8,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업(청년일자리창출지원[2])으로 편성되던 것을 미래대응기금에 이관한 것이며, 2026년도 편성 규모는 추경 기준 9,251억 2,600만원이다.

[2027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출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	901,182	901,182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이 2021년 일괄 종료됨에 따라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시범적으로(2022~2024년) 시행한 사업으로, 2025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어 시행 중이다.

동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3]인 중소기업 등을 그 대상으로 하며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수도권의 경우 ① 취업애로청년[4]을 채용한 중소기업, ② 직무 역량 프로그램(K-뉴딜 아카데미 등) 수료 청년을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1-300

2) 코드: 일반회계 1043-301

3)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4)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비수도권의 경우 ③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④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대기업과 ①~③에 채용된 청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규모는 기업지원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1년 최대 720만원, 대기업은 1년 최대 360만원이며, 청년지원금의 경우 수도권은 1년 최대 240만원이 2년간, 비수도권의 경우 1년 최대 900만원을 2년간 지급한다.

비수도권 유형의 경우 지역 간 차등을 두어 ①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1,44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360만원). ②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1,62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405만원), ③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1,80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4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5]. 고용노동부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지역과 균형발전 하위지역 58개 지역,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 58개 중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을 우대지원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안]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2">2026년</th><th rowspan="2"></th><th colspan="2">2027년(안)</th></tr>
<tr><th>수도권</th><th>비수도권</th><th>수도권</th><th>비수도권</th></tr>
<tr><td rowspan="3">기업
지원</td><td rowspan="2">지원
대상</td><td>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td><td>청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td><td rowspan="3">⇒</td><td>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td><td>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대기업</td></tr>
<tr><td>지원
수준</td><td colspan="2">1년 최대 720만원</td><td colspan="2">(중소·중견기업) 1년 최대 720만원
(대기업) 1년 최대 360만원</td></tr>
<tr><td rowspan="2">청년
지원</td><td>지원
대상</td><td colspan="2">비수도권 취업 청년</td><td colspan="2">비수도권 취업 청년
+
수도권 취업 청년
(취업애로청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td></tr>
<tr><td>지원
수준</td><td colspan="2">1년 최대 360만원,
2년간</td><td colspan="2">(수도권) 1년 최대 240만원, 2년간
(비수도권) 1년 최대 900만원, 2년간</td></tr>
<tr><td colspan="2">목표
인원</td><td colspan="2">12만명</td><td colspan="2">13만명</td></tr>
</table>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 등

5) 다만 지역별 차등지원의 상세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만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비수도권 소재 대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등 2025년 이후 매년 지원 대상을 변경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 등에 맞추어 신축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보이나, 제도의 연속성 측면과 기존 참여자들과의 지원금 차이로 인한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집행과정에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와 청년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청년 고용상황과 지역별 고용여건 등에 대응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수준을 개편해 왔다. 2025년 예산은 2023년 발표된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따라 빈일자리 업종[6]에 취업하는 청년과 취업애로청년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6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빈일자리 업종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기업 소재지에 따라 지원요건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재편하였다. 그런데 2027년도 지출계획안 편성 시에는 기존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만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대기업 사업주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6) 구인난이 심한 업종으로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총10개 업종을 선정하였음

[2027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주요내용]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본예산		2027년 정부안	
유형	I유형	II유형(신설)	수도권(신설)	비수도권(신설)	수도권	비수도권
지원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지원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모든 청년	취업 애로청년	모든 청년	취업애로청년 +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	모든 청년
	* 대학 졸업예정자 제외					
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사업주 지원 (청년 1인당)	720만원 (1년만 지원)		720만원 (1년만 지원)		720만원 (1년만 지원) * 비수도권 대기업: 360만원	
청년지원 (장기근속 인센티브)	-	480만원 (18·24개월차 각 240만원)	-	480~72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20~180만원)	48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20만원)	1,440~1,800만원 (6·12·18·24개월차 각 360~450만원) * 대기업 취업 청년은 지원 제외
목표인원	55,000명	45,000명	55,000명	50,000명	59,000명	71,000명
	10만명		10.5만명		13만명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사업 내용 변경 이후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내용 변경을 반복하고 있다. 2025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빈일자리 유형을 신설하였으나 1년만에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2026년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사업을 재편하여 집행한지 불과 8개월만에 그 대상을 추가하였다. 사업의 핵심적 내용 변경은 집행내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의 틀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이며,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참여 후 2년간 지원금을 받는 사업의 특성상 기존 사업 참여자와 신규 사업 참여자의 지원금 차이로 인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주 지원금 지급절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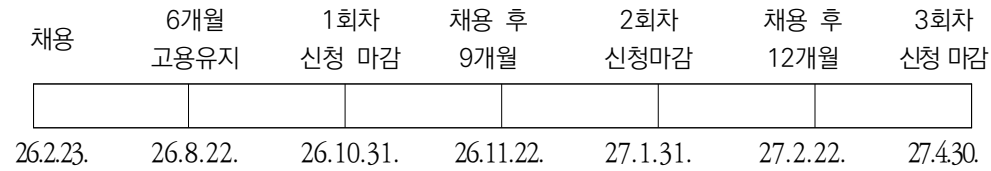

주: 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2.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7]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우대지원 및 일정요건을 갖춘 대기업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루어진 특단의 신속한 조치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이 경제 상황 등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제도 변경 취지는 이해되나, 제도의 연속성 측면, 기존 참여자들과 신규 참여자들 사이의 지원금 차이 문제 등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고 보이는바 향후 집행과정에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7)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청년 인구가 62만명에 이르고 있음

6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구직단념청년의 인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설계 및 집행 필요 등

가. 현 황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1]은 ① 수시, 경력직 채용경향 심화에 대응하여 직무경험이 필요한 미취업 청년에게 민·관협업 기반으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의 직무 탐색을 지원하고(K-청년 뉴딜 일경험), ②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쉬었음 전환을 방지하고(청년도전성장지원), ③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및 적응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청년에게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 등 자신감을 회복하고 노동시장 진입 등 재도원을 지원하는(K-청년뉴딜아카데미) 사업이다. 2027년 8,254억 7,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업(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내일배움카드(일반))에 편성되던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한 것이다.

[2027년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	-	-	825,477	825,477	순증
K-청년 뉴딜 일경험지원	-	-	-	223,917	223,917	순증
청년도전성장지원	-	-	-	111,486	111,486	순증
K-청년뉴딜아카데미	-	-	-	489,544	489,544	순증
운영비통합홍보	-	-	-	530	530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1-310

내역사업 'K-청년 뉴딜 일경험지원' 사업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실무 중심의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턴형, 프로젝트형, 맞춤지원형으로 구성된다. 2027년 지출계획안은 2,239억 1,700만원이다.

[2027년도 K-청년 뉴딜 일경험 유형별 개요]

<table>
<tr><th colspan="2">유형</th><th>인턴형</th><th>프로젝트형</th><th>맞춤지원형</th></tr>
<tr><td colspan="2">기간</td><td>1~5개월 내외</td><td>2개월 내외</td><td>6개월 이내</td></tr>
<tr><td colspan="2">수행 방식</td><td>• 기업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
• 기업은 과업 수행 지도를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영</td><td>• 기업에서 제안한 팀프로젝트를 수행
• 기업 또는 운영기관 지정 전문가가 수행 과정 코칭
• 프로젝트 최종 결과물을 심사·평가하여 피드백</td><td rowspan="2">• 취업취약 청년(준비중, 고립·은둔 청년 등) 대상 맞춤형 직무교육, 일경험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수행</td></tr>
<tr><td></td><td>사전 교육</td><td colspan="2">선수교육 + 직무교육</td></tr>
<tr><td rowspan="3">지원 내용</td><td>청년</td><td>참여수당</td><td>프로젝트 수행비</td><td rowspan="3">운영비 지원
(대기업은 최대 50% 지원)</td></tr>
<tr><td>기업</td><td>멘토수당 등 운영·관리비</td><td>프로젝트 기획·코칭·심사 등 운영·관리비</td></tr>
<tr><td>기타</td><td>프로그램 운영비(운영기관)
직무교육 운영비(교육기관)</td><td>프로그램 운영비(운영기관)
직무교육 운영비(교육기관)</td></tr>
</table>

자료: 고용노동부

내역사업 청년도전성장지원사업은 구직단념·미취업 청년 등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구직단념을 예방하려는 사업으로 초기상담을 거쳐 사회활동 참여의욕을 고취하는 프로그램 위주의 도전유형, 일상유지를 지원하는 성장유형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사업은 자치단체 공모 사업의 형태로 집행된다. 2027년 지출계획안은 1,114억 8,600만원이다.

동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청년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청년사업 증가에 비해 사업참여 후 취업, 실질적 사후관리 미흡 발생, 관련 커

뮤니티 등의 인프라 부족을 감안해 청년지원 사업 참여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멘토링, 커뮤니티 서비스, 활동공간 등을 제공하려는 사업이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사업 개요]

구 분	세부내용
추진배경	청년지원 사업 참여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의 공백기 없는 커리어 개발 지원
대상	K-뉴딜아카데미, 부트캠프 등 정부사업 종료 후 미취업청년
내용	기업, 직업훈련기관, 지방정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오프라인 거점공간 운영 및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등 지원
지원절차	플레이그라운드 가입 (청년) ➤ 신청서 검토 참여계약 실시 (운영기관) ➤ 활동 시작 (청년) ➤ 활동 코디네이팅 (일자리 매니저) ➤ 청년 관리 및 취업 지원 (운영기관)
소요예산	200.5억원 (오프라인 33억원*5개소 = 165억원, 온라인 30억원, 운영비 5.5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세부사업 K-청년 뉴딜아카데미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되었던 사업으로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직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기업 등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대신 고용노동부로부터 운영 비용을 지원받으며, 교육에 참여하는 청년은 참여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총괄운영기관의 심의를 받아 선정되며, 해당 기업과 관련된 직무 분야와 직무 외 일반 분야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2027년 지출계획안은 4,895억 4,400만원이다.

나. 분석의견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첫째, K-청년 뉴딜 일경험 지원 사업의 맞춤지원형 프로그램,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 집행시 고립·은둔 성향이 있을 수 있는 구직단념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설계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청년미래센터와 연계해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청년 뉴딜 일경험 지원(舊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맞춤지원형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은 구직단념청년, 고졸청년, 장애·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업취약청년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 ESG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한 것이다.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은 구직단념·미취업 청년에 대한 초기상담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의욕을 고취하거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K-청년 뉴딜 일경험 지원 사업 내 맞춤지원형 일경험지원 프로그램 개요]

구 분	세부내용
사업목적 및 내용	취업취약 청년 대상 맞춤형 직무교육,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사업 수행방식	운영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경상보조
사업규모	120억원, 3000명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 개요]

구 분	세부내용
사업목적	구직단념·미취업 청년 등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사업 수행방식	자치단체 경상보조(공모)
사업내용	(도전유형)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직업훈련 등 연계 (성장유형) 미취업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청년고용정책 안내 등 사후관리
사업규모	902.6억원, 6.7만명

자료: 고용노동부

특히 동 프로그램은 최근 비경제활동 인구 중 육아나 가사를 맡고 있거나 학교에 다니는 등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지만, 그냥 쉬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쉬었음' 청년(구직단념청년 포함)의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차별성이 있다.

연도별 쉬었음 청년 인구를 확인하면 35만명~43만명 수준, 전체 청년 인구 대비 3.7~4.2%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연도별 청년인구 및 쉬었음 청년 인구 분포]

(단위: 천명,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 전체 수(A)	10,956	10,782	10,612	10,563	10,444	10,250	10,067
쉬었음 청년 수(B)	448	418	390	401	421	428	367
쉬었음 청년 비중 (B/A)	4.1	3.9	3.7	3.8	4.0	4.2	3.7

자료: 국가데이터처

전체 쉬었음 청년 중 취업이나 이직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쉬었음'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이나, 상당수의 '쉬었음' 청년의 경우 그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로 청년 개인의 향후 고용가능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청년의 비노동력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쉬었음'상태가 지속될 경우 미래에도 추가적인 복지지원이 필요한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쉬었음' 청년에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진출을 돕는 것은 장기적 재정 운용 관점에서도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구직단념이 장기화된 청년의 경우 장기간 고립·은둔 상태에 있어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회 진출을 기피하여 프로그램 신청·참여 단계에 이르는 데에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감의 결여 등으로 사업 참여 도중 이탈하거나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사후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기존 청년일경험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 대상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성과가 보장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구직단념청년의 인적특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나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전담인력의 1:1 사례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을 통해 청년이 친구·지인 동료를 발굴해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 개요]

구 분	세부내용
사업목적	공공가치 기여에 관심 있는 청년이 진로 탐색,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일경험 지원
사업내용	청년 대상 홍보 컨텐츠 기획 등 모집 홍보 지원 취업알선을 위한 채용정보 서칭 참여센터의 행정 업무 지원 등
사업대상	(참여센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청년센터 또는 청년도전성장지원사업 운영기관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지원내용	(참여센터)참여청년 1인당 월 최대 15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월 5만원 멘토수당 지원 (청년) 월 최대 160만원 참여수당 지원
예산안 규모	11.8억원, 200명

자료: 고용노동부

구직단념청년을 또래 청년을 활용해 참여를 독려하고 사례 관리하겠다는 동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내 19세 이상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발굴하고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2]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심리·정서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사회참여 역량 강화 등의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연계한다면 정책효과를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기초적인 일상을 회복한 청년들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사업, 맞춤지원형 일경험 프로그램에 연계되도록 하는 경우 일상 회복에서 자연스레 경제활동 참여의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구축(보건복지부 일반회계 2537-303)

[청년미래센터 사업 개요]

구 분	세부내용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고립은둔청년 전담발굴·지원
사업내용	온라인 전담창구를 통한 자가진단 및 상담 지역 내 학교, 병원, 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연락체계 구축 일상회복(수면, 식사), 관계회복(가족, 친구), 사회참여 준비를 위한 역량 강화
사업대상	가족돌봄,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027예산안	396억 6,4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직단념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적특성을 고려한 사업 설계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청년미래센터 사업과 연계해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K-청년뉴딜아카데미 사업과 내일배움카드의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의 프로그램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K-청년뉴딜아카데미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0대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이 첨단·선호분야 직업 능력개발과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설계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988억 3,000만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추경 확정 이후 한 달('26.4.22.~5.22.) 동안 107개 기업, 149개 아카데미, 약 17,600명의 청년이 신청하는 등 높은 수요가 있었음을 감안해[3] 전년대비 약 5배 예산을 증액하였다.

3) 예산상의 사유로 53개 기업, 72개 아카데미, 8,2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K-청년뉴딜아카데미 사업 개요]

사업명	K-청년뉴딜아카데미
사업내용	대기업이 직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전을 지원
참여대상	(기업) 대기업 등 청년선호기업 (청년) 15~34세 청년
운영기간	400시간, 3개월 이상
프로그램	직무 분야 훈련(50% 이상 편성 필요), 자율 교육 훈련 분야 직무 분야 훈련: 금융, 문화 등 기업 특화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구직 청년 역량 교육 자율 교육 훈련: 소프트스킬, 진로설계, 현직자멘토링, 자체경진대회 등 폭넓게 인정
지원수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수도권 시간당 약 14,500원, 비수도권 시간당 약 24,500원)
참여청년 지원	수당 지급(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 이력관리 등
2027년 예산안 규모	4,895억원, 5만명 대상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K-뉴딜아카데미 사업 참여 기업 및 아카데미]

기업명	아카데미명	직무분야
GS	52g ReBoot Camp	AI
SK AX	SKALA (SK AI Leader Academy)	AI
SK 텔레콤	SKT ALEPH(AI Literacy Engine for Plasticity & Hardiness)	AI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L.L.M Academy	AI
인텔	인텔 AI for X 실무 프로젝트 과정(해커톤 참여 프로그램)	AI
NC AI	[NC AI] Unity 바이브 코딩 기반 AI 게임 직무 개발 과정	AI
케이티	KT ICT AX 아카데미	AI
포스코인재창조원	온디바이스 AI기반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5개	AI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취·창업을 위한 AI 실전 프로젝트 과정	AI
한국어도비시스템즈	[한국어도비시스템즈] AI Growth Marketer 양성과정(AGM 과정) 등 2개	AI
한국오라클 유한회사	Oracle AI Startup Bootcamp	AI
SK 하이닉스	Hy-Po (K-뉴딜 반도체 아카데미)	반도체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실전과정	로봇
신한금융지주회사	지능형(AI) 에이전트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과정	금융
우리금융지주	우리WON청년IT아카데미	금융

기업명	아카데미명	직무분야
KB국민은행	「KB-Bridge '청년 세대의 내일과 내 일을 잇다'」	금융
하나은행	하나 K-뉴딜 금융 아카데미	금융
CJ ENM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K-콘텐츠 스토리텔러 육성	문화
에스엠유니버스	K-POP 댄스 지도자 양성 과정 등 2개	문화
웅진씽크빅	웅진 TEXT-HIP CLUB: AI와 함께 쓰는 나의 첫 번째 독립출판	문화
하이브	HI HIGH	문화
한경닷컴	문화·마케팅[한경×이랜드] K-Tour LX 콘텐츠 마케팅	마케팅
한화	[한화 글로벌부문, 한화솔루션 인사이트부문] Hanwha Spark Camp 등 2개	마케팅
LG전자	마케팅제조Let's Grow with LG전자(디지털 마케팅 Track) 등 3개	마케팅
HD현대삼호	HD현대 선박건조 필드테크니션	조선
HD현대중공업*	HD현대 Future Builder Academy - Ocean Transformation 과정 등 2개	조선
한화엔진(주)	[한화엔진] 정밀제조 DX Academy	조선
한화오션	스마트 생산관리 DX 아카데미	조선
한화오션엔지니어링	[한화오션엔지니어링] Ocean QM DX Academy	조선
롯데지주(주)	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 호텔·서비스Track 등 2개	호텔·유통
신세계아이앤씨	Future & Dream Academy	호텔·유통
아난티	호텔아난티 호스피탈리티 서비스경험 디자인 아카데미	호텔·유통
현대홈쇼핑	유통[현대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전문가과정 등 2개	호텔·유통
매일방송(MBN)	MBN K-미디어 부트캠프	언론
머니투데이	뉴스미디어 데이터 기반 AI 퍼포먼스 마케팅 과정	언론
LG화학	화학·제조Let's Grow with LG화학(여수, 오산) 등 2개	제조 등
LG디스플레이	Let's Grow with LG디스플레이	제조 등
삼성전자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① 전자/IT제조기술자 분야 등 6개	제조 등
현대자동차	HINT (HMG Incubation of New Talent)	제조 등
화천기공(주)	CNC 공작기계 설계 및 스마트 제조 핵심인재 양성 과정	제조 등
HD건설기계	Hi-CEED	건설건축설계
현대건설(주)	[현대건설] HILLSTATE Academy	건설건축설계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ARiC (Archi Rise Camp)	건설건축설계
LS	LS JUMP-UP 부트 캠프	DX 융합
셀트리온	[셀트리온 Bio-Boot Camp] CELLOW	바이오
LS ELECTRIC	LEAP Academy [LS Electric Automation Pathway Academy]	자동화제어
SK플래닛	부산 스마트항만·해양물류 데이터 실무 과정 등 2개	항만
매일유업	[매일유업] More than Food Academy	식품
한국농어촌공사	전력시장 디지털 인재 아카데미 등 3개	전기
한화시스템	K-방산을 넘어, 세계로의 확장 등 2개	방산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실적, 청년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보인다.

다만, 동 사업의 집행과 관련 내일배움카드(일반)[4] 사업 내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T) 사업과 사업수행기관 및 프로그램이 일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내역사업인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일명 KDT사업)은 민간 혁신훈련기관, 민간 선도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여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사업이다.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과 K-뉴딜아카데미의 비교]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뉴딜 아카데미
공급 주체	선도기업 과정 등 기업이 훈련을 제공하기는 하나, 훈련기관 및 대학 등이 주된 훈련공급 주체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프로그램을 설계·운영
목적	신기술 분야 중급 이상 현장 실무 인력 양성	청년의 자신감 회복, 전문 직업훈련 및 취업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사업
내용	직무훈련만 허용 (주로 6개월 이상 장기 훈련과정)	직무훈련 외에도 직무 외 훈련(소프트스킬·현직자 멘토링 등) 폭넓게 허용 (3개월 내외 운영)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일부 KDT 사업의 훈련기관 및 훈련 내용을 확인해보면 대기업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바, K-뉴딜아카데미의 직무 과정과 내용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 보인다. 예를 들어 SK AX가 운영하고 있는 SK AI 리더 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K-뉴딜아카데미의 프로그램들과 차별성이 없다 보인다.

4) 코드: 일반회계 1131-300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주요 훈련과정]

구분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분야
기업	삼성	청년 SW·AI 아카데미	빅데이터
	케이티	AIVLE School	AI
	SK AX	SK AI 리더 아카데미	AI
혁신훈련기관	엘리스	엘리스 AI 트랙	AI
	팀스파르타	실무형 클라우드 엔지니어 양성 과정	클라우드
대학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핀테크 AI 과정	핀테크
	성균관대학교	Digital/Analog IC 기반 첨단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실무과정	반도체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KDT는 기업 외에도 직업훈련기관이나 대학 등이 훈련을 공급하고, 현장실무인력 양성과 직업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K-뉴딜아카데미는 기업만이 훈련공급 주체이고 직무훈련 과정도 있지만 청년의 자신감 회복, 직무 외 훈련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사업은 차별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훈련이 모두 직무훈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훈련기관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내용 중복의 문제는 피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특히 두 훈련 모두 대기업 내의 교육 관련 계열사, 사업부가 수행한다는 점에서 수행 주체가 겹칠 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차후 사업 집행 시 이러한 지적에 유의하여 두 사업의 프로그램이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7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에 따른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등

가. 현 황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사업[1]은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특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려는 사업으로, 2027년 3,793억 100만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청년 취업 특화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2][3] 사업 중 청년 유형을 분리하여 미래대응기금에 신규 편성한 것이다.

[2027년도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증감	
		당초	수정(A)	계획안(B)	B-A	(B-A)/A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	-	-	379,301	379,301	순증
Ⅰ유형	-	-	-	344,806	344,806	순증
Ⅱ유형	-	-	-	31,475	31,475	순증
청년지원단	-	-	-	3,020	3,020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본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는 1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되는 2유형으로 구별되었으며, 1유형은 크게 '요건심사형'과 '선발형'(비경활, 청년)으로 구분, 2유형은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 취업지원제도 사업은 1유형 중 선발형(청년)과 2유형 중 청년층 유형을 분리하여 편성한 것이다.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1-320

2) 코드: 일반회계 1234-300

3)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은 청년 유형 분리로 동 사업은 전년대비 3,150억 2,200만원(31.1%) 감액된 6,978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분류]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1]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5억 원 이하	선발 시 고려
Ⅱ유형	특정계층[2]	15~69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청년층[1]	15~34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중장년층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없음	무관

주: 1) 청년층 연령조건은 15~34세이나, 병역의무 이행기간(최대 3년) 가산이 가능함
2) 특정계층: 조건부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등
자료: 고용노동부

특히 1유형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신청자의 소득, 재산, 취업경험 점수를 합산하여 그 대상을 선발하여 왔으나, 최근 청년고용상황의 악화로 첫 취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취업경험 요건을 폐지하였다[4].

또한 첫 취업이라는 목적에 맞게 청년 상황에 맞는 3가지 취업 지원 경로를 특화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진단, 진로상담을 제공하고, 경력·역량개발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일경험, K뉴딜아카데미 등을 연계하며,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의면접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년 내 취업경험이 100일 이상 있어야 지원할 수 있었음.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 첫취업지원제도의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사업 목적	실업급여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업자를 보호하는 고용안전망	청년의 노동시장 첫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지원
지원 대상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15~34세, '준비중 청년' 등) * 취업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
지원 내용	〈취업취약계층 맞춤 지원〉 ▲복지 · 금융 · 주거 연계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 소득지원	〈'첫 취업' 맞춤 특화 지원〉 ▲진로탐색/일경험·훈련/취업연결 특화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첫째,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취업경험 요건 완화에 따라 지원대상 청년이 확대되어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할 유인이 높다 보이는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저소득자에게 근거 법령[5]에 따라 취업지원과 생계비를 제공하는 실업부조[6] 제도이다. 그간 저소득 구직자 청년도 동 사업의 대상에 포함하여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실업부조(1유형 요건심사형, 의무지출)와 청년취업지원(1유형 선발형 청년/2유형 청년, 재량지출)이 공존하고 있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원규모·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등 적극적인 청년 취업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청년에게 안정적으로 특화된 취업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유형을 별도의 세부사업인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로 분리 편성한 것인바, 이와 같은 분리 편성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6)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 빈곤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일정 기간 지원금을 주어 생계를 보장하고 구직 활동을 돕는 제도

다만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가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원대상이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형식적인 구직활동만을 하면서 구직촉진수당[7]을 수급하려는 유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자산 5억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동 요건에 따르면 부모와 가구가 분리되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청년의 첫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와 다른 성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모가 고소득, 고자산으로 높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단순히 청년이 가구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단순히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층상담과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요구할 것이고 단순·반복적 이력서 제출 등 형식적 구직활동을 AI를 활용해 적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8].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가구로 분리된 청년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이 본래 목적인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에 대한 특화된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달성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시에 참여자들의 취업률이 개선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동 제도 운영 시에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당 지급과 동시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업부조 제도로 성과지표를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취업률로 삼는 등 최종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7) 2027년도 구직촉진수당은 65만원으로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이 추가됨.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6개월 수령 가능함
* 가구원 中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8) 이미 2026년도에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 수당 감액 및 부지급(261건), 경고(51건)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률을 확인하면 취업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이 되는 청년 선발형의 경우 2025년도 기준 취업률이 62.2%이고 최근 5년간 변화 추이를 보더라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22~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사업종료자의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종료자	취업자	취업률	종료자	취업자	취업률	종료자	취업자	취업률	종료자	취업자	취업률
전체			339,557	184,935	54.5	269,575	159,614	59.2	295,959	177,239	59.9	328,948	190,819	59.8
1유형	요건심사형		110,854	61,961	55.9	80,263	48,215	60.1	83,526	51,056	61.1	90,669	55,387	61.1
	선발형	청년	114,163	68,740	60.2	97,031	62,276	64.2	118,227	76,494	64.7	130,973	81,458	62.2
		비경활	45,945	12,915	28.1	28,407	9,613	33.8	26,850	9,323	34.7	25,636	8,678	33.9
2유형	특정계층		23,576	9,494	40.3	13,756	5,363	39.0	14,233	5,409	38.0	13,216	5,207	39.4
	청년		34,108	25,169	73.8	36,269	25,893	71.4	39,319	26,977	68.6	44,717	31,262	69.9
	중장년		10,911	6,656	61.0	13,849	8,254	59.6	13,804	7,980	57.8	13,737	8,827	64.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률이 2022년부터 상승 추세에 있으며, 제도 참여자가 미참여자에 비해 취업률이 5.7%p 높고, 임금은 월 6만원높게 나타나는 등 제도의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는 청년의 노동시장 첫 진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업부조의 성격을 보다 강조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사업의 최종 목적이 다르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청년 첫취업지원제도의 주된 대상이 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발형 청년의 2025년 취업률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취업률이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동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취업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른 일경험 사업, 청년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률도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8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기존 집행 실적을 고려해 집행부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가. 현 황

고용안정장려금[1] 사업은 고용안정 및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활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출산·육아 지원제도 운영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주에게 각종 장려금과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7년 지출계획안은 2026년 당초 및 수정계획 대비 783억 7,900만원(17.8%) 증액된 5,177억 7,300만원이다.

[2027년도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지출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고용안정장려금	381,299	439,394	439,394	517,773	78,379	17.8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8,051	58,362	55,362	83,938	28,576	51.6
정규직전환 지원	1,778	6,900	4,900	8,100	3,200	65.3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20,620	14,644	15,609	21,417	5,808	37.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330,840	359,488	359,488	404,318	44,830	12.5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의 내역사업별 개요는 아래와 같다.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345-350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구 분	지원내용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유형)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등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월 최대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최대 20만원), 최대 1년 지원 (실근로시간단축유형)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여 연장근로 감소 등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 근로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1년 지원 (워라밸 +4.5 프로젝트 유형)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20~60만원을 지원, 신규채용 시 1인당 월 60~80만원 추가지원, 1년 지원
정규직 전환지원금	(장려금 및 임금증가 보전금)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30인 미만 기업, 비정규직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이상 기업 * 근로자 1인당 장려금(월 최대 40만원), 임금증가 보전금(월 최대 20만원), 최대 1년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장려금)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 지원 * 활용횟수에 따라 월 20~30만원, 1년 지원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출퇴근, 근로시간 단축) 및 시간단위 연차 및 모성보호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 일·생활 균형 시스템 설치비용 지원 *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의 80%(최대 1천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기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첫 3개월 월 1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원(인센티브 적용 시 월 10만원 추가 지급)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또는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140만원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 (월 20~6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기존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사업 확대 시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 및 장려금을 지원하여 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하려는 취지로서, 3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등이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환 노동자 1인당 기본 장려금 40만원을 지급하고,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1년이다.

2027년 예산안은 동 사업을 확대 편성하여 30인 이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비정규직 청년을 전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하게 동 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7년 정규직전환지원금 사업 개요]

사업명	정규직전환지원금
개 요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건비와 장려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
지원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지원기간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지원요건	정규직으로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수준	전환 노동자 1인당 기본 장려금 40만원 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이 증가하는 경우 인센티브 20만원 추가 지급
지원목표	1,650명
27년 예산안	81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연도별 계획액 및 결산액 현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동 지원금의 연도별 집행 현황을 확인하면 2024년을 제외하고는[2] 대부분 약 70% 수준에 그

치고 있고 2026년 8월 현재 집행률은 9.8%에 그쳐 저조한 수준이다. 한편 동 사업은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었다가 2026년에 사업 재개를 발표하고 예산을 다시 편성한 바 있다[3].

[연도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8월
계획액	15,331	15,331	12,307	4,000	2,500	6,900
결산액	11,955	10,510	9,314	9,599	1,778	679
집행률	78.0	68.5	75.6	240.0	71.1	9.8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이 재개되었음에도 불구 동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퇴직금·복리후생비 등 고정비용이 함께 증가하고 해고가 어려워지는 고용 경직성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단기적인 지원금이 실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유인이 되기 어렵다는 구조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동 사업은 집행 부진으로 2024년에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2026년 재개 시에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이 별도로 없었다는 점에서, 2026년의 집행 부진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고도 보인다.

2027년 지출계획안은 3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더라도 청년층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예산도 전년 당초계획 대비 12억원(17.4%) 증액하였는데, 청년 비정규직 규모 증가를 막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사업의 구조는 동일한 상태에서 대상만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앞서 발생한 집행부진의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이 기존과 같은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

2) 2024년 집행률이 높은 것은 2024년 사업이 중단되어 지출계획은 대폭 삭감되었으나, 기 신청자들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임

3) 2024년, 2025년 집행내역은 기 신청분에 대한 지급분임

9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 검토 필요

가. 현 황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1] 사업은 자율적으로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7년 지출계획안은 2026년 당초 및 수정계획 대비 79억 9,400만원(14.9%) 감액된 455억 6,600만원이다.

[2027년도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지출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63,128	53,560	53,560	45,566	△7,994	△14.9
고령자통합장려금	-	10,684	10,684	24,248	13,564	126.9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20,494	22,493	22,493	-	△22,493	순감
고령자고용지원금	42,635	20,382	20,382	21,318	936	4.6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정년 도래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사업과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3년 평균 대비 60세 이상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으로 구분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하면서도 비수도권 소재 사업장에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통합장려금' 사업을 신설하였고, 2027년 지출계획안부터 기존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을 '고령자통합장려금' 사업으로 완전히 통합할 예정이다.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347-350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개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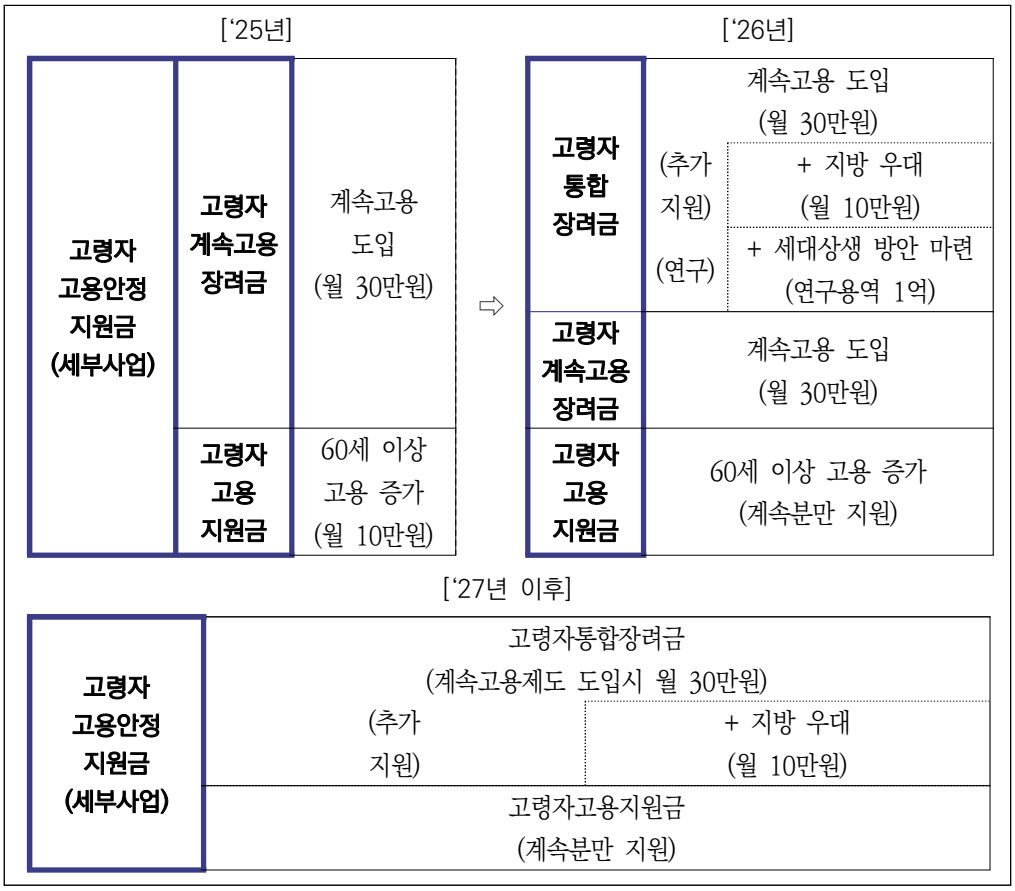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고령자통합장려금 사업의 지역 우대 지원금이 월 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를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통합장려금은 정년을 시행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은 변경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재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사업주에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6년부터 지방 우대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여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측면과 서울·경기·인천 외의 비수도권 지역의 고령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2]을 감안할 때 이러한 추가 지원은 고령자 고용 장려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최근 집행실적을 확인하면 동 사업의 기존 사업인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 모두 비수도권에 상당한 금액이 집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동 사업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고,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도별 지역별 사업 집행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통합장려금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제외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제외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제외	인구감소지역
'23	인원	3,775	3,346	798	-	-	-			
	금액	9,215	8,164	1,867	35,781	27,503	8,754			
'24	인원	3,345	3,067	734	-	-	-			
	금액	8,262	8,337	1,986	28,735	23,389	6,923			
'25	인원	3,534	3,453	726	-	-	-			
	금액	9,367	9,198	1,987	21,334	16,675	4,765			
'26. 7	인원	2,898	2,509	525	-	-	-	20	2,202	429
	금액	5,476	2,622	538	8,982	7,012	1,935	24	3,728	698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동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추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인구감소지역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보인다[3]. 인구감소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

2)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21.7%인데 서울의 경우 20.8% 인천의 경우 19.3%, 경기도의 경우 18.2% 수준으로 전국 평균을 하회함. 반면 전북은 27.1%, 전남은 28.9%, 경북은 28.1%, 경남은 23.9%로 전국 평균을 상회함.

3) 보건복지부가 13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경우 비수도권에 매월 10만5천원, 인구감소

적으로 높고, 상대적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인센티브 지급액이 커지는 경우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통합장려금 사업의 지역 우대 지원을 더 세분화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분류]

구분	인구감소지역(84개)		일반 비수도권 지역(83개)
	특별지원 지역(40개)	우대지원 지역(44개)	
서울			
부산			15개 자치구, 기장군
대구		군위군	7개 자치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광주			5개 자치구
대전			5개 자치구
울산			4개 자치구, 울주군
세종			세종시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양구군, 화천군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인제군, 춘천시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충남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계룡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전북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지역(우대)에 매월 11일만원, 인구감소지역(특별)에 매월 12만원을 지급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 중. 행정안전부의 고유가피해지원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에 15만원, 인구감소지역(우대)에 20만원, 인구감소지역(특별)에 20만원을 지급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을 한 바 있음

구분	인구감소지역(84개)		일반 비수도권 지역(83개)
	특별지원 지역(40개)	우대지원 지역(44개)	
경북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예천군, 칠곡군, 포항시
경남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자료: 행정안전부

10 퇴직연금사업운영: 기존 가입자의 중도 취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가. 현 황

퇴직연금사업운영 사업[1]은 ①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근로자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의 운영관리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계약형 퇴직연금), ② 중소기업(현재 50인 미만, 27.1.1. 기준 100인 미만)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③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퇴직연금연구센터를 운영, ④ 퇴직연금을 도입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초기 운영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융자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7년 지출 계획안은 2026년 당초 및 수정 계획 대비 38억 6,300만원(15.6%) 증액된 286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퇴직연금사업운영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퇴직연금사업운영	27,551	24,801	24,801	28,664	3,863	15.6
계약형 퇴직연금	1,829	1,844	1,844	1,854	10	0.5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25,405	22,570	22,570	20,208	△2,362	△10.5
퇴직연금연구센터 운영	317	387	387	395	8	1.6
경영자금 융자지원	-	-	-	6,207	6,207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내역사업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근로복지진흥기금 3061-318

하는 것으로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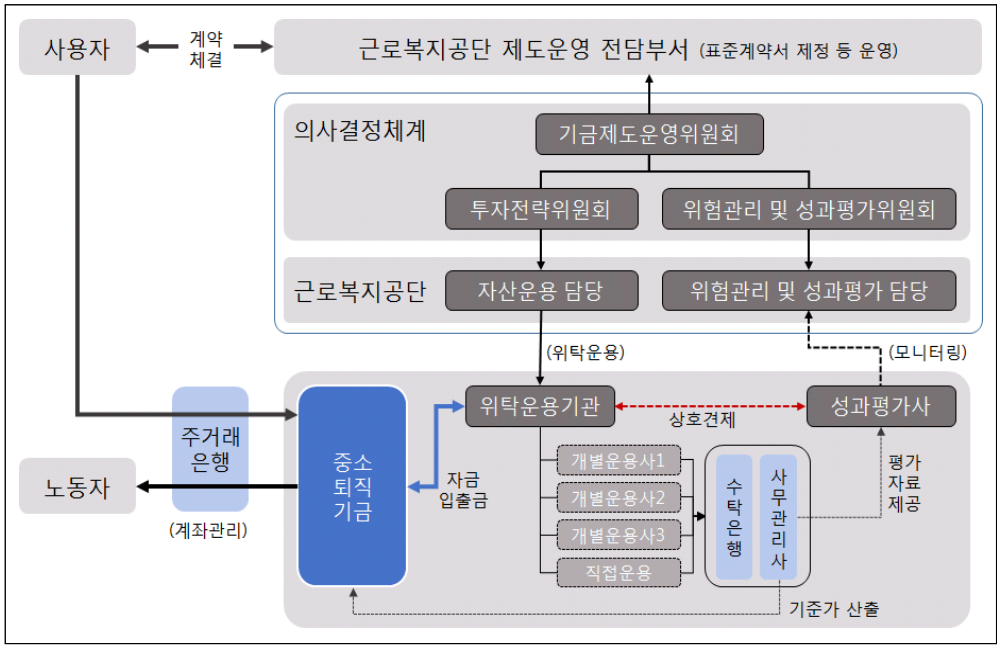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이 사업에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사업주에게는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임금총액의 1/12이상)의 10%를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도 사업주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적립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방법]

1단계: 제도도입 동의	2단계: 가입신청	3단계: 가입심사 및 통지
사용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음	사업주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공단은 가입대상 여부 확인 후 사업주에게 가입여부를 통지

자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 개요]

ㅇ (내용) 중소기업(50명 미만*)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 '26.7.1. 50인 미만, '27.1.1. 100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ㅇ (운영) 사용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자산운용기관 위탁) * 적립금을 기금화(pooling) →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및 규모의 경제 추구 ㅇ (제공 서비스) 재정지원*, 가입절차 간소화**, 수수료 면제('23.4월부터 5년간) * (지원요건) 30인 이하 사업장의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23년까지는 120% 미만) (지원수준) ① (사업주: 매년 납부하는 사용자부담금의 10% ('22년부터 계속) ② (근로자) 매년 납부하는 사용자부담금의 10% ('24년 신설) (지원한도) 지원금별로 "1인당 최대 28만1천원, 1개社 당 최대 30명, 최대 3년간 지원" ** 표준계약서 체결(사용자↔공단)로 규약작성 의무 면제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도 가입 취소 규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립금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사업자와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2], 사업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전문적·집합적·장기적으로 운용하게 함으로써 연금소득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 중소·영세기업의 퇴직금 미지급을 예방하고, 중소·영세기업의 일시적 퇴직금 지급 부담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법률 제21475호, 2026.3.17. 공포, 2027.1.1. 시행)에 따라 동 제도의 가입 대상을 5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지출 계획 규모를 전년 대비 38억 6,300만원(15.6%) 증액 편성하였다[3].

2)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중퇴기금제도(푸른씨앗)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2024년부터 전년도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당해연도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지원(1개사 당 최대 30명, 최대 3년간 지원)

다만 동 제도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가입 중도취소 및 중도인출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2024년 연말 대비 2025년 연말 적립금액은 6,306억원 증가했으나 2,285억원의 중도인출이 발생했으며, 2025년 연말 대비 2026년 8월 적립금액은 4,296억원 증가했으나 2,582억원의 중도인출이 발생하였다.

[2022~2026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도취소 사업장 수 및 중도취소 근로자 수 현황]

(단위: 개소, 명, 억원)

	사업장(개소)		근로자(명)		당해연도 중도인출 금액	누적 중도인출 금액	연말 적립금액(억원)			
	당해연도 가입 사업장 수	당해연도 중도취소 사업장 수	당해연도 가입 근로자 수	당해연도 중도취소 근로자 수				적립금액 중 정부 재정 지원금	적립금액 중 정부 사업주 재정지원금	적립금액 중 정부 근로자 재정 지원금
2022	2,549	106	10,282	632	2	2	324	0.38	0.38	-
2023	12,194	946	66,927	11,897	398	400	4,734	23	23	-
2024	10,383	841	74,364	30,529	1,365	1,765	8,601	147	82	65
2025	13,371	970	100,933	45,549	2,285	4,050	14,907	239	120	119
2026.8	9,534	849	84,187	46,211	2,582	6,632	19,203	185	91	94

주: 근로자 재정지원금은 2024년 1월부터 지급을 시작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인출 금액은 대부분 근로자 퇴직,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업장의 특성상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한 인출이 다수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적립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4],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향후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3) 고용노동부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률은 77.6%로 높은 편이지만, 근로자 가입률은 58.7% 정도에 그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4) 고용노동부는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 대상 사업장을 추후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게 되는 경우 가입 대상의 증가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임

[2022~2025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액 및 연평균 수익률]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적립금액	324	4,734	8,601	14,907
연평균 수익률	2.45	6.97	6.52	8.67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자 재정지원금의 도입 등으로 사업이 2024년도부터 적립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동 퇴직연금기금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현재와 같이 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반복되고 인출금액이 증가할 경우 수익률 제고와 이를 통한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 사업은 계약형 퇴직연금(DC, DB, IRP)[5][6] 상품과도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적립금 및 수익률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의 이탈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이에 유의하여 집행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2027년 9월[7]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동 세부사업으로 집행하지 않고, 일반회계 '퇴직급여제도 정착지원[8][9]' 사업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다.

---

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집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투자주체(근로복지공단)와 책임의 귀속주체(근로자)가 상이하나, 계약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투자의사결정에 따라 자산운용이 이루어져 투자주체(근로자)와 책임의 귀속주체(근로자)가 동일하다.

6) 계약형 퇴직연금은 ① 사용자가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퇴직 시점 평균 임금 × 근속연수)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s), ② 사용자 납입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고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③ 개인이 부담금 납입과 운용책임을 모두 지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d Pension)로 구분됨

7) 노사정 공동선언(26.2.)에 따라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을 단일화하는 것임. 다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기존 가입자의 경우 동 사업의 지원기간인 3년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

8) 코드: 일반회계 3034-313

9) 노사정 공동선언(26.2.)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라 영세사업장(30인 미만 중소사업장 및 종사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 저소득 노동자(최저임금의 130% 미만을 지급받는 노동자)에 대한 부담금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임. 2027년 고용노동부 일반회계에 신규사업으로 65억 2,1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퇴직연금사업 운영(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과
퇴직연금 조기도입 사업장 재정지원(일반회계) 사업 비교]

	퇴직연금사업 운영	퇴직연금 조기도입 사업장 재정지원
사업목적	푸른씨앗(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급여를 공동기금으로 운용) 제도 확산	퇴직연금 의무화 이전 퇴직연금 조기 도입 촉진
지원대상	3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내용	최저임금의 13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각각 지원	최저임금의 13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사업주에게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별 재정지원 사업 변화]

	'27.8. 이전 설정	'27.9. 이후 설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퇴직연금사업 운영 사업(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지원	퇴직연금 조기도입 사업장 재정지원 사업(일반회계)으로 지원
그 외 퇴직연금제도 (DC, DB 등)	퇴직연금 조기도입 사업장 재정지원 사업(일반회계)으로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11 산재보험급여: 선보장 급여 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필요

가. 현 황

산재보험급여 사업[1]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 및 그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신속·공정하게 지급하여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산재장해급여자의 직업훈련 및 직장복귀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2026년 당초 및 수정 계획 대비 4,783억 3,700만원(5.9%)이 증액된 8조 6,24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산재보험급여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산재보험급여	8,004,324	8,146,300	8,146,300	8,624,637	478,337	5.9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자가 업무상 원인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각종 산재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급여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된다.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1-350

[산재보험급여 종류]

구분			사업내용	지원금액
요양중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비용지원	▲ 진료비(진찰, 처치, 수술 등) → 현물급여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급여 지급	▲ 평균임금[1]의 70% 지급 ('26년 기준) * 최고: 최고보상기준 고시금액(1일 268,299원)의 70% * 최저: 일반근로자(1일 82,560원, 최저임금 적용), 노무제공자[2](1일 59,171원)
	상병보상연금		2년 이상 요양 중인 중증요양상태등급(1~3급) 해당자에게 지급	▲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 * 휴업급여 대신 지급
요양종결	장해급여	일반	요양종결 후 장해상태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일시금: 1급(1,474일분)~14급(55일분) ▲ 연금: 1급(329일분)~7급(138일분) * 1~3급: 연금 지급(1~4년 선급금 청구시 50%만 지급) * 4~7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1~2년분 선급금 청구시 50%만 지급) * 8~14급: 일시금 지급
		진폐	진폐장해 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에게 진폐보상연금 지급	▲ 기초연금(최저임금×365×60%)[3] + 진폐장해연금* * 진폐장해연금= 평균임금×장해등급별 지급일수 장해등급: 1급(132일),3급(132일),5급(72일),7급(72일),9급(24일),11급(24일),13급(24일) 지급
	간병급여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1~2급 중 간병급여 대상자에게 지급	▲ (상시) 전문간병인 53,060원, 가족/기타 46,250원 ▲ (수시) 전문간병인 35,370원, 가족/기타 30,830원
	직업재활급여		요양종결 이후 장해등급 1~12급 판정을 받거나 판정을 받을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자에게 지급	▲ 직업훈련비용: 훈련비(고시금액) · 훈련수당: 최저임금 100%까지 차등지급 ▲ 직장복귀지원금[4] · 1~3급(80만원), 4~9급(60만원), 10~12급(45만원) ▲ 직장적응훈련: 45만원, 재활운동지원: 15만원
사망시	유족급여	일반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 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연금수급자격자 희망시 50% 일시금 지급
		진폐	진폐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 지급	▲ 사망 전 진폐근로자가 수급하던 진폐보상연금액 * 유족보상연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장례비		유족 또는 사망자의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 평균임금의 120일분 * 최고 19,279,760원, 최저 13,943,000원('26년 기준) * 유족이 아닌 경우 장례실비 지급

주: 1) 산재근로자가 산재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2) 노무제공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 국민연금법상의 기초연금이 아닌 별도의 급여임
4) 최대 12개월 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연도별 보험급여 수급자 수 및 보험급여 증가율을 확인해보면 수급자 수는 3개년 평균 2.4% 증가하였고, 보험급여액은 3개년 평균 6.2%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보험급여 수급자수 및 보험급여 증가율]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7.	3개년 평균 증감률
수급자수	390,475	398,324(2.0)	405,539(1.8)	419,432(3.4)	375,798(14.1)	2.4
보험급여	6,686,486	7,284,941(9.0)	7,633,318(4.8)	8,004,324(4.9)	5,145,990(10.7)	6.2

주: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의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다. 재해는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되는데 사고는 재해발생경위와 근로자의 업무 이력 등을 통해 사고와 업무 간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다.

업무상 질병은 해당 질병과 업무상 유해 위험 요인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은 근로복지공단 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치며,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나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업무상 재해 조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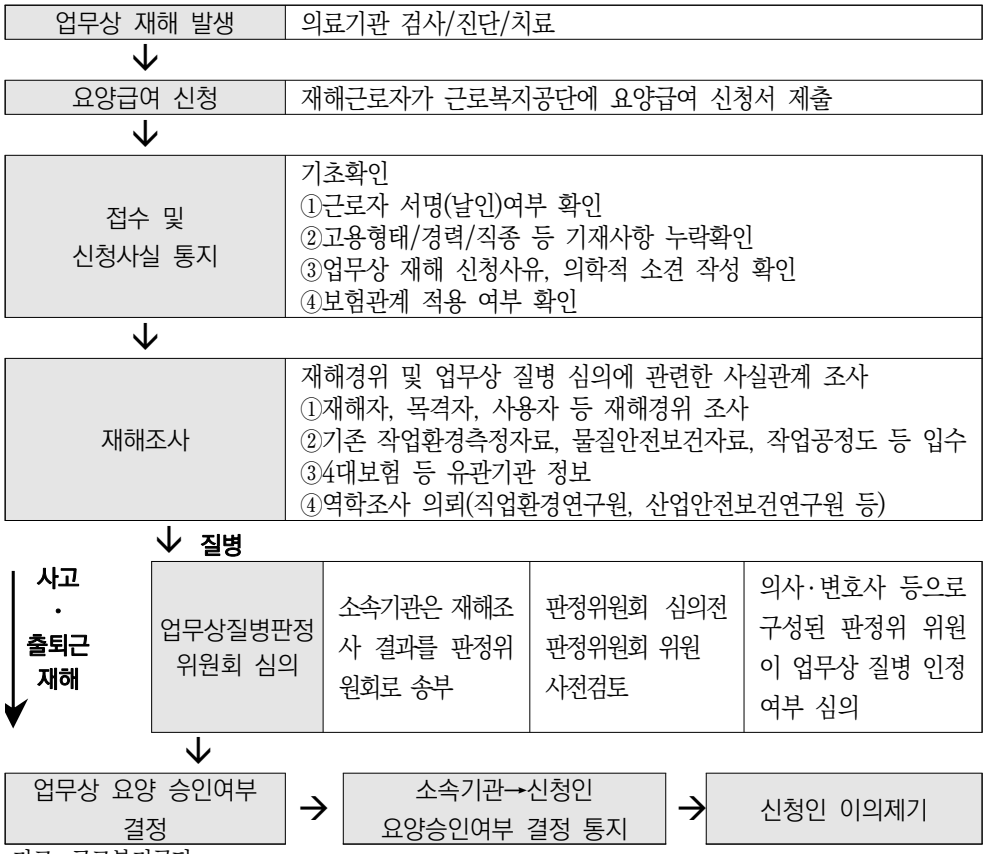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급여의 신청을 받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하며[2], 역학조사 등 재해 인정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 조사기간 등 일부 기간은 제외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걸리는 기간
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나. 분석의견

선보장 급여 체계는 관련법 개정과 연계한 예산안 심의가 필요하고, 상병수당을 소관하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간 업무 조정, 부정수급 최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을 때 치료비와 소득보전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와 건강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이나, 현실적으로 업무상 질병에 관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행정적 판정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잦아 승인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판정 절차 장기화시 근로자는 치료비와 생계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한계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치료 지연과 직장 복귀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된다[3]. 실제로 산재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기한을 확인하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 218.5일에 달하여 상당한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산재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일)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7
업무상 사고	처리건수	116,856	122,066	131,281	135,384	134,146	79,341
	평균 처리기간	15.3	15.9	16.5	17.7	18.9	19.0
업무상 질병	처리건수	24,871	28,796	31,666	38,219	50,946	39,636
	평균 처리기간	175.8	182.0	214.5	227.7	244.7	218.5

자료: 근로복지공단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일정한 요건 하에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일정 수준의 급여 또는 치료비를 선지급받고 사후에 산재 승인 여부에 따라 정산할 수 있게 되어 산재를 입은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재해근로자에 대한 산재 인정이 지체되는 경우, 재해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원칙적으로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으나, 산재승인 전에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산재 승인 후에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받게 됨.)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재해 조사기간을 법정화[4]하고 기간 초과시 산재보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여 선보장 급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며, 이에 선보장 급여 예산 435억 6,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선보장의 대상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로 한정하였는데, 산재보험 선보장제도가 산업재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장기화되는 동안 재해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과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바, 이에 직접 대응하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5].

[산재보험급여 선보장 개요]

구 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재해조사기간 초과* 시 재해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 * 산재 신청 후 90일 이내, 특별진찰·역학조사 등 의학자문 시 180일 이내
지급대상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수준	산재 요양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및 최저임금 60% 수준의 휴업급여*를 지원 * 보건복지부 추진 상병수당 지급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환수조치	최종 재해 불승인 시 기 지급된 선보장 급여는 환수조치 하되 요양금액이 큰 질병은 환수 유예기간 및 분할납부를 통해 환수부담 최소화
예산	요양급여 166억 9,100만원 휴업급여 268억 7,5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선보장 제도 도입으로 산재근로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긍정적으로 보이나, 고용노동부는 선보장 급여 체계 도입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인다.

4) 고용노동부는 산재 신청 후 90일 이내, 특별진찰·역학조사 등 의학자문 시 180일 이내로 계획 중

5) 재해노동자가 요양 중일 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요양이 종료된 후에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됨. 요양이 종료된 후에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은 산업재해 승인 전 치료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선보장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임

첫째, 선보장 체계의 도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을 수반하는 것인바 법안 심사와 연계한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산재보험 선보장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안[6]이 계류되어 있는바 이들 법안의 심사가 조속히 완료되어 차년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부가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7]'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상계·정산, 차액지급 및 환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전국 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중에 있다[8].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내용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급
대상지역	총 8개 지역('26.9월 기준) / 공모선정 * 2단계('23.7~, 4개 시군구) 및 3단계('24.7~, 4개 시군구) (1단계 시범사업은 '24.12월 종료) ** 대구달성, 안양, 용인, 익산, 전주, 원주, 충주, 홍성
대상	만 15~64세 취업자(일정 소득 이하) * (취업자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사업자등록 및 매출증빙 ** (소득기준) 25.5부터 소득기준은 폐지되었음(기존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기준 적용)
보장수준	日당 49,540원(최저임금 60%) 또는 직전 소득의 60%(49,540원~68,100원, 건강보험가입자 한정), 최대보장기간 150일

자료: 보건복지부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40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81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4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106호)

7) 코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4931-309

8) 보건복지부는 추후 동 사업을 정식사업으로 편성하고, 그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음

고용노동부는 먼저 산재보험 선보장 급여를 지급하고 추후에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선보장으로 지급된 산재급여를 환수하되, 휴업급여의 경우 상병수당과 정산·상계 하여 재해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재보험 선보장 급여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상병수당은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향후 국민건강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인바, 소관과 재원이 다른 두 급여 사이의 정산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각에서 선보장 급여 시행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보장 급여 지급 시 일부 근로자가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음에도 신청만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산재 불승인 이후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도적 허점을 통한 재정 누수가 지속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선보장 급여 체계의 도입과 함께 부정수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설계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위 내용에 유의하여 선보장 급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2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재정지원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가. 현 황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1]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50억원미만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①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제조·서비스업 등에 지원)·스마트 안전장비 구매를 지원하고(안전일터 조성지원), ②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며(안전동행 지원사업), ③ 화학물질·조리부산물 노출 위험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 설치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이동식 에어컨·산업용 선풍기 구매를 지원하는(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2026년 당초 및 수정 계획 대비 358억 6,600만원(6.7%)이 감액된 5,01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다. 전년 대비 지출 계획액이 감액된 것은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지출구조 조정(1,010억원)이 반영된 것이다.

[2027년도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지출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96,521	537,093	537,093	501,227	△35,866	△6.7
안전일터 조성지원	110,659	160,607	160,607	176,827	16,220	10.1
안전동행 지원사업	331,999	332,000	332,000	231,000	△101,000	△30.4
건강일터 조성지원	50,824	40,825	40,825	49,825	9,000	22.0
화재 폭발사고 취약사업장 특화지원	-	-	-	40,080	40,080	순증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3,039	3,661	3,661	3,495	△166	△4.5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1-350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단순히 재정지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크게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의 3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내역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은 기술·재정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의 유해 위험요인 개선 및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치 보급 확산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개요]

구 분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금액 및 지급비율	예산안
건설현장 추락붕괴 예방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한도 : 같은 사업주당 9,000만원 까지 ※ 현장당 한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필요시 지원한도 내에서 현장 당 한도 조정가능) ▸ 지원비율 : 소요비용의 50%~65%*	534억 6,700만원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등	▸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필요에 따라 신청한 경우 ▸ 감독·점검, 공단 기술지도 등 결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 ▸ 지원비율 : (고위험)소요비용의 70%, (스마트)소요비용의 80%	(고위험) 300억원 (스마트 안전장비) 300억원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 상시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업장	▸ 떨어짐 예방설비, 끼임 예방을 위한 컨베이어 교체 등	▸ 교체비용 90% 지원	582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스마트 안전장비가 보급된 사업장이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사고재해자수가 줄고 있고, 미지원 사업장 대비 지원 사업장의 재해발생 비율이 작게 나타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별 사고재해자수를 확인해보면 2024년 대비 2025년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이 1.11% 감소한 반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장의 경우 3.2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도 지원 사업장의 떨어짐 발생비율이 매년 7%p 내외로 더 적게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연도별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건설업) 성과평가 결과]

(단위: %, %p)

사고재해발생 비율	2022	2023	2024	2025	2026.8.
미지원 사업장 재해 중 '떨어짐' 재해발생 비율(A)	32.0	33.0	32.9	34.8	33.7
지원 사업장 재해 중 '떨어짐' 재해발생 비율(B)	25.3	24.3	26.4	27.8	26.5
'떨어짐' 재해발생 비율 차이(A-B)	6.7	8.7	6.5	7.1	7.2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장별 사고재해자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고재해자 수		증감 인원	증감률
	2024	2025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장	274	265	△9	△3.28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	83,103	82,182	△921	△1.11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동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2026년 4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의 내용을 참고해 보완해야 할 사항이 필요하다 보인다.

첫째, 내내역사업 '건설현장 추락붕괴 예방' 사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장비 지원금액을 수령하기 위해 실제 공사계약과 달리 공사금액을 축소하거나 하나의 현장임에도 복수의 공사로 분할하여 신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공사금액을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현장 추락붕괴 예방 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내용]

❶ (공사금액 축소) 'ㅁ건설'은 '제조공장 신축공사(공사금액 5,973백만원)'를 추진하면서 공사금액을 4,936백만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지원사업 신청(27백만원 과다지원)

❷ (공사현장 분할) 'ㅇ건설'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공사금액 3,800백만원)'를 추진하면서 2개의 공사(각 1,900백만원)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 신청(26백만원 과다지원)

❸ (공사금액 VAT제외) 'ㄱ건설'이 시행한 '오피스텔 신축공사(공사금액 5,498백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공사금액(4,998백만원)을 적용(30백만원 과다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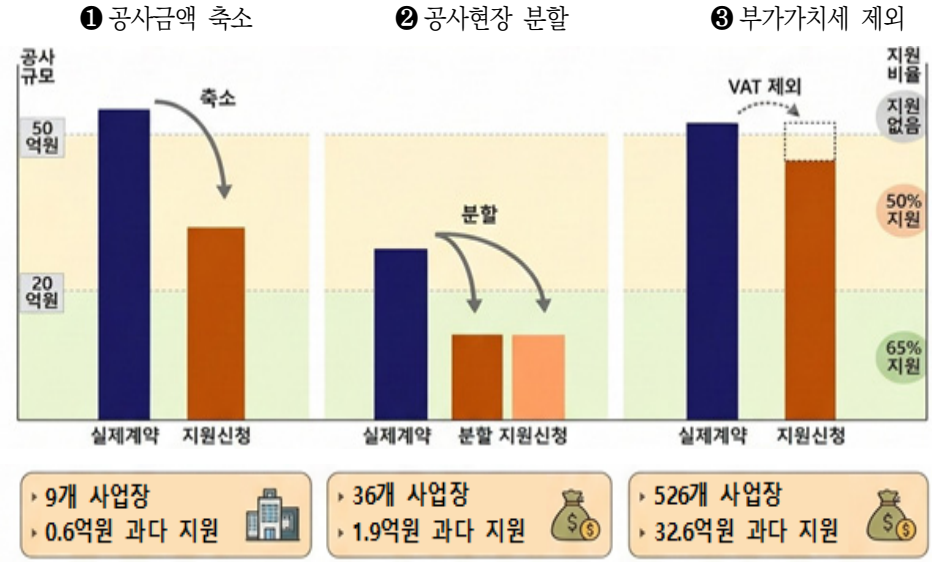

자료: 국무조정실

둘째, 내내역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대한 충돌예방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37종) 지원과 관련하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안전기능 미사용·고장·방치 등 60%가 부적정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람 소음 등으로 인해 장비의 안전기능을 사용하지 않거나, 현장여건에 맞지 않아 장비를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안전장치가 고장이 나도 작업에 영향이 없고, 수리비가 부담되어 고장이 난 상태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스마트 안전장비 주요 부적정사용 예시]

품목명	부적정사용 내용	부적정사용률
차량 충돌예방장치	- CCTV 채널 고장 방지 - 알람 소음으로 인한 기능 차단	80%
근력보조슈트	- 착용 시 작업 불편 - 활동 제약으로 인한 미사용	76%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 알람 소음으로 인한 전원 차단 - 스마트 안전기능 미사용	64%
AI인체감지시스템	- 위험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공간에 설치 - 알람 소음으로 인한 안전기능 차단	50%

자료: 국무조정실

다음으로,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대-중소기업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하청간 안전보건 상생지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금액을 노후 위험공정 개선 명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7년 동 사업의 예산 규모는 2,310억원으로 전년대비 1,010억원(30.4%)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다.

[안전동행 지원사업 개요]

구분	안전동행 지원사업
지원품목	중소 제조업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기계·설비 등 공정개선, 화재·폭발 대응 시설 등)
지원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위험 업종 사업장 (뿌리공정, 기계기구·금속 제조 등 6대 업종, 1·2차 전지 제조업 등)
지원비율	50%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은 40%(원청 10% 부담)
지원금액	최대 1억원
선금	선금 80%(민생경제 사업)(사업장 신청 + 지급보증보험 확인)
2027년 예산안	2,310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와 원청(대기업)이 안전보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지원함으로써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산업안전분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바 그 취지가 긍정적이다 보인다. 2025년 동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기업 중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액을 지원 받은 기업의 수가 3,383개소로 전체 지원 대상 기업의 73.7%를 차지한다.

[20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집행내역]

(단위: 억원, 개소)

구 분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지원금액	94.2	290.6	2,935.1
대상 기업 수	423	786	3,383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제조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신규 설비를 도입하거나 교체를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 관리·감독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 부적절한 행태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동 사업을 통해 보조를 받은 사업장은 안전한 신규 설비를 도입하고 위험이 있는 기존 설비를 폐기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나, 기존 위험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타 현장에 반출 및 매각하여 산업현장에 위험을 상존시키는 경우가 확인된다[2].

또한 동 사업은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위험개선 목적 외의 장비 도입을 지원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기존 위험설비를 교체하는 것을 넘어 지원금액을 이용해 추가로 장비를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3]. 이는 안전장비 도입이 필요한 다른 사업장에 대한 보조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취지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내역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 및 폭염재난 등의 대응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4]이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 사업장의 수요가 높

2)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2026.4.29.)'에 따르면 00 사업장은 끼임/절단사고 예방을 위해 고장이 잦은 밀링 3대에 대하여 신규 CNC 밀링 3대를 공단에게 지원받고 기존 설비(밀링)는 현장 존치 사용(총 6대 밀링)하는 등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됨

3)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2026.4.29.)'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이라는 부가적인 이유로 CNC 선반·밀링 지원 사업장 中 56개 사업장에 기존 설비 대비 70대 초과 지원한 것이 확인되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

은 온열질환 예방 장비(이동식에어컨·산업용선풍기·그늘막 등)의 설치를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최근 폭염 관련 산재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사업으로 보인다[5].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입된 동 사업은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해 2027년 예산안은 11,120개의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3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중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품목]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자료: 고용노동부

[연도별 폭염 관련 산재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사망외	사망	사망외	사망	사망외	사망	사망외	사망	사망외	사망	사망외
전체 재해자	2	16	3	22	7	22	3	30	6	67	6	78

자료: 고용노동부

[연도별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사업 예산 편성 내역]

구 분	예산	물량
2025	200억원	5,400개소
2026	280억원	8,960개소
2027	350억원	11,120개소

자료: 고용노동부

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5)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사업의 성과를 감안해 2027년도부터는 1,250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예산금액 20억원) 한랭질환 예방장비(온풍기 등)의 구매·임차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그 집행과 관련하여 장비 공급 업체들이 냉방능력을 과대표기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26년까지 확인된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총 18개 업체에 대해 약 87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초과지급되었다.

[온열질환 예방장비 업체의 부정수급 현황]

부정수급 관련 업체 수(개소)	온열질환 예방장비 냉방능력 과대표기에 따른 초과지급 현황		
	사업장수(개소)	수량(대)	초과 지급금액(백만원)
18	23,577	60,933	8,697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공사금액 과소 신고와 관련하여 건설현장의 산재보험 정보, 도급계약서, 건설공사대장의 정보를 교차하여 부정수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며, 스마트 안전장비의 부적정사용 관련 지원 품목 선정 단계, 가격 산정 단계 등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증 절차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2026년부터 1:1 교체 및 기존 설비 폐기 조건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방식을 개편 완료하였으며, 온열질환 장비 관련 지원금을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확인된 제조사를 대상으로 청문 등 소명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확정한 후, 동 사업 참여제한 및 초과지급액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만약 기한 내에 자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강제 환수를 위한 법적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원 품목 선정시 재해예방 효과 및 현장 활용성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지원된 장비의 안전기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수급 발생 시 적극적인 환수와 처벌을 통해 동 사업의 긍정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13 업종별 재해예방: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의 운영제도 재검토 필요 등

가. 현 황

업종별재해예방[1] 사업은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직업 고위험 사업장에 위험요인 점검 및 제거 기술지도와 위험성평가 실행을 지원하고(사고성재해 집중관리), ② 소규모 사업장(1억원 미만 건설업, 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등)등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을 위탁하여 실시하며(민간기술지도),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300인 미만 사업장 중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유해·위험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新화학산업 분야 사업장[2] 등을 방문하여 기술지도와 컨설팅을 실시하는(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2026년 당초 및 수정 계획 대비 1,163억 4,200만원(49.3%)이 감액된 1,19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6년도 계획액 대비 1,163억 4,200만원(49.3%)이 감액된 것은 내역사업인 '자율안전관리 체계구축' 사업[3]이 별도의 신규 세부사업 '자율안전관리체계구축(4152-356)'으로 이관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2-350

2) 전지산업, 수소산업, 폐플라스틱 산업, 바이오가스 산업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이행 확인과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 고위험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 재해원인 분석·개선조치 지원·이행 확인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액은 1,219억 3,500만원임

[2027년도 업종별재해예방 지출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업종별재해예방	155,812	236,062	236,062	119,720	△116,342	△49.3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12,506	60,234	60,234	65,827	5,593	9.3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9,601	11,678	11,678	15,538	3,860	33.0
소규모 사업장 청년안전 패트롤	-	-	-	4,012	4,012	순증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671	698	698	698	-	-
민간재해예방 기관평가	544	876	876	1,229	353	40.3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391	400	400	1,880	1,480	370.0
AI, 빅데이터 활용 산재예방 시스템	847	1,504	1,504	-	△1,504	순감
안전보건종합진단	452	500	500	555	55	11.0
안전한 일터 지킴이	-	44,578	44,578	44,578	-	-
민간 기술지도	52,542	51,273	51,273	51,273	-	-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2,535	2,620	2,620	2,620	-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88,207	121,935	121,935	-	△121,935	순감

주: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내역사업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별도의 신규 세부사업으로 이관되어 편성되었음
자료: 고용노동부

2027년도 지출계획안에는 산재예방 사업 지원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 안전지킴이'를 채용해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에 기여하는 '소규모 사업장 청년 안전 패트롤' 사업이 내내역사업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에 신규로 편성(40억 1,200만원)되었고, 노무제공자 산업재해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공모하는 '노무제공자 산재예방지원' 사업이 내내역사업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에 신규로 편성(16억원)되었다.

나. 분석의견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은 정책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운영제도의 타당성 검토 및 산업재해 예방 효과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 보인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은 2023년까지 시행되고 종료된 '고위험 업종 안전보건지킴이'를 확대 개편하여 편성된 것으로 2027년 지출계획안에 2026년도와 동일하게 1,000명을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44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다[4].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족한 재해예방 인력을 보완하여 사망사고 취약업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야를 건설업·조선업·제조업으로 나누어 건설업은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조선업은 사고사망 비율이 높은 완성배·블록업체의 협력업체, 수리조선 사업장, 제조업은 50인 미만 고위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터 지킴이를 배치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거나(기간제지킴이) 근로자단체와 사업주단체에 소속된 현직자를[5] 위촉하여(위촉지킴이) 모집한다.

---

4) 동 사업은 2026년도 신규 편성 당시 단년도 시범사업으로 편성되어 중기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았음. 이번 지출계획안 편성시에 동 사업은 정식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나,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상의 면제 요건이 충족되어 기획예산처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26.3.12.)으로 승인되었음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5)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인총연합회 등 노사단체에 1-2년 이상 소속된 인력을 주축으로 운영하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2027년 안전한일터지킴이 사업 개요]

구 분	세부내용	
사업목적	안전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상시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신중년 등을 우선 채용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여	
사업내용	건설업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추락·화재 근절 순찰 지붕공사·달비계작업 집중 순찰 등 중점 추진
	조선업	사고사망 비율이 높은 완성배·블록업체의 협력업체와 안전관리가 취약한 수리조선 사업장 대시 불시 순찰 활동 실시
	제조업	50인 미만 고위험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끼임, 부딪힘, 작업 시 전원 차단 등 집중점검
보수수준/ 업무량	기간제	시간당 14,500원 / 하루 3건 순찰 (800명 채용)
	위촉	건당 110,000원 / 일일 최대 2개소 (200명 채용)
편성내용	44,578백만원 = 1,000명×44,578천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지킴이의 경우 舊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과 같이 만 50세 이상 퇴직자 중 다음과 같이 건설업이나 조선업에 종사한 실무경력 또는 해당 자격 소지자를 선발함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부족한 산업재해예방 인력을 보완하여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을[6]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기간제 지킴이 자격요건]

업종	자격요건	경력요건 확인
건설업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의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 경력또는 건설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전문 퇴직 인력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전 근무회사의 경력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조선· 제조업	조선·제조업 6개월 이상 실무 경력 또는 안전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6개월 이상 산업안전분야 실무 경력을 보유한 전문 퇴직 인력	전 근무회사의 경력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6) OECD 평균: 0.29‰,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0.38‰

실제로 동 사업의 시행에 따라 지킴이 도입 전 대비 업종별로 점검사업장 비율이 증가하는 등 사망사고 취약 업종 및 위약 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커버리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지킴이 도입 전 점검비율은 5.3%에 그쳤으나, 2026년 지킴이 도입으로 점검비율이 15.3%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 순찰목표 및 점검비율 목표]

구분	사업장수 (A, 개소)	지킴이 (명)	26년 순찰사업장수 (B, 개소·회)	점검비율(%) (점검사업장 수)	
				지킴이 도입 전 ('25년, C)	지킴이 도입 후 ('26년,(B+C)/A)
합 계	749,453	1,000	75,066개소 (187,664회)	5.3 (39,853)	15.3
건설업	341,743	730	58,594개소 (146,484회)	4.0 (13,769)	21.2
조선업	7,955	70	4,009개소 (10,023회)	1.6 (130)	52.0
제조업	399,755	200	12,463개소 (31,157회)	6.5 (25,954)	9.6

주: 점검비율 = (공단 점검 사업장수 + 순찰목표)/전체 사업장수)×100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동 사업의 위촉지킴이 채용과 관련하여 운영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 보인다. 위촉지킴이는 기간제지킴이와 달리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단체나 사업주 단체에서의 현직을 유지하면서 지킴이 업무를 겸직하고, 순찰 건당 11만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는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 협력 취지를 감안할 때 위촉지킴이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보인다. 그러나 현직에 있는 자가 겸직을 통해 위촉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건당 11만원의 사례비를 지급받는 것이 산업재해예방 관련 인력이 부족한 영세 고위험 사업장에 인력을 보충하겠다는 동 사업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시간당 14,500원의 임금을 받으며 하루 3개의 사업장을 순찰하는 기간제지킴이와 현직에 있으면서 1건당 11만원의 사례비를 지급받는 위촉지킴이의 대우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27년도 안전한 일터 지킴이 1일 임금 수준 비교]

구분	'27년도	비고
기간제 지킴이	14,500원/시간 (116,000원/일)	2인 1조 수행
위촉 지킴이	110,000원/개소 (1일 최대 2개소, 220,000원/일)	1인 수행

자료: 고용노동부

다음으로, 동 사업의 과거 사례 및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의 평가 내용을 참고해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동 사업은 과거 만 55세 이상 퇴직자를 건설업 및 조선업의 안전보건지킴이로 채용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7]' 사업을 재도입한 것으로, 건설업 및 조선업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제조업까지 그 분야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편성 및 집행 당시에도 제조업의 경우 그 대상으로 추가하였다가 제외한바 있는데[8], 이는 짧은 기간 동안 수시로 작업 공정이 변경되어 불시 방문 효과가 큰 건설업이나 조선업과 달리 제조업은 작업 공정이 일정하여 안전보건지킴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에 대한 2026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는 동 사업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과 연계되어 취약계층(고령근로자) 채용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있는바 산재예방 효과를 분석하는데 보완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동 사업이 인력 채용 및 인건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지킴이의 산재 예방 효과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러한 지적의 취지와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의 업종별 산업재해 예방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있어 안전한 일터 지킴이가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인다.

---

7) 201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시행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동 사업을 종료하였음.

8)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제조업을 대상 분야로 추가하였으나, 2022년에 제조업을 다시 제외하였음

둘째, 소규모 사업장 청년 안전 패트롤 사업이 단순히 청년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사업장 청년 안전 패트롤 사업은 산재예방 사업 지원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 안전지킴이'를 채용하여 산재 취약 사업장에 필요한 기술·재정지원 사업 절차를 안내하고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에 기여하려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7년도 신규사업으로 40억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150명의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다.

[2027년 소규모 사업장 청년 안전 패트롤 사업 개요]

구 분	세부내용
사업목적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활동 지원
사업내용	청년 안전지킴이가 재정지원 사후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분야 모니터링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확산 청년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안전문화의 현장확산을 지원함
주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수수준	월 167만원 수준 (주 30시간 기준, 수행경비 등 별도)
지출계획액	40억 1,2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산업안전 분야에서의 경력 지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사고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년들의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초교육 및 OJT를 완료한 후에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며 전문성을 수반하는 업무 수행시에는 공단 직원과 함께 2인 1조로 움직일 예정이다.

다만 산업안전 분야에 관심이 높은 청년에게 현장에 밀착되어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현장 경력이 부족한 청년 지킴이가 현실적으로 산업안전 분야 모니터링이나 사후기술지도를 수행하고 동 행위가 산업현장에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단 직원과 청년이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나, 공단 직원은 산업현장에 대한 기술지도와 동시에 청년에 대한 현장 교육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상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청년은 관련 업무 전문성의 부족으로 단순 보조 역할 이상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분야 청년들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며 신속한 업무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공단 직원들의 업무가 경감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동 사업의 편성 취지를 감안해 소규모 사업장 청년 패트롤 활동이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계획을 설계하는 등 집행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4 유해작업환경개선: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의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등

가. 현 황

유해작업환경개선[1] 사업은 분진, 화학물질, 소음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유해인자를 보유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개선 및 보건관리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지출계획안은 2026년도 당초 및 수정계획 대비 138억 1,700만원(18.4%) 증가한 888억 4,900만원이다.

[2027년도 유해작업환경개선 지출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유해작업환경개선	75,238	75,032	75,032	88,849	13,817	18.4
취약계층 고위험 환경 개선지원	71,474	71,635	71,635	85,449	13,814	19.3
유해작업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764	3,397	3,397	3,400	3	0.01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내역사업 '취약계층 고위험 환경 개선지원'의 내내역사업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사업은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해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측정 사업장 및 최근 3년간 측정 미실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측정 비용의 100%(100만원 한도), 기존 측정 사업장은 비용의 80%(4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내역사업 '취약계층 고위험 환경 개선지원'의 내내역사업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은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건설일용노동자, 공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2-352

동주택 경비·청소원 등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장 단위로 참여 신청을 하면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용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사업 시행 초기엔 특수건강진단비용 전액을 지원하였으나, 2023년도부터 자부담 비율을 설정하여 업종별·사업장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유해작업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의 평균 검진수가와 예산단가상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바,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여 보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근로자들의 업무상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은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일용직,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등 보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른 사업주의 법정 의무사항으로, 취약사업장임을 고려해 2022년도까진 비용의 100%를 지원하였으나, 법정 의무사항에 100%를 보조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주가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27년도 지출계획안은 지원 인원을 2026년 670,000명 대비 25% 이상 증가한 840,000명으로 확대하였고, 1인당 지원 단가는 46,400원에서 48,797원으로 약 5% 확대하였다.

[2027년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개요]

구 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제137조(건강관리카드)에 의한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지원조건	유해인자(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지원절차	사업장이 참여를 신청하면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며, 공단은 적정성 심사 후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비용을 지급
지원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06조에 따른 검진항목(1차 및 2차)에 대한 비용 지원
편성내용	840,000명 × 48,797원 = 409억 8,948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업종별 자부담 비율]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일용직	공동주택 경비·청소
▸(30인 미만) 0% ▸(30인~50인 미만) 10%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0% ▸(공사금액 50억원~800억원 미만) 30%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40%	▸10%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현재 지출계획상 지원 단가는 건당 46,400원으로 평균 검진수가인 66,880원의 약 69.3%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2023년도부터 동결된 것[2]으로 동일 기간 동안 평균 검진수가가 건당 61,000원에서 66,880원으로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평균 검진수가와 지출계획상 지원 단가가 괴리되어 있음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당초 목표로 한 인원 대비 적은 인원만이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6년도의 경우 8월 기준 집행률이 80.6%에 이르고 있어 비용지원 신청이 곧 종료될 예정이다.

2) 2027년의 경우 48,797원으로 약 5% 단가가 인상되는데 이는 5년만의 인상임

[최근 5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평균 검진수가와 지출계획상 단가 비교]

(단위: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평균 검진수가(A)	65,000	61,000	62,000	64,600	66,880	-
지출계획상 단가(B)	56,650	46,400	46,400	46,400	46,400	48,797
차이(B-A)	△8,350	△14,600	△15,600	△18,200	△20,480	-

자료: 고용노동부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 집행률 및 집행인원/목표인원]

(단위: 백만원, %,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8월
예산	20,691	30,888	31,963	31,965	31,968	31,972
집행액	25,681	30,781	31,873	31,942	31,921	25,784
집행률	124.1	99.7	99.7	99.9	99.9	80.6
목표인원	530,000	530,000	670,000	670,000	670,000	670,000
집행인원	360,003	455,882	514,682	501,560	481,170	450,471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보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데, 평균 검진수가를 반영하지 않는 지출계획상 단가로 인해 매년 지출계획액이 소진되어 비용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인원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지출계획상 단가를 현실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보다 많은 특수건강진단 사업장 근로자들이 비용지원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곳이 아닌 새로운 사업장에서도 작업환경측정을 통하여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작업장에서 작업환경 측정을 받게 집행관리할 필요가 있다.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3]에서 정한 주기(반기별 1회 또는 연 1회)에 맞춰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비

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에는 전년도 계획액 대비 36억 4,700만원(11.3%) 증액된 357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 적용 대상 사업장은 지출 계획액 기준으로 2023년부터 연 88,000개소이며, 실제 지원 사업장 수는 75,000개 내외에 이르고 있는 상황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2027년도에는 대상 사업장의 수를 91,0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도별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사업 편성기준 및 실집행 사업장수]

(단위: 개,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8월
지출계획액 기준 대상 사업장수	74,000	88,000	88,000	88,000	88,000
실제 지원 사업장수	66,807	75,419	75,016	74,651	51,502
지출계획 대비 실제 지원비율	90.3	85.7	85.2	84.8	58.5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2024년 비용지원을 받은 사업장 중 88.8%가 2025년도에도 비용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2023년에 비용지원을 받은 사업장 중 89.2%가 2024년도에도 비용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동 사업으로 비용 지원을 받은 사업장이 연속적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확인된다. 유해인자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매년 측정하여 위험성에 대한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곳이 아닌 새로운 사업장에서도 작업환경측정을 통하여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측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보인다.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연(年)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렇지 않다

[연도별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사업 편성기준 및 실집행 사업장수]

(단위: 개, %)

2024년 비용지원 사업장 수	2024년 비용지원 사업장 중 2025년에도 비용지원을 받은 사업장 현황	
	사업장 수	비율
75,016	66,623	88.8
2023년 비용지원 사업장 수	2023년 비용지원 사업장 중 2024년에도 비용지원을 받은 사업장 현황	
	사업장 수	비율
75,419	67,247	89.2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통한 지원이 특정 사업장 위주로 한정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한정된 예산 속에서 다양한 작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4].

4)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하여 일부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 사업의 성과로 20인 미만 작업환경측정 실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 사업장을 발굴하는 등 측정이 누락되는 사업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15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기업 안전보건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

가. 현 황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1] 사업은 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심사와 이행을 확인하고, 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을 평가하고, ③ 산업안전보건법령 외 사업장의 다양한 상황에서 기술적 요구에 적용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표준을 제·개정하며, ④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컨설팅을 지원하고, ⑤ 협·단체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는 민간 산업재해예방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7년도 계획안은 1,268억 6,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다만 동 사업은 본래 세부사업 '업종별 재해예방[2]'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2026년도 계획액 1,219억 3,500만원), 2027년도 계획안부터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것이다.

[2027년도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	-	-	126,869	126,869	순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지원	-	-	-	105,507	105,507	순증
기업안전보건공시제	-	-	-	390	390	순증
산업·지역 안전관리체계 구축	-	-	-	21,362	21,362	순증
지역중대재해사각지대 해소지원	-	-	-	14,321	14,321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2-356

2)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2-350

나. 분석의견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사업은 공시에 따른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알리오 공시와의 중복 소지를 감안 두 공시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내내역사업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건설업은 연간 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사업주: 및 공공기관 등의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현황,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등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2027년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 공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사업 개요]

구 분	세부내용
사업목적	국민과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 및 공공기관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
대상사업장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용 사업주(건설업은 연간 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사업주: 및 공공기관 , 지방공사·공단 4,000여개소
추진체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업장이 공시함
운영방안	국민 안전과 밀접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등을 대국민 공개
지출계획안	390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공시제 사업 시스템 구축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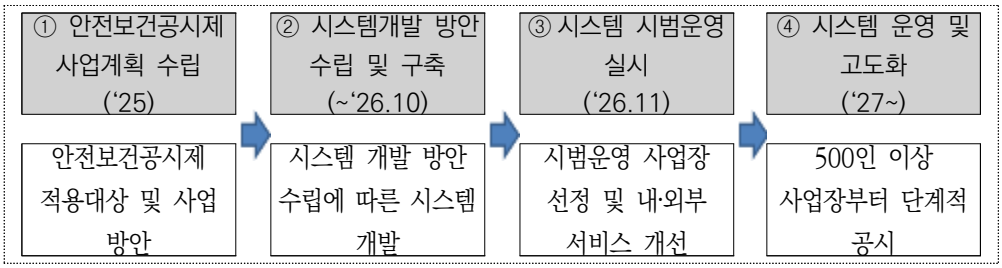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통해 사업주가 안전보건 현황을 스스로 점검하고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노동자 및 국민에게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부터 동 시스템에 따른 기업별 안전보건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3]와 제175조[4]를 개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투자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공시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미공시 기업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미공시만을 제재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오공시나 부실공시에 대한 별도의 제재 수단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바 공시되는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할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 보인다. 현행 업무 체계에서 기업의 오공시나 부실 공시를 동 시스템의 운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실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시를 통해 안전보건활동 수준을 검토·평가한다는 당초 사업 취지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 보인다[5].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통한 공시내용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동 사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재정경제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산업재해에 따른

---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5)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공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시의무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임

사망자 및 사고자 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등 감축 목표·실적, 안전 관리 대상 사업·시설, 안전 예산 및 인력 현황 등을 작성·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을 통해 공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일부 중복될 소지가 있다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안전보건 정보를 동일한 체계 내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작성해야 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재정경제부 외에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공시의무를 부과해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유사한 정책이 두 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업무상 혼선 소지도 있다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통해 새로이 실시되는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와 기존 알리오 시스템에 따른 산업재해 및 안전 활동 관련 공시가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 등의 자료 작성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의 지역별 맞춤형 산재예방 사업 집행 추진의 차별성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가 산업특성, 인력구성, 중대재해 발생 유형과 빈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산재예방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장 특색에 부합하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설계·집행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가 보유한 정보·경험을 산업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개요]

구 분	세부내용
사업목적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산재예방 사업의 기획·운영 지원
참여대상	광역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 주도 컨소시엄(자치단체, 민간재해예방기관, 기업, 노·사단체 등 자율구성)
운영방안	광역자치단체 또는 컨소시엄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고, 공단은 사업 수행에 대해 점검·평가함
지출계획안	143억 2,100만원(개소당 14억원, 국비 100%)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현재 동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 명단 및 컨소시엄별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운영기관 및 사업 내용]

구분	운영기관	사업 내용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30인 미만 고위험 산업군에 대한 장비개선·보급·시설설치 등 보조금 지급, 퇴직 숙련 인력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방문지도, 외국인 노동자 역량강화
대구	대구경영자총협회	소규모 지붕・태양광・아파트 외벽공사·고소작업 건설 현장에 대한 현장기술지도 및 작업계획서 수립, 추락재해 예방 장비 지원, 달서구・달성군 노후 산업단지 3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지원 등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기계·장비 등에 대한 방호장치 및 근로자 보호구 지원 등
광주	광주경영자총협회	20인 미만 고위험 공정 보유 제조업체에 대한 보호구 보급,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및 실무 중심 현장 컨설팅 지원 등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50인 미만 제조업체(조선, 자동차, 화학 분야)에 대한 위험 요인 발굴 및 위험성평가 중심 현장 진단, 기술지도 등
경기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	산단 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업단지 위험성평가 지원 등
충북	한국표준협회	노후 시설을 보유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 사업장에 대한 화재폭발 안전진단 및 개선지도 등
전남	전남경영자총협회	1.5톤 미만 소형 어선 어민에 대한 소형 어선 어민 모바일 웹 기반 동영상 교육 등

구분	운영기관	사업 내용
경북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노후산단·농공단지 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기반 정밀안전진단 실시 지원 등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50인 미만 제조업에 대한 사전의무교육, 컨설팅(사전진단 포함 최대 5회), 환경개선 지원 등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고령근로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찾아가는 기술지도, 근골격계 예방 물품·시설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다만 업무상 사고는 상당 부분 산업 현장에서의 산업안전 기준 의무 미준수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이고, 2026년 지역별 컨소시엄이 수행한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안전진단 컨설팅, 보호 장비 지급 등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수행하고 있는 산재예방사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4151-350)', '업종별 재해예방(4152-350)', '안전보건문화정착(4154-350)'의 내역사업들과 다수 중첩되는 것으로 운영기관만 지방 컨소시엄으로 상이할 뿐 내용상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인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 위험요인이나 위험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안전일터조성지원, 안전동행지원)이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사고성재해 집중관리, 민간기술지도)하는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연간 약 5,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통해 사업을 편성·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 투자의 가능성있으므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산재예방 사업 차별화 및 중복 지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주요 산업재해 예방 사업]

세부사업명	2027 지출계획액	내역사업명	주요 내역사업 내용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1,768억 2,700만원	안전일터조성 지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2,310억원	안전동행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위험공정개선 지원
	498억 2,500만원	건강일터조성 지원	급성중독, 폭염에 따른 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 구매 지원
	400억 8,00만원	화재폭발사고 취약사업장 특화지원	화재 폭발 취약 중소사업장 대상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재정과 기술지원

세부사업명	2027 지출계획액	내역사업명	주요 내역사업 내용
업종별 재해예방	658억 2,700만원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상 기술지도
	512억 7,300만원	민간기술지도	소규모 사업장에 민간재해예방기관이 방문하여 산재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
	26억 2,000만원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화학공장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안전보건 문화정착	196억원	안전보건 교육 및 미디어개발	업종별, 직종별, 대상별 안전보건콘텐츠 제작 보급 외국인노동자 특화 안전교육 지원 건설업 종사자 대상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
	27억 6,100만원	신규 영역 및 취약계층 특화 교육	안전보건교육 컨설팅 외국인 노동자 특화 산재예방 사업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의 유형 및 원인이 유사하더라도 지방정부는 소규모 건설·맨홀공사 인허가, 일반산업단지 지정·조성 등 고유권한과 지역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신속하게 위험현장에 접근·지원할 수 있어, 기존 중앙정부 중심 예방사업 사각지대 보완에 강점이 있다고 보이는바 사업의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사업계획에 대한 공모·심사를 통해 노동부·안전공단 지원사업, 지방정부의 기존 산재예방 사업과 유사·중복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사업 수행과정에서도 기존 노동부·안전공단 산재예방 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사업장을 우선 발굴·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동 사업의 긍정적인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기존 산업재해 예방사업과 차별화 및 사업 시행주체들의 전문성이나 이행 가능성 등이 아직 충분히 담보된 상황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모 단계에서 기존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지역 특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점검·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6 대지급금 지급: 최우선변제권 초과 범위 변제금에 대한 회수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대지급금 지급[1]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체불근로자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7년 지출 계획안은 2026년 당초 및 수정 계획 대비 305억 1,300만원(4.1%) 증액된 7,765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대지급금 지급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대지급금 지급	688,519	746,068	746,068	776,581	30,513	4.1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대지급금은 ① 법원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기업의 파산 또는 도산을 인정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과 ②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확인서를 받아 청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된다. 본래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만 지급되었으나 2026년 8월 20일부터 최종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2].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임금채권보장기금 3051-300

2)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21376호, 2026.2.19. 일부개정, 2026.8.20. 시행)

[대지급금 제도 개요]

구 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및 한도
도산 대지급금		[사업주] ①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②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 ③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 [근로자]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파산·회생·도산인정 신청일 등	[지원내용] ① 최종 6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지원한도] 최대 3,150만원 (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간이 대지 급금	퇴직자	[사업주] ①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③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등 확인 [근로자]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또는 (체불확인서) 1년 이내 진정 제기	[지원내용] ①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지원한도]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	[사업주] ①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②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③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등 확인 [근로자] ①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일용근로자 제외) ②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③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확인서의 경우) 제기	[지원내용]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지원한도] 7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액 및 대지급금 지급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7.
임금체불액(A)	1,583,014	1,350,452	1,347,209	1,784,530	2,044,848	2,067,896	1,081,428
대지급금 지급액(B)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4,207	684,511	367,089
도산 대지급금	109,975 (19.0)	79,360 (14.5)	36,576 (6.8)	39,635 (5.8)	54,828 (7.6)	69,274 (10.1)	38,829 (10.6)
간이 대지급금	469,715 (81.0)	467,210 (85.5)	500,288 (93.2)	647,271 (94.2)	669,379 (92.4)	615,237 (89.9)	328,260 (89.4)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대지급금 지급액 중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액 비중임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최근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와 불일치하게 되었는데 이는 대지급금 회수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향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변제금에 대한 회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38조[3]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에 대해 사업주의 총 재산에 대하여 최우선 순위로 변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

3)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는 「근로기준법」 제38조와 유사하게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되도록 하고 있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임금채권보장법」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시 지급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또한 동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위할 수 있는 권리에는「근로기준법」제38조상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이 포함되어 있다[5].

기존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여 대지급금 지급의 범위와「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의 범위가 일치하였으나,「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으로 동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2026.8.20.)됨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범위와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의 범위가 불일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6개월분의 대지급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이 3개월분에 불과한바, 대지급금 회수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실제로 대지급금 회수율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여러 노력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그 회수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보인다. 그리고 회수율의 악화는 장기적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체불임금 관련 회수율]

(단위: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7.
대지급금 회수율	32.2	31.9	30.9	30.0	29.7	29.9
도산대지급금 회수율	39.8	40.7	41.1	41.2	41.3	41.3
간이대지급금 회수율	14.6	16.0	16.4	17.0	18.1	19.1

자료: 고용노동부

5)「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② 「근로기준법」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7.
수입(A)	515,629	523,876	565,385	617,255	663,021	736,848	542,980
지출(B)	640,374	627,414	600,342	792,305	836,242	807,518	485,614
사업비 지출	627,195	613,715	584,138	773,028	818,023	789,845	475,106
대지급금 지급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4,207	684,511	367,089
수지차(A-B)	△124,745	△103,538	△34,957	△175,050	△173,221	△70,670	57,366
적립금	834,032	730,494	695,537	520,487	347,266	276,596	333,962
여유자금	629,067	626,307	590,558	416,886	292,690	270,746	327,566
공자기금 예탁금	2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	0	0
한국은행 예치금	4,965	4,188	4,980	3,601	4,576	5,850	6,39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임금, 퇴직급여 등의 최우선변제권 범위 확대는 담보권자의 예측 가능성 및 재산권 축소 등 민법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중장기적 신중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한 대지급금 지급액은 채권 우선순위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나, 도산대지급금 지급 사업장 특성상 사실상도산 인정 절차 또는 법원의 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 중에 재산조사 등 절차를 거침에 따라, 그 과정에서 확인된 재산에 대해 국세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신속한 집행으로 채권확보가 용이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6].

다만 고용노동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 규모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초과하는 지급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변제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6) 고용노동부는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하고, 올해 5.12.부터는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적용한 신속한 변제금 회수 추진 등 회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임.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업종 특성별 책임재산 발굴 강화(PG사, 카드매출채권, 진료비 채권 등), 채권 특성별(단기/고액/정상가동 사업장) 집중관리, 체불사업주 숨은 재산 찾기 등 회수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임.

* '26.5.29. 사업주 2,057명(미변제금 3,868억원)에 대해 첫 신용제재 실시

** '26.8월말부터 압류, 강제집행 등 국세체납처분절차 본격 가동

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총괄):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에 따른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마련 필요 등

가. 현 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68조[1]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동 기금의 주요 재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다. 2027년 동 기금의 지출계획안은 2026년 당초 및 수정계획 대비 1,810억 1,000만원(7.2%) 증가한 2조 6,930억 6,400만원이다.

[2027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주요 단위사업 지출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장애인고용지원	709,783	755,123	755,123	811,983	56,860	7.5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72,649	80,193	80,193	86,170	5,977	7.5
장애인직업능력제고	65,131	75,019	75,019	76,719	1,700	2.3
장애인고용연구 및 인식개선	8,582	8,545	8,545	7,455	△1,090	△12.8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977	1,232	1,232	1,354	122	9.9
장애인고용정보화	4,153	4,530	4,530	3,851	△679	△15.0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① 고용장려금, ②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지원, ③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기기 등의 융자·지원 등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직업재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활을 지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2)]

동 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3)]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의무고용률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상시 100인 미만은 제외)하며,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용부담금 부과를 위해 장애인 고용인원 및 고용률을 산정할 때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2배수제를 적용하며, 고용장려금 지급 시에는 중·경증 여부 및 성별에 따라 단가 차이가 있다.

---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 공단에의 출연
2.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지원
5.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기기 등의 융자·지원
6.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융자·지원
7. 직업지도,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융자·지원
8.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행하는 자 및 그 장애인에 대한 훈련비·훈련수당
9. 자영업 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생활 안정 자금 등의 융자
10.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관리를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
11. 제70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12. 이 법에 따라 장애인과 사업주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13. 제32조에 따른 포상금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2026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및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table>
<tr><th>구분</th><th>고용부담금</th><th>고용장려금</th></tr>
<tr><td>대상</td><td>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전체)</td><td>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공공기관, 민간기관만 해당)</td></tr>
<tr><td>산정 방식</td><td>부담금 총액(연간 합계액) =
(의무 고용인원 - 장애인 고용인원) ×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
<table>
<tr><th>산정기준</th><th>1인당 부담금(월)</th></tr>
<tr><td>의무고용인원 3/4 이상</td><td>1,295,000원</td></tr>
<tr><td>의무고용인원 1/2~3/4</td><td>1,372,700원
(6% 가산)</td></tr>
<tr><td>의무고용인원 1/4~1/2</td><td>1,554,000원
(20% 가산)</td></tr>
<tr><td>의무고용인원 1/4 미달</td><td>1,813,000원
(40% 가산)</td></tr>
<tr><td>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td><td>2,156,880원
(해당연도 최저임금)</td></tr>
</table></td><td>월별로 의무고용률 초과 시 지급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table>
<tr><th>구분</th><th>월 지급단가</th><th>비고</th></tr>
<tr><td>경증남성</td><td>35만원</td><td rowspan="4">월임금의 60%와 단가 중 낮은 금액 지급</td></tr>
<tr><td>경증여성</td><td>50만원</td></tr>
<tr><td>중증남성</td><td>70만원</td></tr>
<tr><td>중증여성</td><td>90만원</td></tr>
</table></td></tr>
</table>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991년 도입 당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모두 2.0%였으나,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2027년 기준 정부 3.8%, 공공기관 3.8%, 민간기관 3.3%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 밝혔으며, 이에 따라 민간의 경우 2026년 3.1%에서 2027년 3.3%, 2029년 3.5%로 의무고용률이 상향, 공공의 경우 2026년 3.8%에서 2029년 4.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변동 현황]

(단위: %)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91~'08</th><th>'09</th><th>'10~'11</th><th>'12~'13</th><th>'14~'16</th><th>'17~'18</th><th>'19-'21</th><th>'22-'23</th><th>'24~'26</th><th>'27~'28</th><th>'29</th></tr>
<tr><td rowspan="2">국가·
지자체</td><td>공무원</td><td>2.0</td><td colspan="4"></td><td>3.0</td><td>3.2</td><td rowspan="2">3.4</td><td rowspan="2">3.6</td><td colspan="2" rowspan="2">3.8</td><td rowspan="2">4.0</td></tr>
<tr><td>근로자</td><td colspan="2">-</td><td>2.3</td><td>2.5</td><td>2.7</td><td>2.9</td></tr>
<tr><td rowspan="3">공공
기관</td><td>공기업
준정부기관</td><td rowspan="3" colspan="2">2.0</td><td>3.0</td><td>3.0</td><td rowspan="2">3.0</td><td rowspan="2">3.2</td><td rowspan="2">3.4</td><td rowspan="2">3.6</td><td colspan="2" rowspan="2">3.8</td><td rowspan="2">4.0</td></tr>
<tr><td>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td><td rowspan="2">2.3</td><td rowspan="2">2.5</td></tr>
<tr><td colspan="2">민간기업</td><td>2.7</td><td>2.9</td><td>3.1</td><td>3.1</td><td>3.1</td><td>3.3</td><td>3.5</td></tr>
</table>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첫째,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상향 조정으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독려하여 부담금 납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부담금인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증가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 부담금은 준조세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부담금 체계가 원활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납부하는 민간기업이 동 제도에 대해 높은 수용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률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2025년 정부부문(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85%에 불과하여 법정 의무고용률인 3.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비중이 낮은 편인데, 2025년 기준 중증장애인 고용 비중은 정부부문(공무원) 18.4%, 정부부문(비공무원) 45.2%, 공공기관 23.2%, 민간기업 40.9% 수준으로 정부부문(공무원)과 공공기관이 민간기관 대비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감안할 때, 경증장애인보다 경제활동의 기회가 적은 중증장애인의 채용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 분			사업체수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률
정부부문	공무원	헌법기관	4	25,305	723	2.86
		중앙행정기관	56	208,276	7,342	3.53
		지방자치단체	243	317,238	11,538	3.64
		교육청	17	418,976	8,018	1.91
		소계	320	969,795	27,621	2.85
	비공무원	헌법기관	4	3,055	98	3.21
		중앙행정기관	43	76,019	2,260	2.97
		지방자치단체	243	161,047	16,385	10.17
		교육청	17	192,193	7,601	3.95
		소계	307	432,314	26,344	6.09

주: 장애인 고용인원 및 장애인 고용률은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함
자료: 고용노동부

[부문별 경증·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정부 부문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무원		비공무원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2024	19,202 (82.0)	4,220 (18.0)	11,258 (56.7)	8,584 (43.3)	15,074 (78.9)	4,028 (21.1)	99,855 (60.8)	64,255 (39.2)
2025	19,021 (81.6)	4,300 (18.4)	10,956 (54.8)	9,033 (45.2)	15,203 (76.8)	4,586 (23.2)	100,129 (59.1)	69,414 (40.9)

주: 괄호 안은 전체 고용장애인 중 경증·중증장애인의 비중이며, 각 연도말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민간 부문의 경우 코로나 이후 동결된 의무고용률을 실제 고용 상황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고, 공공 부문의 경우 민간 부문 대비 장애인 고용 상승폭이 적어 정책 동력 유지를 위해 법정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의무고용 이행을 위해 심층 고용컨설팅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 민간기업의 규모별 장애인 고용현황을 확인하면 24.6%의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규모를 고려할 때 장애인 의

무고용률의 상향 조정으로 인한 부담 증가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4].

[2025년 민간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개소, %)

구분	100인 미만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대기업집단
대상기관 수	17,282	10,726	1,860	1,254	897	970
의무이행 기관 수	5,482 (31.7)	6,153 (57.4)	935 (50.3)	565 (45.1)	358 (39.9)	340 (35.1)
고용률	2.13	3.46	3.47	3.51	3.06	2.56

주1) 괄호 안은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관 중 의무이행기관 비중을 의미함
2) 장애인 고용률은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함
자료: 고용노동부

둘째, 동 기금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되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고용부담금 수입 증가로 기금의 수입·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성과지표인 장애인 고용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고 있으며[5], 동 기금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비 지출 등에 사용되어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동 기금의 연도별 수입·지출 추이를 확인하면 수입과 지출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27년 예산안에 따른 수입·지출 규모는 약 2조 6,930억원이며 이 중 사업비 지출 규모는 약 9,875억원 수준이다.

---

4) 현실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공공부문에 장애인 고용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예를 들어 각 부처가 장애인 고용수준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부족 인원만큼을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일반회계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재원이 이동하게 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임.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연도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지출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입		지출(A)				
				사업비(B)		운영비	내부지출·여유자금 운용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2016	748,269	434,718	748,269	226,816	158,155	52,910	468,542
2017	833,901	453,236	833,901	256,319	164,095	52,960	524,622
2018	1,250,994	552,121	1,250,994	302,831	189,513	58,883	889,280
2019	1,182,164	619,090	1,182,164	420,378	210,560	64,519	697,267
2020	1,313,484	755,756	1,313,484	519,138	229,655	72,003	722,343
2021	1,717,843	767,611	1,717,843	610,819	252,191	75,029	1,031,995
2022	1,925,696	763,688	1,925,696	693,356	269,790	78,838	1,153,501
2023	2,095,985	829,580	2,095,985	784,648	324,272	81,305	1,230,032
2024	2,304,378	895,365	2,304,378	851,734	353,371	84,063	1,368,581
2025	2,366,359	886,222	2,366,359	861,274	377,377	85,929	1,419,155
2026	2,512,054	1,012,286	2,512,054	924,642	403,220	89,063	1,498,349
2027	2,693,064	1,075,636	2,693,064	987,532	381,438	93,335	1,612,197

주: 2016~2025년은 결산, 2026,2027년은 계획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이와 같은 지출에도 불구 동 기금의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출은 1조 7,179억원에서 2조 3,664억원으로 연평균 7.1%씩 증가했으나 동기간 장애인 고용률은 49.0%에서 48.3%로 오히려 악화되었다.

[최근 10년간 15~64세 장애인 고용률]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50.2	49.2	49.0	50.0	48.0	49.0	50.3	49.8	48.4	48.3

주: 각 연도 5월 기준으로 조사된 현황임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 고용률은 단순히 장애인 고용사업비 지출이 증가한다고 하여 개선된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 상황과 같은 다른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나, 시계열을 넓혀 10년 단위로 확인하더라도 2016년부터 2025년까

지 장애인 고용률은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반면 동 기간 장애인 고용사업에 지출된 비용은 약 6조 4,52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지적을 감안할 때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사업의 효과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바, 고용노동부는 사업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8 장애인취업지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및 장애인 인턴제 사업의 고용유지율 제고 노력 필요

가. 현 황

장애인취업지원[1] 사업은 장애인의 취업 기회 확대 및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부문 및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장애인 개별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위한 현장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 지출 계획안은 2026년 당초 및 수정 계획 대비 55억 7,100만원(15.1%) 감액된 312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2] 사업은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려는 사업으로, 2027년 지출 계획안은 2026년 당초 및 수정 계획 대비 69억 9,800만원(25.5%) 증액된 344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다.

장애인취업지원 사업의 지출계획액이 줄고,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의 지출계획액이 증가한 것은 내역사업 '장애인인턴제' 사업이 장애인취업지원 사업에서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2027년도 장애인취업지원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장애인취업지원	33,411	36,849	36,849	31,278	△5,571	△15.1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2-311

2)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2-315

[2027년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26,452	27,480	27,480	34,478	6,998	25.5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및 장애인 인턴제 사업의 고용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은 발달장애·정신장애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지도원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습득과 직장적응을 지도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6일 이내의 사전훈련 및 3~7주의 현장훈련을 거쳐 해당 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면서 훈련생과 사업주, 직무지도원에게 각각 수당을 지원하고, 취업 후 적응지도가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직무지도원을 배치한다.

장애인 인턴제는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3]의 중증장애인과 만 50세 이상의 장년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 및 직장적응력 향상을 도모하고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턴기간 동안 월 임금의 80%(월 105만원 한도, 최대 6개월)를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월 85만원의 정규직 전환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최근 사업 집행 내역을 확인해보면, 목표인원 대비 참여인원이 많아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이 확인되며, 취업률과 정규직 전환율도 60%대와 80%대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사업성과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 있는 지체장애(총 8개 유형)

[연도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실적]

(단위: 명, %)

구분	참여 사업장	목표 인원	참여 인원	수료(A)	취업(B)	취업률 (B/A)	고용유지율	
							6개월	1년
2020	1,453	5,000	6,034	5,350	3,706	69.3	57.0	42.0
2021	1,633	6,000	6,939	6,250	3,976	63.6	60.5	45.1
2022	1,679	6,000	7,069	6,406	4,026	62.8	61.8	46.1
2023	1,690	6,000	7,180	6,598	4,270	64.7	62.6	45.6
2024	1,687	6,000	7,248	6,707	4,307	64.2	62.5	44.2
2025	1,608	6,000	6,956	6,518	4,073	62.5	61.2	28.8
2026.8.	1,178	6,000	4,119	3,894	2,725	70.0	8.2	-

주: '25년 및 '26년 취업자의 고용유지율(6개월, 1년)은 유지기간 미도래 사례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기간 충족에 따라 최종 집계 가능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도별 장애인 인턴제 사업 실적]

(단위: 명, %)

구분	목표인원	참여인원	수료(A)	정규직 전환자 (B)	정규직 전환률 (B/A)	고용유지율	
						6개월	1년
2020	400	599	477	408	85.5	77.7	59.6
2021	600	655	523	465	88.9	72.9	59.8
2022	600	925	713	622	87.2	69.3	50.6
2023	700	1,216	846	749	88.5	63.6	48.6
2024	1,000	1,633	1,161	993	85.5	63.0	47.6
2025	1,000	1,497	1,160	964	83.1	64.6	32.1
2026.8.	1,000	871	661	553	83.7	21.8	-

주: '25년 및 '26년 취업자의 고용유지율(6개월, 1년)은 유지기간 미도래 사례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기간 충족에 따라 최종 집계 가능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만, 중증장애인들이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취업률과 정규직 전환률 제고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고용유지가 중요한데,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의 경우 1년 고용유지율이 50% 미만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장애인 인턴제 사업의 경우 1년 고용유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및 장애인 인턴제 사업의 고용유지율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고용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 인턴제의 경우 정규직 전환 6개월간 정규직 전환금을 지원함에 따라 6개월 경과 후 고용유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금 지원 시 일정 기간 고용유지 조건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현 황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사업[1]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 지출 계획안은 2026년 당초 및 수정 계획 대비 51억 5,500만원(8.6%) 증액된 653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52,856	60,243	60,243	65,398	5,155	8.6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업장을 의미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②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30% 이상, 그 중 중증장애인을 전체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일정 인원[2] 이상을 고용하며, ③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④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 전체 889개의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2만 390명 중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16,126명(79.1%)으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3-304

2)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 + 5명, 300명 이상 5% + 20명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6월
표준사업장	622	622	694	797	873	889
장애인 근로자	12,656	14,407	16,093	18,115	19,639	20,390
중증장애인 근로자	10,035 (79.3)	11,470 (79.6)	12,930 (80.3)	14,474 (79.9)	15,645 (79.7)	16,126 (79.1)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표준사업장 설립 시 작업·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비용 등 총 투자금액의 75%까지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받은 사업주는 지원금 4천만원당 장애인 1명의 신규고용 및 7년간 고용유지 의무가 있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공공기관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연계고용제도에 따라 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 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의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 밖에 표준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인증 후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그 다음 5년간 30% 감면받을 수 있다.

나. 분석의견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지출계획안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11억 8,300만원에서 48억 3,800만원으로 36억 5,500만원(309.0%)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이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성을 높여 사업주가 사업장 인증을 자진 취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보인다[3].

3) 최근 5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은 649개의 사업장 중 1/3 가량(233개)이 인증이 취소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인증취소 사유별 현황을 확인하면 자진반납 형태의 취소가 2024년 전체 40건 중 24건, 2025년 전체 65건 중 50건, 2026년 전체 27건 중 17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별도의 판로 확보 사업에 편성 및 집행에 앞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목표 달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수단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매년 실적 공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도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2021년 0.92%에서 2025년 1.47%로,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공공부문이 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4]의 노력에 따라 우선구매 실적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실적]

(단위: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계획)
0.91	1.01	1.19	1.25	1.47	1.18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기관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이 2025년 기준 전체 857개 중 230개(26.8%)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은 전체 58개 중 34개 기관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 미달성률이 5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판매지원시스템 개설, 표준사업장 맞춤 마케팅 컨설팅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등의 확대도 표준사업장의 수익성 개선 및 자립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우선구매 비율 준수는 법정 사항이라는 점에서 시급성이 더 크다 보인다.

[2025년 기관유형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실적]

(단위: 개, %)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특별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합계
전체(A)	58	243	17	6	31	57	243	166	36	857
미달성(B)	34	30	2	4	3	5	68	66	18	230
미달성 비율(B/A)	58.6	12.3	11.8	66.7	9.7	8.8	28.0	39.8	50	26.8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구매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5) 상대적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의 준수율이 높은 것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실적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상청

Ⅰ 예산안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기상청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기상청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27억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8억 원(16.0%) 증가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 기상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0,032	10,984	10,984	12,738	1,754	16.0
합 계	10,032	10,984	10,984	12,738	1,754	16.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상청

기상청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은 6,161억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671억 원(12.2%)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016억 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45억 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기상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60,840	547,624	547,624	601,550	53,926	9.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042	1,363	1,363	14,510	13,147	964.6
합 계	461,882	548,987	548,987	616,060	67,073	12.2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상청

한편, 기상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7년도 기상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세입은 전년 대비 약 18억원이 증가한 127억원으로 주요 원인은 입장료수입, 면허료수수료 수입 증가에 기인한다. 세출은 전년 대비 약 671억 증가한 6,161억원으로 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에 66억원, '기후재난 대응 기후변화 감시·전망·영향진단 통합 기술개발'에 3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② 주요 증액으로 '기상용슈퍼컴운영'(2026년 204억원→2027년 324억원),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개발'(2026년 1,111억→2027년 1,469억원),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2026년 14억→2027년 145억원)'이 있다.

2027년도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상산업활성화 사업 중 기상감정사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기상감정사 자격 취득 인원이 저조하고 기상감정 산업 활성화도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기상청은 차년도 예산 집행 시에 기상감정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정책 지원 방안,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상감정사 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상용슈퍼컴운영 사업은 서버용 D램 등 주요부품 가격 급등, 고환율 등으로 유찰이 반복되면서 6호기 도입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기상청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R&D)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기업 간 기술이전이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으므로 기술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기상탑재체 납품 계약이 지연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최종 목표인 천리안위성 5호 발사에 차질을 유발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기상청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8개 사업(일반회계 8개) 764억 원 규모이다.

①‘국가기상레이더 운영’ 사업은 기상·강우레이더의 통합 운영으로 예·특보 생산에 필요한 고품질 레이더 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한 것이고, ②‘기후위기 대응 혁신기술 개발(R&D)’ 사업은 인공지능, 미래기후변화, 인공강우 분야 등 미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상·기후 혁신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③‘기상·기후 기반기술 고도화(R&D)’는 기상관측-예보-기후감시-예측 전 과정의 유기적 연계·통합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함이며, ④‘국가수치모델 첨단화 및 다분야 확산 기술 개발(R&D)’은 국가재난 대응력 강화 및 정량적 예측을 기반으로 다분야의 정교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AI융합·다분야 활용 수치모델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⑤‘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Ⅲ)(R&D)’ 사업은 한반도 지하의 잠재적 지진 발생 위험요소를 반영, 정량적 지진 위험성 평가를 위한 3차원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이고, ⑥‘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RISE) 기술개발(기상청)(R&D)’ 사업은 UAM 교통운용·인증체계에 필요한 UAM 버티포트 및 회랑 기상실황·예측정보 생산기술 고도화·실증,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함이다. ⑦‘과학기술xAI지구과학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R&D)’은 다차원 스케일을 통합하여 물리적 일관성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과학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이며, ⑧‘기후재난 대응 기후변화 감시·전망·영향진단 통합 기술개발(R&D)’ 사업은 기후변화 감시-진단-전망 기술 고도화와 기후 영향정보 생산·활용을 통해 기후 안전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기상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8개)	국가기상레이더 운영	20,198
	기후위기 대응 혁신기술 개발(R&D)	20,930
	기상·기후 기반기술 고도화(R&D)	11,429
	국가수치모델 첨단화 및 다분야 확산 기술 개발(R&D)	11,327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Ⅲ)(R&D)	1,960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RISE) 기술개발(기상청)(R&D)	6,598
	과학기술xAI지구과학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R&D)	1,000
	기후재난 대응 기후변화 감시·전망·영향진단 통합 기술개발(R&D)	3,000
합 계		76,442

자료: 기상청

2027년도 주요 증액 사업은 '기상용슈퍼컴운영(정보화)',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등이 있다.

①'기상용슈퍼컴운영(정보화)' 사업은 슈퍼컴퓨터 주요 부품의 가격 급등에 따른 6호기 구축비가 증액되었고, ②'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 사업은 위성개발 3차년도에 시행되는 상세 설계와 부품구매 계약 등 위성개발 사업비 집행이 집중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 ③'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은 국가기상센터의 공사 1차년도 추진을 위해 전년보다 13,14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다.

[기상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1]		2027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2개)	기상용슈퍼컴운영(정보화)	20,421	20,421	32,430	12,009	58.8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	111,058	111,058	146,945	35,887	32.3
혁신도시 건설 특별회계 (1개)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1,363	1,363	14,510	13,147	964.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기상청

II 주요 사업 분석

1 기상산업활성화: 기상감정사 자격제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가. 현 황

기상산업활성화 사업[1]은 기상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기상산업분야 정책적·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상산업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14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상산업활성화	14,394	14,207	14,207	14,319	112	0.8
기상산업인프라강화	1,727	1,517	1,517	1,800	283	18.7
기상정보 활용촉진 지원	2,092	2,097	2,097	600	△1,497	△71.4
기상기업지원	1,841	1,388	1,388	-	△1,388	순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8,734	9,205	9,205	11,919	2,714	29.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상청

내역사업 '기상산업인프라강화'는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분석 및 정보 수집을 진행하고, 기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면허 취득 교육 및 보수 교육,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431-301

나. 분석의견

기상청은 기상감정사 면허 취득자가 매년 10명 이하에 불과하는 등 저조한바, 기상감정사 자격제도 및 기상감정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상산업진흥법」은 기상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을 기상감정사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상감정사 제도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2]. 기상감정사는 기상감정업체에 소속되어 소송 과정에서 풍속 및 일조량과 같은 기상 상황이 사건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들의 감정 결과는 보험금 지급이나 민사, 형사소송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간 동 자격의 취득자수를 확인해보면 매년 10명 이하에 불과하고 제도를 운영한 기간동안 동 자격을 취득한 인원이 64명에 불과하는 등 기상감정사 자격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기상감정사 취득 인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8월	총 인원 (2014 ~ 2026년)
5명	9명	4명	0명	9명	6명	64명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기상감정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저조하여 기상감정사 취득이 저조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격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기상감정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법원, 검찰청, 보험업계 등 기상감정업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관·법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기상감정사"란 기상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18조(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연도별 기상감정사 자격제도 홍보 내용]

년도	홍보 내용
2023년	- 카드뉴스 홍보 (2023. 9.) - 박람회 패널 홍보 (2023. 9.) - 영상제작 및 홍보 (2023. 11.)
2024년	- 관련 기관에 우편 등을 통한 기상감정 제도 안내 (2024. 4.) - 카드뉴스 홍보 (2024. 6.) - 기상감정 홍보 페이지 개편 (2024. 6. ~ 7.) - 리플릿 제작 및 배포 (2024. 9.) 기상감정 퀴즈 이벤트 및 카드뉴스 홍보 (2024. 11.)
2025년	- 법원, 검찰청 등 관련 기관 등 기상감정 제도 안내(2025. 4.) - 박람회 연계 기상감정 제도 소개(2025. 8.) - 한국기상학회 홍보부스 운영(2025. 11.) - 기상 관련 학과(8개 학교)에 홍보 포스터 배부(2025. 12.) - 보험업계 대상(3개기관) 찾아가는 설명회(2025. 12.) - 카드뉴스 홍보(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2025. 12.)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의회 매거진 기상감정 소개자료 게재(2025.12.)
2026년	- 손해보험협회, 보험사와 기상청-손해보험협회 협의체 운영 및 보도자료 배포 (2026. 2~) -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한 기상산업과 보험산업 간 상생협력방안 포럼 개최 (2026. 6.) - 기상감정기사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기상감정 초급교육 확대((2025) 1회 → (2026) 2회)

자료: 기상청

다만 기상감정사를 수요로 하는 기상감정업체가 2026년 현재 기준 3곳에 불과하고 기상감정 업무 수는 1건에 불과하는 등 기상감정 산업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도별 기상감정 업체 및 업무 건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업체 수	5개	6개	6개	5개	3개	3개
기상감정 업무 수	2건	1건	2건	4건	1건	1건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차년도 예산 집행 시에 기상감정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한 정책 지원 방안,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상감정사 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기상용슈퍼컴운영: 계약 지연에 따른 불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

가. 현 황

기상용슈퍼컴운영[1] 사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상예보 생산과 국가 기후변화 대응 및 과학적 정보생산을 위한 필수 자원인 국가기상컴퓨터를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대비 120억 900만원(58.8%) 증액된 324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기상용슈퍼컴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상용슈퍼컴운영	23,210	20,421	20,421	32,430	12,009	58.8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상청

기상용 슈퍼컴퓨터는 대국민 기상정보 및 국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과학적 정보를 생산하는 필수적인 전산 인프라이다. 우리나라의 기상용 슈퍼컴퓨터는 2000년에 1호기가 처음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슈퍼컴 5호기가 운영중인 상황이다.

슈퍼컴퓨터는 기상청 일기예보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예보모델의 성능과 관측자료 활용성을 강화하여 위험기상 정보(해일, 태풍 등)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기후예측 및 기후변화시나리오 산출을 통한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제, 산업, 재난, 보건, 에너지 등 국가정책 결정에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산출하고, 기상 정보를 활용하는 외부기관에 이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기상청 일반회계 1239-502

[기상용 슈퍼컴퓨터 개념도]

자료: 기상청

[기상용 슈퍼컴퓨터 활용현황]

자료: 기상청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국가 정책지원을 위한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운영, 차세대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슈퍼컴퓨터의 전산자원 요구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새로운 슈퍼컴퓨터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24년 8월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계획이 수립되었고, 2025년부터 슈퍼컴퓨터 구축을 위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28년 6월까지 6호기의 구축완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역대 슈퍼컴퓨터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대 슈퍼컴퓨터 도입현황]

구분	도입시기	이론 성능
1호기(NEC SX-5)	2000	224기가플롭스
2호기(Cray X1E)	2005	18.5테라플롭스
3호기(Cray XE6)	2010	758테라플롭스
4호기(Cray XC40)	2015	5.8페타플롭스
5호기(Lenovo SD650)	2021	51페타플롭스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서버용 D램 등 주요부품 가격 급등, 고환율 등으로 유찰이 반복되면서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을 위한 총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예산이 불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2024년 8월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2025년 12월부터 슈퍼컴퓨터 초기분 리스료를 지급해 2030년까지 임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9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2025년 기준 슈퍼컴퓨터 6호기 총리스료 중장기 연도별 집행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6호기 리스료	45.9	183.6	183.6	183.6	183.6	137.7	918.0

자료: 기상청

그런데 기상청은 2025년 중 슈퍼컴퓨터 6호기의 도입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슈퍼컴퓨터 6호기 설치 일정을 순연하였고, 이에 따라 2026년에 초기분 임차를 목표로 슈퍼컴퓨터 6호기 초기분 도입 임차료 예산으로 19억 7,700만원이 편성하였다. 또한 2026년 4월 기획예산처와의 중기재정심의(2026~2030년)를 거쳐,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총사업비를 1,858억 3,000만원으로 기존 대비 940억 3,000만원(102.4%) 증액하였다.

[2026년 중기재정심의 기준 슈퍼컴퓨터 6호기 총리스료 중장기 연도별 집행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초기분(A)	19.8	50.5	67.4	67.4	67.4	67.4	-	339.9
최종분(B)	-	-	277.2	369.5	369.5	369.5	89.5	1,475.2
관·부가세(C)	-	16.2	27	-	-	-	-	33.2
합계 (A+B+C)	19.8	66.7	371.6	436.9	436.9	436.9	89.5	1,858.3

자료: 기상청

그러나 2026년 7월에 다시 입찰공고가 유찰되어 2026년 임차료 예산으로 편성된 19억 8,000만원은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2025년 1월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계획을 수립한 이후 3월에 기술규격 등을 배포하였으며, 5월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완료한 이후 8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총 6번의 계약 공고가 모두 유찰되고 있는 상황이다.

[슈퍼컴퓨터 6호기 계약 공고 현황]

공고명	공고일	개찰일	현황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6호기 구축) 조달계약	2025.8.20.	2025.9.17.	공고취소(무응찰)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6호기 구축) 조달계약	2025.9.18.	2025.10.14.	유찰(무응찰)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6호기 구축) 조달계약	2025.10.15.	2025.11.04.	유찰(무응찰)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6호기 구축) 조달계약	2025.12.18.	2026.1.13.	유찰(무응찰)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6호기 구축) 조달계약	2026.1.14.	2026.1.27.	유찰(무응찰)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 (6호기 구축) 조달계약	2026.6.16.	2026.7.9	공고취소(무응찰)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동 입찰 관련 유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주요부품 가격의 상승과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주요 벤더사들이 응찰하지 않은 것을 그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슈퍼컴퓨터 6호기 교체 관련 주요 사업추진경과]

일 자	사업 내용
’24. 08. 12.	6호기 구축 계획 수립
’25. 01. 06.	6호기 구축 계획 변경 수립
’25. 03. 31.	기술규격 및 BMT 사전 배포(총 3차/’24. 10. 16., ’25. 2. 21.)
’25. 05. 22.	법률자문 및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완료
’25. 06. 19.	일상감사 완료
’25. 06. 24.	6호기 조달 발주 계획 보고
’25. 06. 25.	6호기 조달계약 요청
’25. 07. 29.	외자구매 입찰공고
’25. 08. 20.	외자구매 입찰정정공고
’25. 09. 17.	외자구매 입찰공고 취소
’25. 09. 18.	외자구매 입찰공고
’25. 10. 01.	제안시스템 개별 추정 성능정보 접수
’25. 10. 14.	입찰 마감(1차 유찰)
’25. 10. 15.	외자구매 입찰 재공고
’25. 11. 04.	입찰 마감(2차 유찰)
’25. 11. 28.	제안요청서 변경
’25. 12. 18.	외자구매 입찰 공고
’26. 01. 13.	입찰 마감(3차 유찰)
’26. 01. 14.	외자구매 입찰 재공고
’26. 01. 27.	입찰 마감(4차 유찰)
’26. 1~4월	6호기 도입 예산 현실화(’26~’30년 중기재정 반영)
’26. 05. 21.	6호기 조달계약 요청
’26. 06. 16.	외자구매 입찰공고
’26. 07. 09.	외자구매 입찰공고 취소(무응찰)
’26. 7~8월	6호기 도입 예산 현실화(’27년 정부 예산안 반영)
’26. 9월(현재)	6호기 조달 발주 추진 중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2027년 예산안에서 다시 슈퍼컴퓨터 6호기 예산을 크게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2026년 기준 산출된 1,858억 3,000만원에서 3,743억 1,000만원(201.4%) 증가한 5,601억 4,000만원이다. 이는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이후 처음 산출된 총사업비인 918억원에서 6.1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슈퍼컴퓨터 6호기 교체 총 소요예산]

(단위: 억원)

총 소요예산(A+B+C)	물품 가액(A)	리스료 이자(B)	수수료(C)
5,601.4	4,981.5	491.5	128.4

자료: 기상청

[2027년 예산안 기준 총리스료 중장기 연도별 집행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계
초기분(A)	131.4	205.1	205.1	205.1	205.1	102.7	1,054.5
최종분(B)	-	833.9	1,111.8	1,111.8	1,111.8	278.0	4,447.3
관·부가세(C)	18.3	81.3	-	-	-	-	99.6
합계(A+B+C)	149.7	1,120.3	1,316.9	1,316.9	1,316.9	380.7	5,601.4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급격한 사업비 상승에 대해 AI 열풍 및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에 따른 서버용 D램 등 주요부품 공급 부족 및 가격 급등에 따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물품가액이 크게 증가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금리 상승으로 인한 리스이자율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D램 수출물가지수]

구분	'25.6.	'25.9.	'25.12	'26.1.	'26.2.	'26.3.	'26.4.	'26.5.	'26.6.	'26.7.
수출물가지수 (2010년 =100기준)	87	98	138	182	193	236	294	317	327	348

자료: 한국은행

기존 운영하고 있는 5호기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예보의 정확도, 운영 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슈퍼컴퓨터 6호기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서버용 D램 등 주요부품 가격 급등으로 총사업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공고 유찰이 반복되면서 편성된 예산이 2년째 전액 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운용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2027년 12월까지 6호기와 병행 운영될 계획이었던 슈퍼컴퓨터 5호기의 운영 기간이 2029년 5월까지로 1년 5개월 연장되어 안정적인 예보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이러한 지적의 취지를 감안하여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3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R&D) 사업: 철저한 사업 관리로 개발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

가. 현 황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R&D) 사업[1]은 극심해진 위험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와 예측을 강화하기 위한 세 번째 정지궤도 기상위성(천리안위성 5호)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58억 8,700만원(32.3%) 증액된 1,469억 4,500만원이다.

[2027년도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1]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R&D)	19,500	111,058	111,058	146,945	35,887	32.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상청

동 연구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6,668억 5,400만원 규모로 사업기간은 2025년도부터 2031년까지 총 7년간 수행될 예정이며, 기상청과 우주항공청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분담[2]하고, 민간기업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이다. 구체적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시스템/본체 개발을 수행하는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기상탑재체와 우주기상탑재체 개발을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3137-406

2) 우주항공청의 경우 시스템 및 본체개발 과제의 경우에만 예산을 부담하고, 기상탑재체 기술개발과 우주기상탑재체 기술개발의 경우에는 기상청만 예산을 부담한다.

[천리안위성 5호 연구개발사업 총사업비 현황 및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예산분담	기상청	총액	195.00	1,110.58	1,469.45	1,308.89	695.08	480.65	174.42	5,434.07
		시/본	63.00	251.00	466.70	261.20	88.61	76.47	27.49	1,234.47
		기·탑	120.00	829.58	932.46	722.27	260.67	119.03	47.41	3,031.42
		우·탑	12.00	30.00	70.29	45.55	65.93	5.28	6.23	235.28
		발사/보험	0	0	0	279.87	279.87	279.87	93.29	932.90
	우주항공청 (시/본)		50.00	426.57	304.13	261.20	88.61	76.47	27.49	1,234.47
	합계		245.00	1,537.15	1,773.58	1,570.09	783.69	557.12	201.91	6,668.54

주: 시/본: 시스템 및 본체, 기·탑: 기상탑재체, 우·탑: 우주기상탑재체
※ 당초 총사업비 기준임
자료: 기상청

이를 수행하기 위해 2025년에는 시스템/본체, 기상탑재체, 우주기상탑재체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과 함께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2026년에 예비설계를, 2027년에 상세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 후 2028년부터 조립 및 통합을 수행하고, 2031년 2분기 발사 및 궤도상 시험을 거쳐 정식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사업 개발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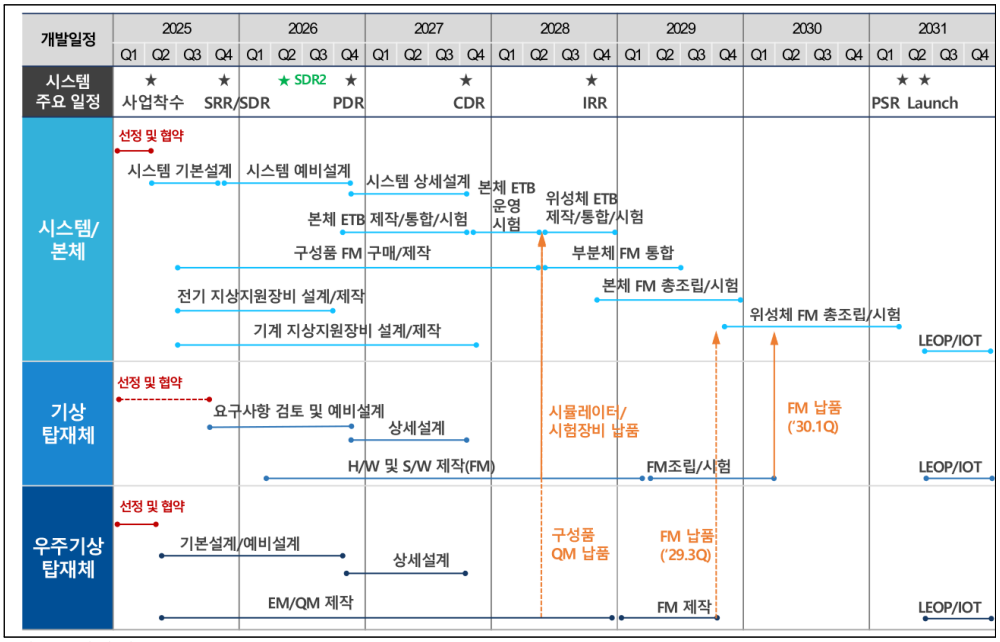

자료: 기상청

2026년 9월 현재 시스템 및 본체 개발 과제와 우주기상탑재체 개발 과제의 경우 2025년 4월 협약 체결 후 시스템 기본설계를 완료(2025년 12월)하고 예비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기상탑재체 과제는 2025년 2월 1차 공모, 4월 2차 공모를 거쳐 9월 3차 공모를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LIG D&A(주)[3]을 선정하고 10월에 협약을 체결하였다. 기상탑재체 개발과제의 경우 해외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개발비용보다 견적비용이 크게 상승한바[4]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기상청은 2025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계획변경을 위한 특정평가[5]를 거쳐 예산을 당초 대비 660억 1,000만원 증액하여 3차 공모에 이르러서야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을 완료하였다.

[2025~2026년도 주요 과제 추진경과]

과제명	모집 공고	협약 체결	주관연구 개발기관	주요 과제추진내용
(과제1)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 시스템 및 본체 개발	'25.2. (1차)	'25.4.	LIG D&A(주)	○ 국가 선행R&D 사업성과물 적용 분석 검토('25.6월) ○ 탑재체 과제 간 접속 제어 실무그룹 운영('25.6월) ○ 사용자 요구사항 검토(7월) 및 시스템 규격 문서 작성('25.9월)

3) 2026년 4월 LIG넥스원에서 LIG D&A로 기업명칭 변경

4)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시 추산한 해외 개발비용이 1억 6,000만 달러(약 2,250억원)였으나, 2025년 하반기 기준 미국 개발업체의 견적비용이 1억 9,500만 달러(약 2,740억원)로 상승한 점, 환율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1,292원에서 사업 공모시에는 1,380원~1,430원으로 상승한 것도 국내개발업체의 신청이 저조했던 사유라는 설명이다.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8조(예비타당성조사 시행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 중 추진과정에서 이행 점검, 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평가 중 계획 변경의 평가는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목적, 사업내역, 총사업비 등의 변경을 위해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과제명	모집 공고	협약 체결	주관연구 개발기관	주요 과제추진내용
				○ 기술이전 항목 분석, 항우연과 실무협의('25.8월) ○ 기술이전 목록확정('25.12월) ○ 시스템/본체 기본설계 완료('25.12월) ○ 기술이전 가치평가 완료 및 협상 당사자간 기술료 협상 개시('26.6월) ○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개발 위성항법 수신기 연계적용 국산화 개발 확정('26.8월) ○ 본체 및 탑재체/관제·전처리 과제 간 접속 제어실무그룹 운영 및 규격확정('25.6.~)
(과제2)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 기상탑재체 개발	'25.9. (3차)	'25.10.	LIG D&A(주)	○ 특정평가 통한 증액 타당성 승인 후 3차 공고('25.9월)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25.10월) ○ 기상탑재체 요구사항 수립('25.11월) ○ 해외개발업체 선정 및 계약('25.12월) ○ 해외개발업체 착수회의('26.2월) ○ 시스템/본체-해외개발업체 간 기술회의('26.3~9월) ○ 해외개발업체 개발사항 현지검검('26.8월)
(과제3)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 우주기상탑재체 개발	'25.2. (1차)	'25.4.	한국 과학기술원	○ 센서별 개발방안 검토('25.6월) ○ 추가센서 및 센서별 위성본체 접속사항 검토('25.7~11월) ○ 센서별 사전 설계 및 핵심부품 검토('25.8월) ○ 센서별 사전설계를 통한 개발센서 확정('25.12월) ○ 센서별 시스템 기본설계 완료('25.12월) ○ 자력계 개발을 위한 유럽우주국과 해외 제작사 간 계약체결('26.9월)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기상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기업간 기술이전 관련 이견과 기상탑재체 납품 계약 지연 체결이 천리안위성 5호 발사라는 최종 과업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에 임할 필요가 있다.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은 기상청과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LIG D&A(주))이 합동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기상청과 우주항공청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출연하고, 기술원에서 민간기업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민간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업 구조로 정부 부처, 전문기관, 민간기업 간 상호 협력이 전제되어야 천리안위성 5호의 원활한 연구 개발이 가능하다.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 연구개발 추진체계]

자료: 기상청

또한 동 사업은 ① 시스템/본체 ② 기상탑재체 ③ 우주기상탑재체 개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각 과제의 결과물을 합쳐 위성체를 완성하는 형태로, 한 과제가 지연될 경우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다.

그런데 시스템/본체 개발사업과 기상탑재체 개발 사업에서 참여기관 간 이견에 따른 기술이전과 해외제작사의 기상탑재체 납품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시스템/본체 개발사업은 LIG D&A(주)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에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동 기술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상청에서 계획한 기술이전 일정을 보면 2025년 2분기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 항공우주연구원의 보유기술을 공유해 주고, 2026년 3분기까지는 연구개발기관과 항공우주연구원간 기술이전과 관련한 계약조건 협의 및 기술이전 가치평가, 이전계약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기획하였으나 2026년 9월 현재까지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 관련 기술이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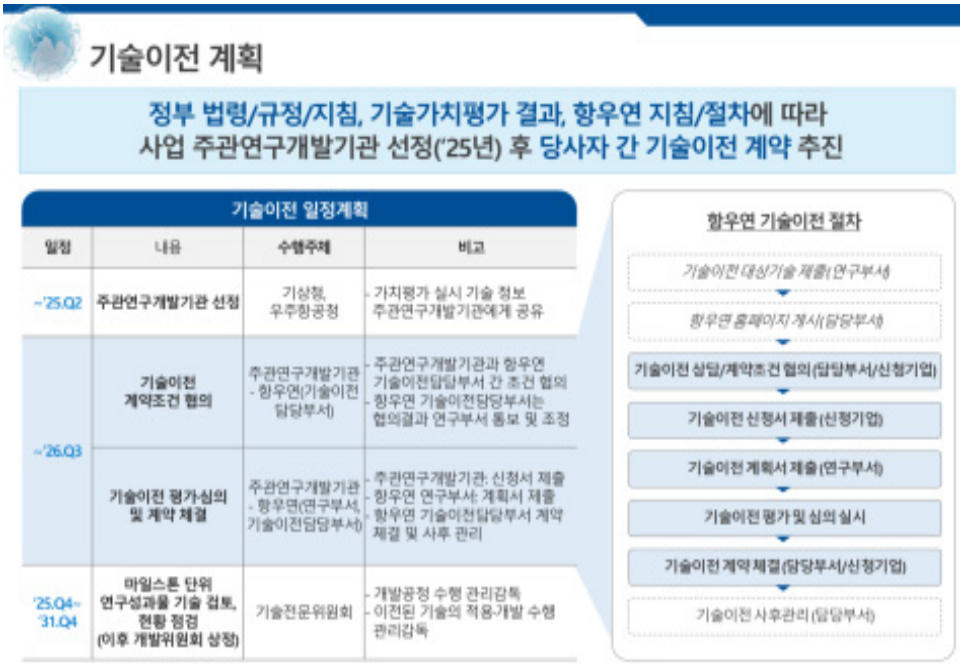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사업 착수 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LIG D&A(주) 간 기술이전 협의를 지원하고 원활한 기술이전 추진을 위해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LIG D&A(주)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다. 이에 4자 협의체는 2026년 9월 현재까지 총 8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기술이전 목록을 확정하였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기술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LIG D&A와 기술료 등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이전 협의를 위한 4자 협의체 진행 상황]

회의차수	년월	내용
-	2025. 4.	민간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기술이전 협의체 구성
1차회의	2025. 5.	기상청,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민간기업 간 연락담당자 지정
2차회의	2025. 6.	민간기업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기술이전 22건 요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견
3차회의	2025. 7.	민간기업에서 요구한 기술이전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재검토 필요 의견
4차회의	2025. 11.	기술이전 목록 확정을 위한 원칙적 합의 촉구
5차회의	2025. 12.	외부 전담기관의 기술 가치평가 전 최종 기술이전 목록 22건 확정
6차회의	2026. 2.	기술이전 계약체결 지연 방지를 위해 기술 가치평가와 기술이전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 협의
7차회의	2026. 4.	기술 가치평가 전문기관의 기술 평가절차 착수 및 가치평가 기간 중 계약 관련 사전 병행추진 논의
8차회의	2026. 9.	기술이전 당사자 간 협상 상황 점검 및 기술이전 항목 조정 등 다각적 협상 방안 논의

자료: 기상청

4자 협의체의 운영으로 기술이전 목록을 확정하고 기술 가치평가를 완료한 것은 고무적이나, 계획상 2026년 3분기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던 것에 비하여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여전히 기술이전과 관련된 계약 체결 단계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위성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상청은 신속한 기술이전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인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상탑재체 개발의 경우 2025년 5월 납품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2025년 12월 23일이 되어야 납품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기상탑재체 계약 체결을 위한 해외 제작사(L3Harris technologies, Inc)와의 협상 과정에서 비용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계약이 지연된 것이다. 기상청은 당초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 계획 당시 기상탑재체를 2029년 4분기에 인도받은 후 위성체를 총조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계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보다 약 7개월 지연된 2030년 7월에 기상탑재체를 인도받을 예정으로 위성체 조립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천리안 5호 기상탑재체 사업의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현황]

	당초 계획	변경된 집행	지연기간
계약 체결	2025년 5월	2025년 12월 23일	약 7개월
기상탑재체 인도예정일	2029년 4분기	2030년 7월	약 7개월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동 사업은 3개의 결과물이 합쳐져 최종목표인 천리안위성 5호 발사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개별 과제가 목표한 품질과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당초 목표 시점인 2031년에 천리안위성 5호 발사가 가능하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Ⅳ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6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ISSN 3058-6224

ⓒ 국회예산정책처, 2026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60-001506-10
ISSN 3058-6224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